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2017. 10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2017. 10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2017. 10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홍우형 한성대학교 교수

2017년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요 약

1. 연구개요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는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비과세 항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함
 - 일부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음
 - 도입된 지 오래되어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이 있음
 - 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음
 - 그 항목들의 성격이 제12조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과 유사한데, 별도로 규정되어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함

-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
 -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의 내용과 비과세 규모 등을 검토한 후, 비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항목의 개편 필요성, 개편방향 등을 살펴봄

2.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는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을 열거함
 - 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항목이 가목부터 어목까지 총 22개 항목임
 - 개별 항목 중에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훨씬 더 많은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함
 - 예를 들면, 사목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데, 서로 다른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비과세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
- 「선원법」에 의해 받은 식료
- 일·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포함
- 법령·조례에 의해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군인, 경찰 등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등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교원 및 연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의 벽지근무수당 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 월 20만원

□ 국외 등 근로소득

□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질병, 부상, 사망, 실업, 휴직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

- 직무관련 교육에 따른 학자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사용자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와 식사대 등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3. 주요국의 근로소득 비과세제도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5개국의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조사대상국 모두 근로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실비변상적인 항목 등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 미국, 영국, 일본, 독일에서는 세법에 비과세소득을 열거하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에 해당되는 것들임
 -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소액의 금전적 혜택 또는 현물지원
 - 근로와 관련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퇴직, 상해 등에 대한 보험료, 또는 관련 서비스
 - 업무 관련 교육비
 - 포상금 등
 - 자녀돌봄 및 입양 지원 서비스
- 비과세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일본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혜택에 대한 비과세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퇴직, 상해 등에 대한 보험료, 또는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원, 자녀돌봄서비스 등은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과세됨

- 네 국가 모두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과세함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소득공제)
 - 근로자가 해당 경비를 고용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전액이 근로 소득에서 제외되고 관련 비용도 공제되지 않음(비과세)
-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의 급여가 포함됨
 - 소액의 출퇴근 관련 경비, 업무 관련 여비, 업무상 필요한 제복 관련 경비, 소액의 식사비 또는 현물로 지급된 식사, 사택이나 사내 숙박시설 등
- 독일은 다른 국가들보다 비과세 범위가 넓은 편임
 - 사회정책적 급여, 특정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급여, 병역의무에 따른 급여, 공휴일·야간 근무에 따른 추가급여 등도 비과세 항목에 포함됨
- 호주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비과세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고용주에게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를 과세함
 - 소액의 부가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부가급여세가 비과세됨
 - 300호주달러 이하이며 빈도가 낮아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실비변상적 급여: 휴대용 전자기기(예. 휴대폰, 노트북 등),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장비, 서류가방, 영업을 위한 장비, 출장 택시비, 소규모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주차비용, 전근비용 등

4. 비과세 근로소득 규모 및 분포

-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의 규모와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 『국세통계연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연구활동비와 국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그 밖의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공개함
 - 그러나 국세청이 집계하지 않는 소득이 있어 비과세 소득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총 22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를 집계하지 않으며,
- 자목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경우에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를 집계하지 않음
- 특히 조세지출항목으로서 규모가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집계하지 않음

- 국세청이 통계를 집계하는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2015년 192만명으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신고자 1,733만명의 11.1%를 차지하였음
 - 비과세 소득의 규모는 4조 2,220억원으로 근로자 총급여 566조 7,290억원의 0.7%를 차지하였음
 - 비과세 소득의 혜택을 받는 자의 분포를 보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1%인 데 비해 총급여 상위 10% 중에서 해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 신고현황(2015년)

(단위: 천명, 십억원, %)

구분	신고자 전체				총급여 상위 10%			
	신고현황(A)		비중		신고현황(B)		비중(B/A)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근로소득)	17,333	566,729	100.0	100.0	1,733	183,573	10.0	32.4
비과세소득	1,923	4,220	11.1	0.7	378	1,526	19.7	36.2
연구활동비	646	671	3.7	0.1	221	273	34.2	40.7
국외근로수당	115	1,882	0.7	0.3	47	1,022	41.0	54.3
야간근로수당	510	778	2.9	0.1	1	1	0.3	0.2
출산보육수당	479	279	2.8	0.0	75	53	15.6	19.1
기타비과세	301	609	1.7	0.1	56	176	18.7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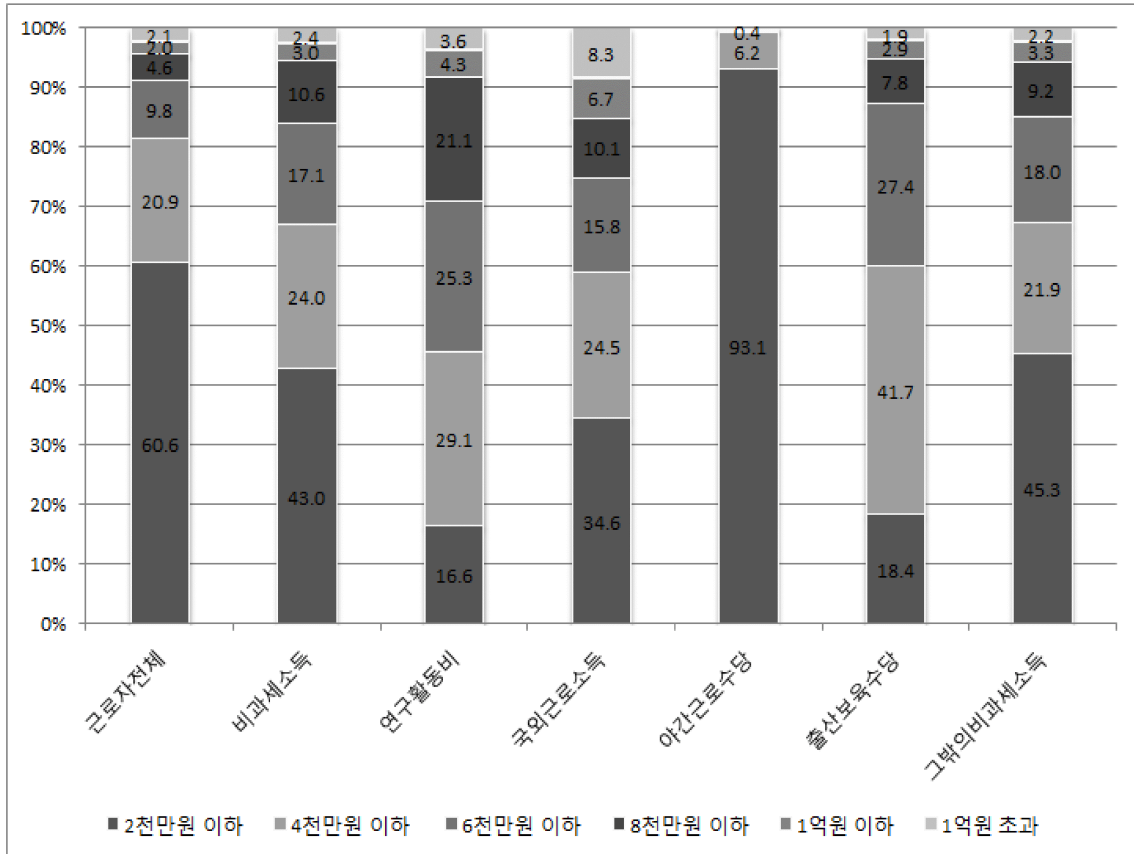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4-2-1

- 비과세 항목별로 보면,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부분의 비과세 혜택이 귀속되지만 다른 항목은 비과세 신청자 중 소득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6(출산보육수당)-41(국외근로수당)%로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외근로수당과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 전체 인원의 총급여 수준별 분포를 보면, 총급여 2천만원 이하가 60.6%, 2천만~4천만원이 20.9%, 4천만~6천만원이 9.8%를 차지하여, 6천만원 이하가 91.1%를 차지함([그림 1] 참조)

[그림 1] 비과세 소득 항목별 신청자의 총급여 수준별 분포(2015년)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4-2-5

- 한편 비과세 소득 신고자를 보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신고자의 93.1%가 총급여 2천만원 이하로서 저소득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외의 비과세 항목을 보면, 연구활동비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신고자 중에서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자는 각각 16.6%와 18.4%로 전체 근로자 중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자의 비중에 비해 상당히 낮음
 - 국외근로소득과 보험료 신고자 중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자의 비중은 각각 34.6%와 31.7%이며, 그 밖의 비과세소득은 이 비중이 45.3%임

- 총급여 6천만원 이하인 자(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의 비중을 보면, 근로자 전체가 91.3%,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신고자가 99.8%임
 - 한편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자 중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자의 비중이 70.9%로 가장 낮고, 그다음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신고자 74.9%, 그 밖의 비과세 소득 신고자 85.3%, 출산보육수당 신고자 87.5%의 순임

- 1인당 비과세 소득의 규모는 평균 219만원인데, 상위 10%인 근로자 중 비과세 소득을 신고한 자의 비과세 소득 규모는 평균 403만원으로 고소득자의 1인당 혜택이 큰 편임
 -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

〈표 2〉 비과세 항목별 1인당 비과세 소득 규모(2015년)¹⁾

(단위: 만원, %)

	전체		상위 10%	
	1인당 평균	평균급여 대비 비율	1인당 평균	평균급여 대비 비율
총급여	3,270	100.0	10,591	100.0
비과세소득	219	6.7	403	3.8
연구활동비	104	3.2	124	1.2
국외근로수당	1,635	50.0	2,162	20.4
야간근로수당	152	4.7	93	0.9
출산보육수당	58	1.8	72	0.7
그밖의 비과세	202	6.2	313	3.0

주: 1) 비과세 소득(1)은 『국세통계연보』 분류에 따른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부담금과 현물급식 등 현물급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부담금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4-2-1

- 항목별 비과세 규모를 보면, 국외근로소득의 1인당 비과세 규모가 1,635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비과세 규모가 근로자 평균 급여의 1.8%로 가장 낮고, 그다음이 연구활동비(3.2%), 야간근로수당(4.7%), 보험료(5.3%)의 순임

5.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개선방향

가.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포괄적 과세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세체계의 단순화, 소득재분배, 경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므로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비과세 항목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부이긴 하지만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급으로서 실물로 지급되어 개별 근로자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나 위험수당과 같이 일반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인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
 - 둘째, 행정의 관점에서 비과세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음
 - 과세를 하면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반면 세수입은 많지 않아 과세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셋째, 정책적 목적에 의한 비과세 항목이 있음
 - 정책적 목적의 비과세는 사회정책적 배려의 관점에서 비과세하는 항목과 특정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로 구분할 수 있음
- 한편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비과세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규모에 제한을 두는 등 개편이 필요함
 - 첫째, 실비변상적 급여 중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등의 방식으로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둘째, 특정 업종이나 그 외 특정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더라도, 비용을 특정할 수 없고, 해당 비용의 지출 여부나 지출의 구성에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특정 급여(예, 수당)를 지불하더라도 그 비용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셋째,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에 대해서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서 지원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항구적인 비과세 항목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일몰기한을 두어 정기적으로 비과세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는 다른 조세지출 항목이나 재정지출 항목과 중복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들 유사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비과세 항목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남용의 가능성이 큰 경우 또는 세부담 절감효과가 과도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금액을 최저한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의 경우에는 비과세의 필요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나.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과 그 이유

- <표 3>에서는 앞 절에서 정리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된 비과세소득 규정에 대해 비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과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으로 구분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정리하였음
- 유지근거는 ① 실비변상적 급여 ② 행정적 필요에 의한 비과세 ③ 사회적 배려에 따른 비과세 ④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로 구분하였음
-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의 경우, 그 근거를 ㉠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 비용의 특정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 환경변화로 인해 지원 필요성이 약해진 경우 ㉣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지출과 중

복되는 경우 ㉔ 남용의 가능성이 큰 경우 ㉕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음

<표 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급여 타당성 검토 결과

목	비과세항목	유지 ¹⁾	재검토 ²⁾
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②	
나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④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②③	
라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②③	
마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㉔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기타
사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②③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 등		기타
아	비과세 학자금(영§ 11)	①	
자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등이 받는 수당(영§12 1)	②	
	「선원법」에 의해 받는 식료(영§12 2)	①②	
	일직료·숙직료 등(영§12 3)	①	
	자가운전보조금(영§12 3)		㉔
	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영§12 4, 8)	①	
	경호수당, 승선수당 등(영§12 9 ~ 11)		㉔㉕
	연구보조비 등(영§12 12)		㉔㉕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영§12 13 가)		㉔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유아교육법 시행령」(영§12 13 나)		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영§12 13 나)		㉔
	취재수당(영§12 14)		㉔㉕
	벽지수당(영§12 15)		㉔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영§12 16)	③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영§12 17)	④	
	차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기타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②③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기타

목	비과세항목	유지 ¹⁾	재검토 ²⁾
과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㉞
하	중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③	
거	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100만원(영§16①1)		㉟
	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선박, 건설현장)-300만원(영§16①1)		㉟㉡
	공무원 등 국외근로-고시금액(영§16①2)		㉟㉡
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①	
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㉟
러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①	
	현물 급식	①②	
머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버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②③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②③	
어	발명에 따른 보상금	④	

주: 1) 유지 근거 구분: ① 실비변상적 급여 ② 행정상 필요에 의한 비과세 ③ 사회적 배려에 따른 비과세 ④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

2) 재검토가 필요한 근거: ㉞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㉟ 비용의 특정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 환경변화로 인해 지원 필요성이 약해진 경우 ㉢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지출과 중복되는 경우 ㉣ 납용의 가능성이 큰 경우 ㉤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저자 작성

다.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

- 육아, 출산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경우 육아, 출산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조세제도 중 부양가족 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출산비용 공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지출과도 중복됨
 -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과세 여부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되는 항목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은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연금소득의 성격이 있으며, 연금소득의 관점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기반한 것으로 납입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금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사회적 배려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족연금 등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유족연금 등이 수혜자 소득의 전부인 경우에는 과세하더라도 세부담이 없거나 있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수혜자가 유족연금 등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되는 항목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 실비변상적 지급이라는 이유로 비과세되고 있으나, 특정성이 약한 일부 비용의 지급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되는 실비가 특정성이 약하여 보편적인 근로 관련 경비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특정성 자체가 임의적이어서 특별히 비과세하기보다는 근로소득공제라는 보편적인 근로 관련 비용 공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함
- 해당되는 항목
 - 자가운전보조금

□ 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특정 직종의 특정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특별한 위험에 대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특정할 수 없고, 해당 비용의 지출이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그러한 위험에 따른 차이는 수당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과세 근거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항목을 비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전면적으로 과세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음
- 벽지수당도 위 경호수당 등과 같은 논리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보조비 등과 취재수당의 경우에도 특정 업무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특정성이 약하고, 비용의 지출이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연구보조비와 취재수당은 비교적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혜택을 받으므로 역진적인 성향이 있음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내용 중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비변상적 지급이라기 보다는 정책적 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유아교육 및 보육을 확산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전공의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들 항목은 도입 당시의 상황에 비취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인 인정되나, 원칙적으로는 급여수준의 조정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것이며, 비과세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격적으로 과세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한시적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기적으로 비과세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가 질과 양의 측면에서 안정되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는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공의 수련수당의 경우에도, 전공의 수급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상황에 따라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국외 등에서의 근로에 대한 보수 비과세제도는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서 국내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되었음

- 그러나 이미 글로벌한 사업 운영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국외근로자를 우대할 정책적 필요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됨
-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이 제도는 주로 중간소득계층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임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의 비과세제도는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부족한 생산인력을 보충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과도한 실업으로 인하여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으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시점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를 유도하는 정책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근로장려세제라는, 야근을 특정하지 않은, 보편적인 근로장려제도가 있으며,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되므로 야근수당 비과세를 통한 근로 의욕 고취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되었음
- 한편,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수당 비과세 혜택이 주로 저소득 계층에 귀속되므로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은 비과세를 하는 논리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연금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히 비과세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없음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는 직업군인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의 작전임무 수행에 따른 위험, 그에 따른 비용 등이 급여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앞서 검토한 국외근무수당, 위험직종에 대한 위험수당, 벽지근무수당 등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격적으로 과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의 타당성 분석

-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의 경우 실비변상적 비용 지급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으며, 행정적 편의성 관점에서 비과세하는 것이 편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해 가입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70만원 이내,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지원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직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대한 지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 법률 체계의 개편방향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예외규정과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의 비과세소득이 모두 큰 범위로 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경제적 성질의 관점에서 시행령 제38조에서 예외 규정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것들이 법 제12조 제3항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항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분리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의 합리성, 단순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되,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사항(비과세소득)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8조에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함

□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소득세의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음

- 아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러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포괄위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성격에 따라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별도의 ‘목’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목 차

I. 서 론	25
II. 비과세 급여의 현황과 특징	29
1. 근로소득 범위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31
가. 근로소득의 범위	31
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33
2.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와 비과세 근거	34
가. 실비변상적 급여	35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등	36
다.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37
라. 기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38
마. 조세지출로 보는 비과세 근로소득	40
3.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의 변천과정	42
4.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정책이슈	45
III.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현황	49
1. 미국	51
가. 근로소득 과세제도 개요	51
나. 비과세 근로소득	52
2. 영국	55
가. 근로소득 과세 개요	55
나. 비과세 근로소득	56
3. 일본	59
가. 근로소득 과세 개요	59
나. 비과세 근로소득	60

4. 호주	63
가. 근로소득 과세 개요	63
나. 비과세 근로소득	64
5. 독일	64
가.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64
나. 근로소득의 정의	65
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66
6. 요약	74
IV. 비과세 근로소득 규모 및 분포	77
1. 분석자료	79
2.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81
3. 소득구간별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92
4. 1인당 비과세 규모	105
5. 요약	112
V. 조세지출 항목의 비과세 근로소득 타당성 평가	115
1. 교원·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117
가. 제도 및 지원 현황	117
나. 지원목적 및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118
다. 다른 조세·재정 지원제도와 중복·유사성 검토	120
라. 요약 및 결론	122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123
가. 제도 및 지원 현황	123
나. 지원목적 및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125
다. 다른 조세·재정 지원제도와 중복·유사성 검토	127
라. 요약 및 결론	128
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128
가. 제도 및 지원 현황	128

나. 지원목적 및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130
다. 다른 조세·재정 지원제도와 중복·유사성 검토	131
라. 요약 및 결론	132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133
가. 제도 및 지원 현황	133
나. 지원목적 및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135
다. 다른 조세·재정 지원제도와 중복·유사성 검토	138
라. 요약 및 결론	142
VI. 조세지출 외 비과세 항목의 타당성 평가	143
1.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의 설정	145
가. 비과세 유지 기준	146
나. 재검토 항목의 기준	149
2. 근로소득세 비과세의 항목별 타당성 분석 - 조세지출 외 항목	152
가.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받는 급여	152
나. 질병, 부상, 사망, 실업, 휴직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	154
다. 직무관련 교육에 따른 학자금	158
라. 실비변상적 급여	159
마. 기타 비과세 급여	165
3.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의 타당성 분석	167
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167
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의 타당성 검토	168
4. 비과세 소득에 대한 법 규정 체계의 타당성 분석	169
가. 현행 법령체계의 문제점	169
나. 비과세 소득에 관한 법령체계의 개편방향	172
VII.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개선방향	175
1. 비과세 필요성 판단 기준	177
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177

나. 비과세 항목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179
2.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	180
가. 비과세 유지 항목과 재검토 필요 항목의 구분	180
나.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182
다. 과세행정 관점에서 비과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항목	183
라. 사회적 배려에 따른 비과세	184
마.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	185
바. 기타 비과세 유지 필요성	185
3.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	186
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186
나. 유족연금 등	186
다. 일부 실비변상적 지급	187
라.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 항목	188
4.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를 규정하는 방법의 개편방안	190
참고문헌	192
부 록	195

표 목 차

<표 II-1> 비과세 근로소득 관련 조세지출규모	41
<표 II-2>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 도입 연도(「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43
<표 III-1> 독일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유형	67
<표 IV-1> 국세청이 보유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80
<표 IV-2> 분석 제외 대상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81
<표 IV-3>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인원 분포	83
<표 IV-4>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금액 분포	87
<표 IV-5>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인원 현황(2015년)	94
<표 IV-6>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금액 현황(2015년)	100
<표 IV-7> 1인당 비과세 소득 규모의 연도별 변화	105
<표 IV-8>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 소득(2015년)	109
<표 V-1> 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 신고현황(2015년)	118
<표 V-2>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소득 신고현황(2015년)	124
<표 V-3>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현황(2015년)	129
<표 V-4>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현황(2015년)	135
<표 V-5> 근로소득자 총급여 수준별 실효세율(2015년)	137
<표 V-6> 근로장려금의 산정방법(2017년)	139
<표 VII-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급여 타당성 검토 결과	181
<부표 1>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인원 현황(2011년)	197
<부표 2>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인원 현황(2012년)	198
<부표 3>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인원 현황(2013년)	199

<부표 4>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인원 현황(2014년)	200
<부표 5>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금액 현황(2011년)	201
<부표 6>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금액 현황(2012년)	202
<부표 7>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금액 현황(2013년)	203
<부표 8>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금액 현황(2014년)	204
<부표 9>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 소득(2011년)	205
<부표 10>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 소득(2012년)	206
<부표 11>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 소득(2013년)	207
<부표 12>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 소득(2014년)	208

그 립 목 차

[그림 IV-1] 비과세 소득 대분류별 신고인원 변화	84
[그림 IV-2]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별 신고인원 변화	85
[그림 IV-3] 국외근로수당의 세부항목별 신고인원 변화	85
[그림 IV-4] 기타 비과세의 세부항목별 신고인원 변화	86
[그림 IV-5] 비과세 소득 대분류별 신고금액 변화	89
[그림 IV-6]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별 신고금액 변화	89
[그림 IV-7] 국외근로수당의 세부항목별 신고금액 변화	90
[그림 IV-8]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별 신고금액 변화	91
[그림 IV-9]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자 대비 비과세 소득 신고인원 비중 변화	93
[그림 IV-10] 비과세 소득 대분류 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누적비중(2015년) ...	95
[그림 IV-11] 연구활동비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누적비중(2015년)	97
[그림 IV-12]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누적비중(2015년)	97
[그림 IV-13]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누적비중(2015년)	98
[그림 IV-14] 소득구간별 근로소득 대비 비과세 소득 신고금액 비중 변화	99
[그림 IV-15] 비과세 소득 대분류 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금액 누적비중(2015년) ...	101
[그림 IV-16] 연구활동비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금액 누적비중(2015년)	103
[그림 IV-17]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금액 누적비중(2015년)	103
[그림 IV-18]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금액 누적비중(2015년)	104
[그림 IV-19] 대분류별 1인당 비과세 소득의 연도별 변화	106
[그림 IV-20] 연구활동비 세부항목별 1인당 비과세 소득의 연도별 변화	107
[그림 IV-21]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별 1인당 비과세 소득의 연도별 변화	108
[그림 IV-22] 대분류 항목의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소득	110
[그림 IV-23] 연구활동비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소득	111
[그림 IV-24]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소득	111
[그림 IV-25]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소득	112

I. 서론



I. 서론

-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방안을 모색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중 4개의 항목은 조세지출 항목에 포함되는데, 이 4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비과세 목적의 적절성, 비과세 규모 및 분포, 적용대상 및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함
 -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거목)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너목)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더목)

- 조세지출 항목 외에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먼저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
 - 비과세 항목의 유지 또는 폐지 등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개편방안을 모색함

- 그 외에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을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함
 - 명시적인 비과세 규정 없이 예규 등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하고 비과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함

-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비과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비과세소득의 규모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해외의 학술적 연구 문헌은 찾지 못하였음
 - 과세소득, 비과세소득에 대한 문헌은 대부분 특정 소득이 특정 국가에서 과세 소득이 되는지, 비과세 되는지를 설명한 것들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외국의 제도 조사에 포함할 계획임

- 비과세소득 판단 기준에 대해 국내에서도 연구가 많지 않으며, 해외 문헌에서도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려운 것은, 주로 특정 소득의 비과세 여부가 각각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소득세제의 발전과정, 해당 소득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것이며, 비과세 결정이 특정 분야나 계층을 지원한다는 임의적 판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그러므로 특정 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 본 연구에서는 특정 소득을 비과세하는 목적을 살펴보고, 그러한 목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비과세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지, 그 외에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도출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규정의 현황과 특징
 - 주요국의 비과세 급여 조사
 - 비과세 소득의 규모와 분포 분석
 - 조세지출 항목의 비과세 급여 규정 타당성 평가
 - 조세지출 외 비과세 급여 항목의 타당성 평가
 -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규정 방식의 합리성 검토
 -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의 개편방안

Ⅱ. 비과세 급여의 현황과 특징



II. 비과세 급여의 현황과 특징

1. 근로소득 범위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가.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함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단,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동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¹⁾

-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거의 모두 포괄함
 - 통상적인 상여금은 물론 그 외에 주주총회 등의 의결로 일시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포함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포괄하며, 직무상의 발명 등에 따른 보상금도 포함함
 - 퇴직함으로써 인해 받는 소득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봄

1) 기타소득에 포함됨

-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은 소득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함
-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공받은 사택은 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임원이 아닌 종업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단,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은 제외
 -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정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 보수 등 외에도 근로의 제공이 계기가 되어 지급되는 급여는 복리후생적 성격, 비용보상적 성격, 축하·위로금적 성격의 것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됨

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이 원인이 되어 지급되는 급여 중 명시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퇴직급여와 사택의 제공,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장보험료 일부뿐임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퇴직함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을 말함
 - 퇴직급여를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에 사용자가 적립하는 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5조의3)

-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종업원,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주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15조의2)

- 사용자가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배우자, 기타 가족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부담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 업무상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2.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와 비과세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열거되어 있는데, 다음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함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국외 등 근로소득
 -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가. 실비변상적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를 규정함

-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다음과 같음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
 - 「선원법」에 의해 받은 식료
 - 일·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 법령·조례에 의해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군인, 경찰 등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등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교원 및 연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의 벽지근무수당 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 월 20만원

- 군인, 경찰 등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등은 다음과 같음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는 연구자는 다음의 교원, 연구자를 말함
 - 유아·초·중·고등교육기관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연구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이 비과세되는 기자는 방송, 뉴스통신,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포함)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를 말함
 -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 중 월 20만원을 취재수당으로 봄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등

-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언급한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의 근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외 등(북한지역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외 등은 국외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을 말함

-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함
- 승무원은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과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을 포함함
 -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포함함

다.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규정함
- 생산직 근로자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 생산 및 관련 종사자의 구체적인 직종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함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으로서 선장은 포함하지 않음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운전원 및 운반종사자의 구체적인 직종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함

-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뺀 급여를 말함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함
 - 생산수당을 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라. 기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 앞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비과세됨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받는 급여
 -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복무 중인 병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함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질병, 부상, 사망, 실업, 휴직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 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 직무관련 교육에 따른 학자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 초·중·고등교육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

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비과세됨

○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 국제기관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함

□ 그 외 사용자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와 식사대 등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로서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함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마. 조세지출로 보는 비과세 근로소득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다음 4개의 항목은 조세지출로 보아 매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 규모가 포함됨

-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거목)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너목)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더목)

-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과 개별 세법상 조세지출로 구분됨
 - 지원의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등 조세지출의 특성과 개별 조항의 입법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함

- 조세지출 규모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15년 8,154억원으로 가장 크고,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1,629억원임
 - 대학교원 등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조세지출은 638억원임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급여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은 268억원임

〈표 II -1〉 비과세 근로소득 관련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비과세 근로소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망)	2017 (전망)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 등	536	580	425	450	449	638	762	659
국외근로수당	1,134	1,195	954	1,400	1,549	1,629	1,620	1,709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	5,563	6,224	7,593	8,648	8,459	8,154	8,858	9,023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1,227	1,212	307	145	350	268	244	261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연도별 추이를 보면,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과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규모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의 증가추세는 소득 증대 및 사회보험료율 조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국외근로수당 비과세는 특히 2013년 이후에 많이 증가하였는데, 제도 개편을 통해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수당의 한도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는 연도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1년 1,212억원에서 2012년 307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2015년에는 268억원이었음

3.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의 변천과정

- <표 II-2>에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 각 항목의 도입 연도를 정리하였음
 -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은 1949년에 복무 중인 병(兵)의 급여를 포함하여 3개의 항목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음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여비·학자금·가족부양료가 비과세 항목에 포함됨
- 이후 약간의 보완적인 개편만 하다가 1975년에 근로소득 비과세항목 규정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많은 항목이 신설되었음
 -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급여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속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군속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정하는 급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 1980년대에는 신설된 항목이 없으며, 1990년대에는 1990년에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가 도입되었고, 1996년에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비과세 항목에 포함됨

〈표 II -2〉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 도입 연도(「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법조문	비과세항목	시행연도 ³⁾
소득세법§12 3 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1949년
소득세법§12 3 나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1957년
소득세법§12 3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1949년
소득세법§12 3 라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1975년
소득세법§12 3 마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1996년
소득세법§12 3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1975년
소득세법§12 3 사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1975년
소득세법§12 3 아	비과세 학자금 ¹⁾	1949년
소득세법§12 3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¹⁾	1968년
소득세법§12 3 차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1972년
소득세법§12 3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1975년
소득세법§12 3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1975년
소득세법§12 3 파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1975년
소득세법§12 3 하	중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1975년
소득세법§12 3 거	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975년
소득세법§12 3 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1996년
소득세법§12 3 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1990년
소득세법§12 3 러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현물 급식 ²⁾	1978년
소득세법§12 3 머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2004년
소득세법§12 3 버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2006년
소득세법§12 3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2011년
소득세법§12 3 어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2017년

주: 1) 여비·학자금·가족부양료로 규정되어 1949년부터 시행

2) 1996년 이전의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속하던 식사 또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자의 경우 비과세되었으나, 1994년 12월 법 개정시 비과세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개정 법률 부칙에 의거 1996년부터 과세. 그러나 1996년 8월 법 개정시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1996년 8월 22일 시행령 제17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5만원 내의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

3) 시행연도는 조문신설 연도 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2000년 이후 다음 항목들이 비과세 항목에 포함됨
 -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2004년)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2006년)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2011년)
 -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2017년)

- 비과세 소득은 각각 고유의 도입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됨²⁾

-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 비과세제도는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봄
 -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도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됨

- 대학교원, 연구기관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는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과세 함

- 국외 등에서의 근로에 대한 보수는 1970년대에 해외건설의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우리나라 근로자 비중 제고를 통해 외화가득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하였음
 - 월 50만원이었던 비과세 소득 한도가 1995년에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이후 2000년에 1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06년에 다시 100만원으로 환원됨
 - 2006년에 비과세 한도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환원하면서 외항선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0만원의 비과세 소득을 인정함
 - 2009년에는 해외건설노동자의 비과세소득 한도를 15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이후 점진적인 개편을 거쳐 2013년 이후 해외건설노동자와 외항선원에는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고, 그 외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가 유지됨

2)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삼일아이닷컴(<http://www.samili.com>) 참조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비과세는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직 업종의 인력난 개선에 목적을 둔 것임
- 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면, 다양한 목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비과세 한도가 있는 일부 비과세 소득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조정되었고, 일부 비과세 항목은 폐지되었음

4.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정책이슈

-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 그것도 주로 특정 항목의 비과세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각 항목별로 다른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어 모두 묶어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바, 국내는 물론 국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음
 - 다음에서는 특정 항목의 비과세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와 국회에서 논의된 관련 규정 개편방안과 그에 대한 찬반 논의를 정리함
-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는 조세지출 예산에 대해 분석하면서 일몰규정 없이 운영되는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함
 - 일몰규정 없이 운영되는 조세지출 항목 중에서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제도 시행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게 낮아진 경우나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항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그 예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법인세 등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들 수 있음
 - 이 제도들은 1960~197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급속히 글로벌화되며 기업의 해외영업의 중요도가 크게 높아졌고 국외 소재 자회사나 지점 및 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 비중이 커졌으며,
 - 국제 금융거래가 빈번해지며 금융기법이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제도들을 운영할 정책적 이유가 크지 않음

- 황규영·홍창목(2010)은 근로소득의 비과세에 대한 현행 규정의 특징과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세무 실무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근로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에 대한 규정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에 규정하기보다는 모법인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야간근무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온상훈(2010)과 이기일·김수련(2015)은 국외 근로자 근로소득 비과세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 온상훈(2010)은 해외근로자 비과세소득 범위 150만원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을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함
 - 이기일·김수련(2015)은 국제선 항공승무원 비행근무환경, 항공승무원 건강상태 분석, 해외건설근로자 및 외항선원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외근로자 비과세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함
 - 국제항공 승무원에게도 해외건설근로자나 외항선원과 동일하게 급여의 3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두 개의 연구는 각각 해외건설근로자와 국제항공 승무원의 입장에서 이들 직종 종사자의 이익을 대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국회에서의 의원발의를 통해 제시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편안을 보면, 대체로 특정 직종 근로자의 소득 또는 특정 비용에 상응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비과세 규정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
 - 유기준의원 등 발의안은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 근로자의 급여 중 월 30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2013년에 발의되었다 임기만료로 폐기됨
 - 김재연의원 등 발의안과 이정희 의원 등 발의안은 생산직뿐만 아니라 건설직 근로자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각각 2012년과 2010년에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됨

- 윤두환의원 등 발의안은 급여 중 교통비로 사용되는 부분을 비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2006년에 발의되었다가 폐기됨
- 이와 같은 의원 발의안에 대한 국회 전문의원 검토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건설직 근로자의 경우 상당수가 일용 근로자로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이들의 세부담이 워낙 낮아 비과세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음(기획재정위원회 김광목 전문위원 검토의견)
 - 교통비 비과세는 소득세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인상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의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행 소득세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현황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현황

1. 미국

가. 근로소득 과세제도 개요

- 미국은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의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함
 - 소득의 원천 및 형태를 불문하는 완전 포괄주의 개념임³⁾

- 근로자란 고용계약에 의해 종속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주로부터 임금(wages), 성과급(commissions), 수수료(fees), 봉사료(tips), 상여금(bonuses) 등의 보상을 받는 자를 말함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상이라면 수령하는 대가의 유형이나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를 따지지 않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 부가급부(fringe benefits) 항목도 법에서 비과세로 특정하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됨

-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⁴⁾
 - 근로자가 해당 경비를 고용주로부터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며, ‘적격한 계획(qualified accountable plan)’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비용을 환급받은 경우 해당 보전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관련 비용도 공제되지 않음

-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통상적인 비용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음⁵⁾

3) IRC Reg. § 1.1-1(b)

4) 김재진·박수진·이형민(2014), p. 52

- 개인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 업무와 관련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여비, 교통비 및 출장비
- 업무와 관련 있는 고객을 위한 식비, 유흥비 등의 접대비
- 자택근무 시의 홈 오피스 운영유지비용
- 노동조합이나 기타 근로소득자 조직 단체에 납부하는 비용
- 기술향상, 고용계약 유지, 연봉인상 등을 위한 교육비용
- 새로운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보험료
- 고용 계약의 위반에 대한 전 고용주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나. 비과세 근로소득

-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 이른바 부가급부(fringe benefits)는 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부가급부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⁵⁾
- 추가비용 없는 서비스(No-additional-cost services)
 - 고용주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로서 동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때 추가적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관련 혜택에 대하여 비과세함
 - 예, 항공사 직원의 빈자리 탑승
- 직원 할인(Employee discounts)
 - 고용주의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고객에게 판매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할인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예, 용역의 경우 20% 할인

5)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9/ar02.html>, (검색일자: 2017.4.18.); 김재진·박수진·이형민(2014), pp. 52~53

6)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lications/p15b/ar02.html#en_US_2017_publink1000193627, (검색일자: 2017.4.17.); IRC § 132; Reg. §§ 1.132-1 to -9

- 근무조건상의 혜택(Working condition fringe benefits)
 - 고용주의 영업수행을 위해 작업 조건상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물품(property)이 나 서비스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예, 업무 수행을 위한 회사소유 차량의 사용, 업무관련 교육훈련 지원금, 업무용으로 제공된 휴대전화 등

- 소액 혜택(De minimis fringe benefits)
 - 제공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너무 작아서 회계처리하는 것이 비합리적 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을 때 비과세함
 - 다만, 이러한 비과세 판단에 있어 혜택의 제공 횟수가 고려되어야 함
 - 예,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다과, 야근식대 등

- 출퇴근용 교통 관련 혜택(Transportation fringe)
 - 근로자 자택에서 사업소까지의 통근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버스의 제공, 통행권 (transit pass) 제공, 주차공간의 제공 및 출퇴근용 자전거에 대한 비용 보상액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월 일정액의 한도 제한을 받음
 - 예, 주차공간의 제공 월 255달러 한도(2017년 기준)

- 이사비용 보상액(Moving expense reimbursements)
 -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자 이주비용에 대한 보상액은 과세하지 않음

- 퇴직연금 플랜 서비스(Retirement planning services)
 - 적격 퇴직연금 플랜 제도를 두고 있는 고용주에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자 자신 및 그의 배우자의 퇴직연금 플랜과 관련된 자문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 서비스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니함

- 재해 및 건강 관련혜택(Accident and health benefits)
 - 고용주가 근로자의 질병 및 상해상의 의료비 지급을 위하여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기금 등을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함

- 포상(Achievement awards)
 - 근로자에게 무재해달성 및 근속 등의 사유로 제공하는 포상에 대하여 1,600달러(비적격포상은 400달러) 한도로 과세하지 않음
 - 단, 현금 및 현금등가물, 상품권 및 무형자산으로 제공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고용주가 지원해 주는 각종 보험료
 - 근로자를 위해 불입하는 적격 ‘단체 생명보험(group-term life insurance)’ 보험료를 비과세함
 - ‘건강보험 플랜(health insurance plan)’에 따라 고용주가 지원해주는 건강보험료는 비과세함

- 교육비 지원(Educational assistance)
 - ‘적격 프로그램(qualified program)’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연 5,250달러 이하의 교육비 지원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자녀 돌봄 지원(Dependent care assistance)
 - ‘적격 프로그램(qualified program)’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연 5,000달러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일정한 식사 및 숙박(meals and lodging)의 제공
 -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 및 사업장 내의 숙박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그 가치 상당액을 비과세함

- 그 외, 입양지원(Adoption assistance), 사내 운동시설(Athletic facilities)지원, 건강저축계정(Health saving accounts) 납입 등에 대하여 비과세함

- 이상의 비과세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소액의 금전적 혜택 또는 현물지원
 - 추가 비용 없는 서비스, 직원 할인, 소액의 혜택, 포상금, 사내운동시설지원

- 근로와 관련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근무 조건상의 혜택, 출퇴근용 교통관련 혜택, 이사비용, 일정한 식비 및 숙박비
- 퇴직, 상해 등에 대한 보험료, 또는 관련 서비스
 - 퇴직연금 플랜 서비스, 재해 및 건강관련 혜택, 각종 보험료, 건강저축계정 납입금
- 업무 관련 교육비
- 포상금 등
- 자녀돌봄 및 입양 지원 서비스
 - 자녀돌봄지원, 입양지원

2. 영국

가. 근로소득 과세 개요

-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benefits in kind)는 명목 여하에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됨
 - 근로소득에는 급여(Salary), 각종 혜택(benefits in kind), 연금소득, 이사에 대한 보상액 등이 포함됨
 - 특히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다음과 같은 비현금성 혜택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됨
 - 현금으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며, 실질적 가치가 있는 혜택
 - 근로자의 금전적 채무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 급여(salary) 대신으로 받는 비현금성 혜택
-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경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⁷⁾
 -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한 제복 세탁비

7)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3.1.4., (검색일자: 2017.4.19.);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tax-relief-for-employees/overview>, (검색일자: 2017.4.20.)

- 근로자가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관련 지출액
- 홈 오피스 비용 등
 - 단, 1주일에 4파운드 한도

나.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명목 여하의 모든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의 개인 소유 차량(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mileage allowance)
 - 국세청(HMRC)은 비과세로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 공시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 1만 마일까지는 마일당 0.45파운드, 그 이상의 주행거리에 있어서는 마일당 0.25파운드를 최대 한도로 함⁸⁾
- 적격대출 등⁹⁾
 - 근로자 등에게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적격대출을 하거나, 소액대출(1년 통산 10,000파운드 이하)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그에 따른 이익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 업무관련 훈련비용, 교육비용 보조액은 비과세됨¹⁰⁾
-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보조하는 식사 등¹¹⁾
 - 모든 근로자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이거나 타당한 정도의 보조적인 것이어야 함
 - 직장에서의 뜨거운 음료와 물도 과세되지 않음

8)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expenses-and-benefits-business-travel-mileage/rules-for-tax>, (검색일자: 2017.4.17.)

9)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26132>, (검색일자: 2017.4.18.)

10) ITEPA 2003, s.240, 250

11) ITEPA 2003, s.240, 317

□ 주거시설¹²⁾

-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거시설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함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 근로자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 등대지기)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되었고 이것이 관례인 경우(예. 호텔 관리인)
 - 업무상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예. 총리공관)
 -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 핸드폰 지원비용¹³⁾

- 사업주가 제공하는 핸드폰으로 2006년 4월 6일 이후 근로자에게 임대되는 경우에는 관련 핸드폰 지원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 사업주가 제공하는 일정한 직장 탁아시설¹⁴⁾

- 고용주가 제공하는 탁아시설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 납세자의 소득구간별로 비과세 한도를 달리 적용함
 - 기본 구간(Basic) 근로자 주당 55파운드, 고소득 구간(High) 근로자 주당 28파운드, 초과소득 구간(Additional) 근로자 주당 25파운드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서비스 등¹⁵⁾

- 사업주가 작업장 출퇴근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통근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중버스 이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함
- 과세면제 조건으로 사용버스는 12인승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9인승 이상의 미니버스도 허용
- 그 외,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용 자전거와 자전거 안전장비도 비과세함

12) ITEPA 2003, s.314, 315; British Master Tax Guide 2015-16, p.73

13) ITEPA 2003, s.319

14)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expenses-and-benefits-childcare/whats-exempt>, (검색일자: 2017.4.19.)

15) ITEPA 2003, s.242, s.243, s.245

□ 제안포상금 등¹⁶⁾

- 좋은 제안 및 장려 포상금: 25파운드 한도
- 직원 제안에 의한 비용절감 포상금: 5,000파운드 한도

□ 기타 다음 항목에 대해서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거나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함¹⁷⁾

- 이사 또는 재배치 비용 지원금(8,000파운드 한도)¹⁸⁾
- 사업장 내의 주차장 사용¹⁹⁾
- 부당해고, 부상 등에 의한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
-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숙식 제공
- 사망 또는 퇴직에 대한 보상 일시금
-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 사업장 내의 체력단련시설
- 제복 및 작업복²⁰⁾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예, 스트레스, 직장 내 문제 등)
- 임원진에 대한 업무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
-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지급받는 소액의 개인용품

□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소액의 금전적 혜택 또는 현물지원
 - 적격대출 등, 사업장 내의 체력단련시설
- 근로와 관련된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
 - 근로자의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보조하는 식사 등, 주거시설 지원, 핸드폰 지원비용,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서비스 등, 이사 또는 재배치 비용

16)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expenses-and-benefits-employee-suggestion-schemes>, (검색일자: 2017.4.19.)

17)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3.2., (검색일자: 2017.4.19.)

18)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expenses-and-benefits-relocation/whats-exempt>, (검색일자: 2017.4.19.)

19)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expenses-and-benefits-car-parking-charges/whats-exempt>, (검색일자: 2017.4.19.)

20)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expenses-and-benefits-clothing/whats-exempt>, (검색일자: 2017.4.19.)

지원금, 사업장 내의 주차장 사용,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숙식 제공, 제복 및 작업복,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지급받는 소액의 개인용품

- 퇴직, 상해 등에 대한 보험료, 또는 관련 서비스
 - 부당해고, 부상 등에 의한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 사망 또는 퇴직에 대한 보상 일시금,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예. 스트레스, 직장 내 문제 등), 임원진에 대한 업무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
- 업무 관련 교육비
- 제안포상금 등
- 자녀돌봄 및 입양 지원 서비스
 - 사업주가 제공하는 일정한 직장 탁아시설

3. 일본

가. 근로소득 과세 개요

- 근로소득은 봉급, 급여, 임금, 세비(歳費) 및 상여금 및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에 관련된 소득을 말함²¹⁾
 - ‘급여’는 고용계약과 이에 준하는 계약에 근거하여 고용주에게 속해 비독립적으로 제공했던 노무대가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지불을 받는 급여를 말함
 - 「소득세법」 제28조는 예시규정으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던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급여소득이 됨
- 급여는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식사 현물과 제품가격 인하 판매 등 다음과 같은 물건 또는 권리, 기타 경제적 이익을 통해 지급될 수도 있음²²⁾
 - 상품의 무상 및 할인제공
 - 부동산의 무상 및 할인 이용
 -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

21) 일본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22) Japan Master Tax Guide 2015-2016, p.142

- 일본은 근로자가 지출한 업무 관련 특정비용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²³⁾
 - 업무 관련 특정비용에는 통근비용, 전근비용,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자격취득비용(업무수행과 관련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업무수행관련 도서·의복구입비·업무관련 접대 등을 위한 지출액(단, 총합계 기준 650,000엔 한도)이 있음

나. 비과세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은 일본의 「소득세법」 제9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지 않는 근로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전부 급여로 과세되는데,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요 비과세 부가급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직무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 근로자의 출장경비, 전근여비 등
- 통근수당²⁴⁾
 - 전철이나 버스만 이용해서 통근하는 경우에 비과세금액은 통근을 위한 운임·시간·거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통근하는 경우에 필요한 통근정기권 등의 금액임
 - 승용차와 자전거를 사용하여 출근하는 경우의 비과세 한도액을 포함해서 최대 1개월당 15만엔까지 비과세함
 - 본인 승용차, 자전거를 사용하여 출근하는 경우에는 편도의 통근거리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됨
-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²⁵⁾
 -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성 등에 대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과세하지 않음

23) IBFD - Japan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3.1., (검색일자: 2017.4.19.); 김재진·박수진·이형민(2014), p.91

24)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gensen/2582.htm>, (검색일자: 2017.4.18.)
<https://www.nta.go.jp/taxanswer/gensen/2585.htm>, (검색일자: 2017.4.18.)

25)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gensen/2601.htm>, (검색일자: 2017.4.18.)

□ 창립기념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등²⁶⁾

- 다만, 기념품 지급 등의 비용부담을 대신하여 현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봄
- 창립기념품 비과세 요건
 - 지급하는 기념품이 사회 일반적으로 기념품에 적합한 것
 - 기념품 처분 예상 평가금액이 1만엔(세금 별도) 이하일 것
 - 창립기념 외에 이와 같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행사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지급하는 것
- 장기 근속자 기념품 비과세 요건
 - 근속연수와 지위 등에 비추어 사회 일반적으로 보아 인정되는 금액 이내의 것
 - 근속연수가 대체로 1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

□ 식사²⁷⁾

-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사 등은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함
 - 임원이나 종업원이 식사대의 절반 이상을 부담할 것
 - 식사대에서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식사 가격) -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매월 3,500엔(세금 별도) 이하일 것
- 심야 근무자에게 식사대로 지급하는 300엔(세금 별도)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함
- 잔업이나 당직 등으로 식사를 현물로 보조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함

□ 사택²⁸⁾

- 종업원에게 사택 등을 대여하고 종업원에게 법정 기준임대료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 종업원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상당액을 급여로 과세하며, 저가에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취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차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함

26)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gensen/2591.htm>, (검색일자: 2017.4.17.)

27)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gensen/2594.htm>, (검색일자: 2017.4.18.)

28)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gensen/2597.htm>, (검색일자: 2017.4.18.)

<https://www.nta.go.jp/taxanswer/gensen/2600.htm>, (검색일자: 2017.4.18.)

- 단, 수취임대료가 기준임대료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료의 차액을 급여로 과세하지 않음
- 임원의 경우 소규모 사택을 대여하고 기준임대료 이상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나, 무상 또는 저가에 대여하는 경우 수취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차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함

□ 직원 야유회 및 교육훈련 경비²⁹⁾

- 4박5일 이내이고 종업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직원 야유회 경비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 업무수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 훈련 경비는 비과세함

□ 금전 대여³⁰⁾

-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법정금리 이하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법정금리와 수취금리의 차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함
 - 재해나 질병 등으로 임시로 고액의 생활자금이 필요한 임직원에게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상환기간 및 금액의 돈을 대부하는 경우
 - 회사 차입금의 평균조달금리 등 합리적인 대출금리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 그 외 법정금리와의 차액이 5,000엔(1년 기준) 이하인 경우

□ 그 외 국외근무자의 해외근무수당, 외국정부 등에 근무하는 자의 급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유니폼 등에 대하여 비과세함

□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소액의 금전적 혜택 또는 현물지원
 - 창립기념 기념품, 직원 야유회 경비, 특정한 경우의 금전적 대여
- 근로와 관련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29)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gensen/2603.htm>, (검색일자: 2017.4.18.)

30)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gensen/2606.htm>, (검색일자: 2017.4.18.)

- 직무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통근수당, 식사, 사택(법정 기준임대료 이상을 받은 경우), 국외근무자의 해외근무수당, 업무수행상 필요한 유니폼 등
-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
- 포상금 등
 -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등
- 외국정부 등에 근무하는 자의 급여

4. 호주

가. 근로소득 과세 개요

-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용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함
 - 급여, 상여(bonuses), 수수료(commissions), 육아휴가수당(parental leave pay), 직원 보상프로그램(a workers compensation scheme) 또는 질병 및 재해보상정책(a sickness or accident insurance policy) 등에 의한 수령금 등의 금액을 포함함³¹⁾
-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업무비용은 비과세 항목이 아닌 필요경비로 보아 총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음³²⁾
 - 납세자인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 고용주가 관련 비용을 보전한 경우 또는 제3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 적용을 배제함
- 총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특정 업무비용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됨
 - 업무관련 차량비용(work-related car expenses): 업무관련 차량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 업무관련 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 택시요금 등 대중교통비용, 통행료, 주차료, 식대, 숙박비 등 출장과 관련된 비용, 기타 차량 관련 비용, 주유대, 수선비 등은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음

31)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Income-you-must-declare/Employment-income/>, (검색일자: 2017.4.20.)

32) ATO(2017), p. 24

- 업무관련 유니폼, 작업복(occupation-specific clothing), 보호장비(protective clothing) 등 구입비용과 세탁비, 수선유지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음
- 기타 시간외근무 식대, 협회비, 업무관련 전문 세미나 강좌 참석비, 홈 오피스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나. 비과세 근로소득

-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는 부가급여(fringe benefits)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과세되지 않고 별도로 고용주에게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로 과세됨³³⁾
 - 예, 자동차 관련 규정, 저리대출, 휴가 시 급여지급, 주거비용 등의 지급 등
- 참고로, 업무와 관련된 다음의 항목 등은 부가급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³⁴⁾
 - 소액 부가급여
 - 300호주달러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급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휴대용 전자기기(예. 휴대폰, 노트북 등), 컴퓨터소프트웨어
 - 보호장비, 서류가방, 영업을 위한 장비
 - 출장 택시비
 - 소규모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주차비용
 - 전근비용 등

5. 독일

가.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 독일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크게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함(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 제2조 제1항)

33)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Income-you-must-declare/Employment-income/#Reportablefringebenefitsandsupercontrib1>, (검색일자: 2017.4.20.)

3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fringe-benefits-tax-\(fbt\)/fbt-exemptions-and-concessions/](https://www.ato.gov.au/General/fringe-benefits-tax-(fbt)/fbt-exemptions-and-concessions/), (검색일자: 2017.4.20.)

- 농림업소득
 - 사업소득
 - 자유직업소득
 - 근로소득
 - 자본자산소득
 - 임대소득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농림업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자본자산소득 및 임대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함³⁵⁾
- 이와 같은 기타소득에는 사적 연금(private Rente) 및 보조금 등과 같은 반복적 수입금, 이혼 등에 따른 부양료(Unterhaltsbezüge), 사적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등이 포함됨
- 위에서 본 7개의 소득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한정하여 열거한 것이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조세법률의 공백영역)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 소득의 유형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나. 근로소득의 정의

- 근로소득(Einkünfte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이란 세법상 근로자가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근무관계에 기초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일체의 대가를 말함
- 근로자(Arbeitnehmer)는 공적·사적 역무제공관계에 고용된 자 또는 고용되었던 자로서 그 근로관계 또는 과거의 근로관계로부터 임금(Arbeitslohn)을 수취하는 자를

35) 독일은 과세소득을 규정함에 있어서 열거주의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농림업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자본자산소득 및 임대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업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자본자산소득 및 임대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열거하고 있는 소득만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있음 (김완석·정지선(2017) p. 65)

말함(Lohn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LStDV 제1조 제1항 제1호)³⁶⁾

- 근로자는 개념적으로 기업가(Unternehmer)와 준별되는데, 그 준별의 핵심은 독립성(Selbständigkeit)과 종속성(Unselbständigkeit)임
- 독립성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활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독립성의 유무가 문제될 때에는 계약관계, 활동방법, 보수의 형식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³⁷⁾
- 세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자연인으로서 역무제공관계에서 지시에 구속되거나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관련하여 기업가와와는 다르게 영리행위의 재산위험에서 자유로운 자를 말함³⁸⁾

□ 다음으로 일체의 대가에는 봉급, 임금, 사례, 상여 및 그 밖의 급여 등 역무제공관계에서 유입되는 모든 이익이 포함됨(LStDV 제2조 제1항 제1호)

- 경상적이거나 일회적 이익, 현금이익이나 현물이익 모두를 포함함
- 그러나 역무제공 관계에 근거를 두지 않은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기부금(Zuwendung) 수수와는 구분하여야 함³⁹⁾

□ 한편, 제3자에 의한 급부(예: 팁, 파업보조금, 장려금)가 독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이익에 속하는지, 속한다면 그 범위가 어떠한지는 분명하지 않음

- 판례와 실무는 제3자 급부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인에게 제공한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서 과세할 수 있다고 함⁴⁰⁾

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3조의 일부와 제3b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36) 근로소득 안에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외에 퇴직소득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37) BFH BStBl. 69, 282; 79, 530.

38) Tipke/Lang, Steuerrecht, 22.Aufl., Dr. Otto Schmidt, 2015, Rn. 472.

39) Tipke/Lang, Steuerrecht, 22.Aufl., Dr. Otto Schmidt, 2015, Rn. 474.

40) BFH BStBl. 2013, 644; Tipke/Lang, Steuerrecht, 22.Aufl., Dr. Otto Schmidt, 2015, Rn. 474.

- 비과세 근로소득을 크게 재정목적 비과세(Fiskalzweckbefreiungen)⁴¹⁾, 사회목적 비과세(Sozialzweckbefreiungen)⁴²⁾ 및 간소화 비과세(Vereinfachungsbefreiungen)⁴³⁾의 3가지로 유형화하여 세분하는 견해⁴⁴⁾가 있음
- 다음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그 성격에 따라 <표 III-1>의 독일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유형과 같이 9개로 유형화하여 설명함

<표 III-1> 독일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유형

구분	내용	근거 조문
1	사회정책적 급여	제3조 제2호, 제3조 제9호, 제3조 제24호, 제3조 제62호
2	근로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급부(제복, 식비 등)	제3조 제4호, 제3조 제31호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급부 및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부조	제3조 제5호, 제3조 제6호
4	실비변상을 위한 급부	제3조 제13호, 제3조 제16호, 제3조 제30호, 제3조 제50호, 제3조 제51호
5	특정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것	제3조 제20호, 제3조 제26호, 제3조 제26a호, 제3조 제26b호, 제3조 제40a조, 제3조 제46호
6	통독과정에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	제3조 제23호
7	외교관 등에 대한 특례	제3조 제29호
8	과세행정의 부담 등의 고려	제3조 제45호, 제3조 제51호
9	일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급여	제3b조

41) 외교관 비과세(§ 3 Nr. 29), 출소자부조법 등에 따른 급부에 대한 비과세(§ 3 Nr. 23) 등이 이에 해당함.
 42) 체육지도자 등의 부수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으로서 연간 2,400유로 이하의 금액에 대한 비과세 (§ 3 Nr. 26), 해고위로금 비과세(§ 3 Nr. 9) 등이 이에 해당함.
 43) 연방국방군 등에 대한 제복의 가격 및 급식가액 비과세(§ 3 Nr. 40), 공공금고로부터 지급된 여비 보전액 등에 대한 비과세(§ 3 Nr. 13), 민간 근로자의 고용인으로부터의 여비 등의 보전액 비과세 (§ 3 Nr. 16),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의 보전액 비과세(§ 3 Nr. 50) 등이 이에 해당함.
 44) Tipke/Lang, Steuerrecht, 22.Aufl., Dr. Otto Schmidt, 2015, Rn. 138-140.

1) 사회정책적 급여

□ 「사회법전」 제3편에 따른 실업수당 등

-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제3편 제3조에 규정된 수단을 통한 국가의 급부제공(staatliche Leistungsgewährung)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비과세임⁴⁵⁾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법전」 제3편에 따른 실업수당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제3조 제2호)
 - 「사회법전」 제3편에 따른 실업수당, 부분실업수당, 단축근로수당, 노동보상을 위한 보조금, 임시보조금, 설립보조금, 「사회법전」 제3편 및 그에 상응하는 연방 및 란트의 프로그램에 따른 그 밖의 급부로서 근로자 또는 구직자 또는 수령자의 교육 또는 창업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
 - 「사회법전」 제3편 제165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에 따른 도산급여, 「사회법전」 제3편 제169조, 제175조 제2항에 따른 급부 및 「사회법전」 제10편의 제11조 제1항에 따른 법정채권이전에 따라 지급되는 것
 - 「군인연금법」에 따른 실업자구조금
 - 「사회법전」 제2편에 따른 생활비 보장과 근로 편입을 위한 급부 등
- 해고위로금(제3조 제9호)
- 근로자의 장래보장을 위한 고용인의 경비로서 고용인이 사회보험적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 규정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제56호 및 제63호에 따른 기부금 등에 속하지 않는 것(제3조 제62호)
 - 장래보장급부를 위한 기여분을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정인데, 문언에 따르면 근로자를 위한 고용인의 급부만을 비과세하는 것임.⁴⁶⁾

□ 「연방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부

- 「연방 아동수당법」에 따른 급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함(제3조 제24호)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독일 「소득세법」 제62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됨⁴⁷⁾

45) Erhard in Blümlich, EStG Kommentar, 135.Aufl., 2017, § 3 Nr. 2 Rn. 2.

46) BFH XI R 37/88 v. 8.4.92, BStBl II 92, 812.

47) Erhard in Blümlich, EStG Kommentar, 135.Aufl., 2017, § 3 Nr. 24. Rn. 2.

2) 근로제공 과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급부(제복, 식비 등)

□ 연방국방군 등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가액 등

- 연방국방군, 연방경찰, 연방국경경비대, 주의 경찰예비대, 주 및 게마인데의 행정경찰 및 직업소방대의 소속원 및 연방, 주 및 게마인데의 형사경찰의 집행공무원에 대한 공급제복의 가액, 제복착용 및 착용준비 의무를 지는 자 및 형사경찰 집행공무원 및 연방국경경비대의 근무상 필요한 의복을 위한 의복보조금 및 감모보상금, 식비수당 및 출근시 무상으로 지급되는 급식가액과 법률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의료부조의 가액(제3조 제4호)
- 일부 내용은 다음의 제3조 제31호와 부분적으로 중복됨

□ 전형적인 직업복으로서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제3조 제31호)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급부 등

□ 병역기간 동안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제4조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 및 현물 등 (제3조 제5호)

- 병역기간 동안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제4조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 및 현물
- 대체복무자가 「대체복무법」 제35조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 및 현물
- 「군인급여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군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연방 예비군에 대하여 「군인급여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 군인이 「군인급여법」 제6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부조 및 대체복무자가 「대체복무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부조
- 제32조 제4항 제1문 제2호 d)에 따른 자원봉사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또는 그와 유사한 금전급부
- 제3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는 사회목적 비과세이면서 동시에 재정목적 비과세에 해당함⁴⁸⁾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적자금으로부터 부조를 위하여 상이군인 등에게 지급되는 급부로서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급부가 아닌 것(제3조 제6호)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적자금으로부터 부조를 위하여 상이군인 및 상이군속, 또는 이러한 자의 유족, 전시부상자, 전시유족 및 이러한 자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로서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급부가 아닌 것
 - 「연방부조법」에 따른 「급부청구권」 또는 「군인부조법」, 「공무원부조법」 또는 그와 유사한 「란트법」에 따라 재해부조급여권을 갖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 이와 같은 비과세는 공공복리원칙(Gemeinwohlprinzip)에 따른 것임⁴⁹⁾

4) 실비변상을 위한 급부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의한 비용변상
 - 연방법률이나 주법률 또는 이들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규정에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의한 비용변상으로 정하여지고 예산에 비용변상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연방금고 또는 주금고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제3조 제12호)
 - 이 경우 공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으로서 공금고에서 지급되는 기타의 지급금도 비과세로 함
- 공공금고로부터 지급되는 여비 및 이전비 보전과 별거수당
 - 여비보전으로서 지급되는 식대보상은 제9조 제4a호에 따른 개산(概算)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비과세함(제3조 제13호)
 - 별거수당은 제9조 제1항 제3문 제5호 및 제4a조에 따른 공제 가능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로 함
- 민간의 근로자가 고용인으로부터 여비 및 근무에 따른 이전비 또는 복수의 가사를 유지함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보상으로서 그 금액이 제9조에 따라 취득원가로서 공제될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제3조 제16호)

48) Erhard in Blümlich, EStG Kommentar, 135.Aufl., 2017, § 3 Nr. 5 Rn. 3.

49) Erhard in Blümlich, EStG Kommentar, 135.Aufl., 2017, § 3 Nr. 6 Rn. 1.

- 근로자의 도구를 영업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도구수당)으로서 그 액수가 그에 대한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제3조 제30호)
- 근로자가 고용인을 위하여 지출할 목적으로 고용인으로부터 받는 금액(가지급금) 및 고용인을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의 보전액(제3조 제50호)
 - 본래부터 과세되는 임금에 속하지 않는 지급이 비과세됨을 확인하는 규정임⁵⁰⁾

5) 특정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것

- 연방 대통령이 도덕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특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여하는 이익(제3조 제20호)
- 체육지도자 등의 부수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으로서 연간 2,400유로 이하의 금액
 - 유럽연합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회원국에 소재한 공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공익·자선·종교 목적의 증진을 위한 기관과의 근로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체육지도자, 트레이너, 보조, 안내담당자 또는 이에 준하는 부수적 직업활동, 부수적 직업활동에 속하는 예술활동 또는 부수적 직업활동에 속하는 노인, 환자, 장애인 간호활동을 하고 수령한 수입으로서 연간 2,400유로 이하의 금액(제3조 제26호)
 - 사회목적 비과세에 속하며 명예로운 활동에 대하여 우대하기 위한 규정임⁵¹⁾
- 유럽연합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회원국에 소재한 공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공익·자선·종교 목적의 증진을 위한 기관과의 근로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행하는 부수적 직업활동을 통하여 수령한 수입으로서 연간 720유로 이하의 금액(제3조 제26a호)
 - 제3조 제26호와 같은 취지의 규정임
 - 다만, 적용범위가 제26호보다 포괄적이므로 오히려 일반규정의 성격을 가짐

50) Erhard in Blümlich, EStG Kommentar, 135.Aufl., 2017, § 3 Nr. 50 Rn. 1.

51) BFH VI R 188/87 v. 30.3.90, BStBl II 90, 854; VI R 25/04 v. 11.5.05, BStBl II 05, 791.

- 위의 활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부 또는 일부 제3호 제12호, 제26호에 따라 비과세될 경우 본 호의 비과세는 배제됨
- 제3조 제26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인데, 다만 그 적용범위가 제26호보다 포괄적이므로 오히려 일반규정적인 성격이 있음

6) 통독 과정에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

- 「출소자부조법」, 「형사법적 사회복귀법」, 「사회복귀행정법」 및 「직업적 사회복귀법」에 따른 급부(제3조 제23호)
 - 이 조항은 과거 동독의 법원 및 행정관청의 반법치국가적 결정으로 인한 보상 급부에 대하여 비과세하기 위한 것임

7) 외교관 등에 대한 특례

- 외교관, 영사 및 그에 배속된 공무원 및 그에게 봉사하는 자가 수취하는 임금과 급여(제3조 제29호)

8) 과세행정의 부담 등의 고려

- 근로자가 영업상의 정보처리기계와 정보통신기계 및 그 부대설비를 이용하는 이익, 근로자가 그 영업에 이용하는 사적 용도에 제공된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의 이익과 이러한 이익의 결합에서 얻는 용역의 이용(제3조 제45호)
-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더하여 제3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봉사료로서 근로자가 그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지 않는 것(제3조 제51호)
 - 이른바, 팁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인데, 과세행정의 실효성과 관련이 있음
 - 다만 이 경우 조세공평이 문제가 될 수 있음⁵²⁾

52) Erhard in Blümlich, EStG Kommentar, 135.Aufl., 2017, § 3 Nr. 51 Rn. 1.

9) 일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급여

- 일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근무에 대하여 기본급여 외의 추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함(제3b조)
 - 야간근무의 경우 25퍼센트
 - 일요일근무의 경우 50퍼센트
 - 12월 31일 14시 이후 및 법정 공휴일의 경우 125퍼센트
 - 12월 24일 14시 이후, 12월 25일, 12월 26일 및 5월 1일의 근무의 경우 150퍼센트

- 기본급여는 경상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기준 통상 근로시간에 관하여 매 임금지급 시기마다 수령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급여는 시간급으로 환산되어야 하고 50유로를 초과하여 평가될 수 없음

10) 비과세 급여 요약

- 독일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서 소액의 금전적 혜택 또는 현물지원
 -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 근로와 관련된 실비변상적 급여
 - 제복, 식비, 여비, 이전비 등
 - 병역 의무자, 상이군인, 병역의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부
 - 사회정책적 목적의 비과세
 - 실업급여, 해고위로금 등
 - 특정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비과세
 - 체육지도자 등의 노인, 환자, 장애인 간호활동에 따른 부수적 수입(연 2,400유로 이내)
 - 공익·자선·종교 목적의 근로활동을 하고 수령한 부수적 수입(연 720유로 이내)

- 외교관의 급여
- 과세행정 부담을 고려한 비과세
 - 봉사료(팁)

6. 요약

- 이상에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5개국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조사대상국 모두 근로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실비변상적인 항목 등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 미국, 영국, 일본, 독일에서는 세법에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지급의 내용을 열거하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에 해당되는 것들임
 -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소액의 금전적 혜택 또는 현물지원
 - 근로와 관련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퇴직, 상해 등에 대한 보험료, 또는 관련 서비스
 - 업무 관련 교육비
 - 포상금 등
 - 자녀돌봄 및 입양 지원 서비스
- 비과세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일본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혜택에 대한 비과세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퇴직, 상해 등에 대한 보험료, 또는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원, 자녀돌봄서비스 등은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과세됨
 - 네 국가 모두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과세함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소득공제)
 - 근로자가 해당 경비를 고용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전액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관련 비용도 공제되지 않음(비과세)

-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의 급여가 포함됨
 - 소액의 출퇴근 관련 경비, 업무 관련 여비, 업무상 필요한 제복 관련 경비, 소액의 식사비 또는 현물로 지급된 식사, 사택이나 사내 숙박시설 등

- 독일은 다른 국가들보다 비과세 범위가 넓은 편임
 - 사회정책적 급여, 특정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급여, 병역의무에 따른 급여, 공휴일·야간 근무에 따른 추가급여 등도 비과세 항목에 포함됨

- 호주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비과세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고용주에게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를 과세함
 - 소액의 부가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부가급여세가 비과세됨
 - 300호주달러 이하이며 빈도가 낮아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실비변상적 급여: 휴대용 전자기기(예. 휴대폰, 노트북 등),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장비, 서류가방, 영업을 위한 장비, 출장 택시비, 소규모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주차비용, 전근비용 등

IV. 비과세 근로소득 규모 및 분포



Ⅳ. 비과세 근로소득 규모 및 분포

1. 분석자료

- 다음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로 비과세소득의 규모와 분포를 살펴봄

- 비과세 근로소득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세통계연보』의 분류에 따른 5가지 항목에 대한 현황자료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수집한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함
 - 『국세통계연보』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연구활동비와 국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그 밖의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공개함
 -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통계연보』에 제시된 5가지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과세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함
 - <표 IV-1>에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모든 세부항목과 그에 대한 법적근거를 정리함
 - 네 번째 열에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본 장에서 사용할 비과세 소득 세부항목의 이름을 정의하였음
 - 마지막 열에서 자료수집 여부를 제시하였는데, 그 밖의 비과세 소득의 두 가지 세부항목을 제외하고 가용한 모든 자료를 수집함

- 일부 비과세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명시된 전체 비과세 소득 중 일부 항목은 본 장의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 <표 IV-2>에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서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을 정리함

-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비과세 항목 중에는 조세지출로 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등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소득세법§12 3 너목)이 포함됨

<표 IV-1> 국세청이 보유한 비교세 근로소득 항목

국제통계연보 항목	법조문	비과세 세부항목 및 시행령 근거	세부항목이름	자료포함 여부
연구활동비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연구활동비-유·초·중등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 - 「고등교육법」	연구활동비-고등	○
	소득세법§12 3 자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 -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연구활동비-특별	○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연구기관 등	연구활동비-연구기관	○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기초진흥연구 등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
국외근로수당		소득령§16①(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국외근로수당-100만원	○
		소득령§16①(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국외근로수당-300만원	○
		소득령§16②(국외근로) 공무	국외근로수당-공무	○
야간근로수당	소득세법§12 3 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출산보육수당	소득세법§12 3 퍼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그밖의 비과세		소득세법§12 3 아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령§12 1(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경호, 승선수당	○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육교사 수당	○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수석교사 인건비	○
	소득세법§12 3 자	소득령§12 14(취제수당)	취제수당	○
		소득령§12 15(벽지수당)	벽지수당	○
		소득령§12 16(친제·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재해급여	○
		소득령§12 17(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이전기관 종사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국제기관 근무	○
	소득세법§12 3 파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표 IV-2> 분석 제외 대상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법조문	비과세항목
소득세법§12 3 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12 3 나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12 3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소득세법§12 3 라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소득세법§12 3 마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소득세법§12 3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소득세법§12 3 사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소득세법§12 3 자	소득령§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소득세법§12 3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소득세법§12 3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소득세법§12 3 하	중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소득세법§12 3 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법§12 3 러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현물 급식
소득세법§12 3 버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국세청에서 수집한 세부항목자료는 비과세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비과세 세부항목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의 소득구간별 과세정보를 담고 있음
 - 확보한 자료는 세부항목별 신고인원, 급여총계, 항목별 비과세 소득 규모, 결정세액 등임

2.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 <표 IV-3>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한 납세자와 비과세 근로소득을 신고한 인원 수를 정리하였음
 - 여기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국세통계연보』상의 비과세 소득 분류를 “대분류”로 정의하고, 세부항목별 분류를 “소분류”로 정의함

- 2015년 비과세 소득의 신청 인원 수는 192만명으로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1,733만 명의 11.1%였으며, 이 중 연구활동비 비과세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음
 - 비과세 소득 종류별로 보면, 연구활동비 비과세를 신청한 인원이 65만명으로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의 3.7%를 차지하였고,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신청한 인원은 51만명으로 2.9%,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를 신청한 인원은 48만명으로 2.8%를 차지함
 - 국외근로수당 비과세를 신청한 인원은 12만명으로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의 0.7%를 차지함
 - 그 밖의 비과세 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30만명으로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의 1.7%였음

- 대분류별 비과세 소득 신고인원의 연도별 변화를 정리한 [그림 IV-1]을 보면, 전체 비과세 소득 신고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비과세 소득 신고인원은 2011년 239만명에서 2015년 192만명으로 축소되었으며,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에서 11.1%로 축소됨

- 비과세 소득 신고인원의 축소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야간근로수당과 그 밖의 비과세로 2011년과 2015년 각각 신고인원이 75만명에서 51만명으로, 9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축소됨
 - 한편 다른 비과세 항목의 신고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인원은 2011년 38만명 2.4%에서 2015년 65만명 3.7%로 증가하였으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신고인원은 42만명 2.7%에서 48만명 2.8%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신고인원은 9만 6천명 0.6%에서 11만 5천명 0.7%로 증가함
 - 그 밖의 비과세 신고인원이 대폭 축소된 것은 <표 IV-3>에 나타나지 않은 작전임수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의 비과세를 신청한 인원이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이 항목은 그 밖의 비과세 합계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항목의 통계자료는 입수하지 못하였음
 - 통계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또 하나의 항목인 장학금의 경우 이 기간에 국가 장학금 확충으로 수혜자가 증가하였음

<표 IV-3>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인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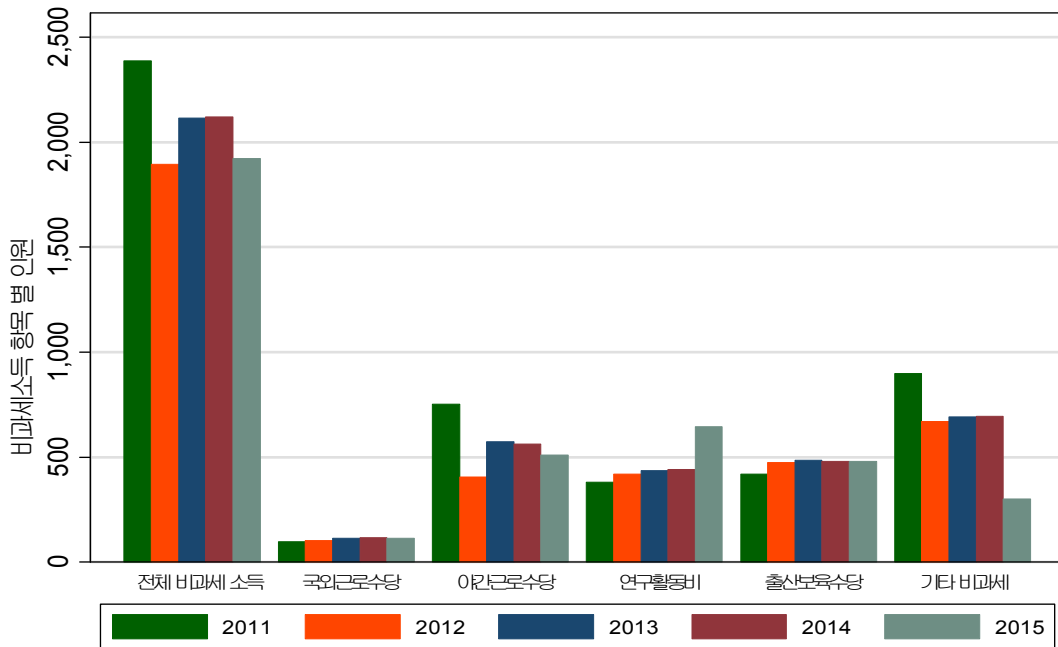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과세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근로소득	15,540,057	100.00	15,768,083	100.00	16,359,770	100.00	16,687,079	100.00	17,333,394	100.00	17,333,394	100.00
비과세소득	2,385,866	15.35	1,894,149	12.01	2,114,467	12.92	2,120,097	12.71	1,922,909	11.09	1,922,909	11.09
연구활동비	380,345	2.45	418,630	2.65	436,140	2.67	441,249	2.64	645,880	3.73	645,880	3.73
연구활동비-유·초·중등	223,093	1.44	247,472	1.57	244,316	1.49	249,099	1.49	448,181	2.59	448,181	2.59
연구활동비-고등	69,730	0.45	71,895	0.46	75,319	0.46	72,724	0.44	72,413	0.42	72,413	0.42
연구활동비-특별	10,969	0.07	11,116	0.07	11,342	0.07	11,496	0.07	11,545	0.07	11,545	0.07
연구활동비-연구기관	53,681	0.35	63,980	0.41	68,115	0.42	75,055	0.45	77,886	0.45	77,886	0.45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23,403	0.15	25,201	0.16	38,258	0.23	33,868	0.20	37,085	0.21	37,085	0.21
국외근로수당	96,090	0.62	104,081	0.66	112,554	0.69	117,564	0.70	115,127	0.66	115,127	0.66
국외근로수당-100만원	38,347	0.25	39,613	0.25	45,243	0.28	47,051	0.28	44,319	0.26	44,319	0.26
국외근로수당-300만원	46,723	0.30	54,016	0.34	58,202	0.36	61,159	0.37	63,319	0.37	63,319	0.37
국외근로수당-공무	11,608	0.07	11,278	0.07	11,794	0.07	10,733	0.06	8,721	0.05	8,721	0.05
야간근로수당	753,260	4.85	406,754	2.58	572,640	3.50	563,805	3.38	510,329	2.94	510,329	2.94
출산보육수당	420,091	2.70	473,116	3.00	484,222	2.96	480,641	2.88	478,973	2.76	478,973	2.76
기타비과세	899,457	5.79	670,835	4.25	690,467	4.22	694,921	4.16	300,866	1.74	300,866	1.74
비과세학자금	18,103	0.12	18,202	0.12	17,662	0.11	13,822	0.08	12,668	0.07	12,668	0.07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41,489	0.27	36,873	0.23	45,404	0.28	30,846	0.18	44,555	0.26	44,555	0.26
경호·승선수당	31,135	0.20	32,053	0.20	32,397	0.20	35,274	0.21	35,253	0.20	35,253	0.20
보육교사 수당		0.00	1,883	0.01	5,176	0.03	3,152	0.02	3,209	0.02	3,209	0.02
수석교사 인건비		0.00	1,225	0.01	2,231	0.01	2,462	0.01	2,345	0.01	2,345	0.01
취재수당	14,478	0.09	13,580	0.09	14,146	0.09	14,249	0.09	13,898	0.08	13,898	0.08
별지수당	39,966	0.26	48,258	0.31	49,626	0.30	50,163	0.30	30,382	0.18	30,382	0.18
채해급여	15,464	0.10	37,803	0.24	38,076	0.23	37,730	0.23	40,537	0.23	40,537	0.23
이전기관종사자		0.00		0.00	4,941	0.03	15,153	0.09	24,363	0.14	24,363	0.14
국제기관 근무	217	0.00	53	0.00	54	0.00	17	0.00	510	0.00	51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 비과세 소득 대분류별 신고인원 변화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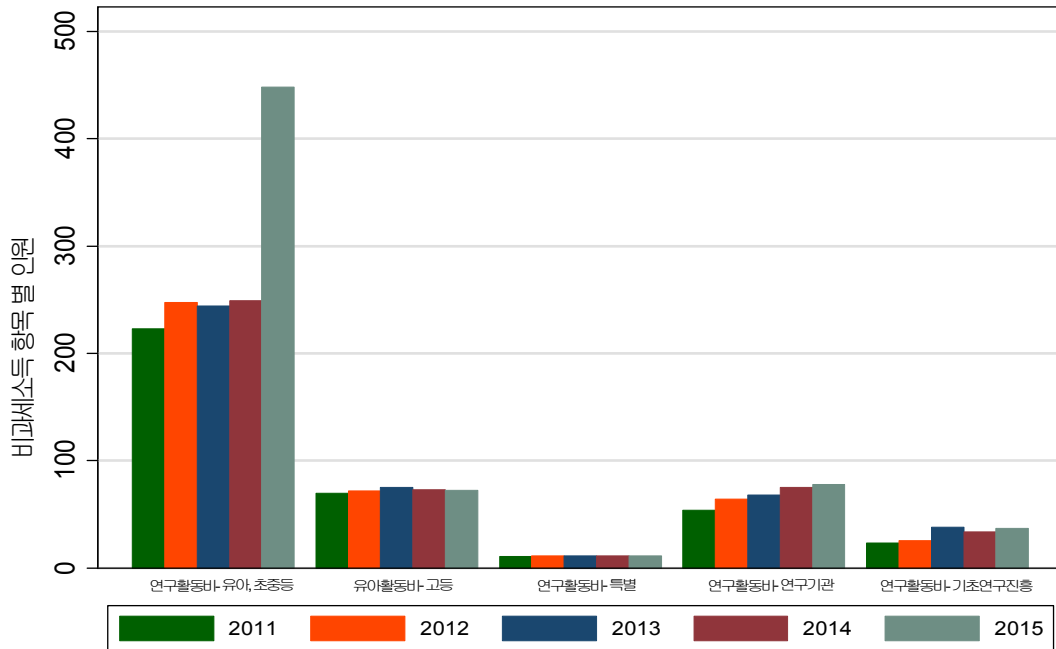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그림 IV-2]는 연구활동비 세부항목 신고인원의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였는데, 대체로 모든 세부항목의 신고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중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연구활동비 신고인원 증가가 뚜렷함
 -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신고한 인원은 2014년 25만명에서 2015년 45만명으로 약 1.8배로 크게 증가함
 - 그 밖의 연구활동비 세부항목 중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신고인원이 뚜렷한 증가세에 있는 것이 확인되지만, 그 외의 항목은 대체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IV-3]은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 신고인원의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였는데, ‘국외수당-공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증가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국외근로수당-300만원’의 신고인원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이는 전체 국외근로수당 신고인원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
 - ‘국외근로수당-300만원’ 신고인원 증가는 이 항목의 비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2]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별 신고인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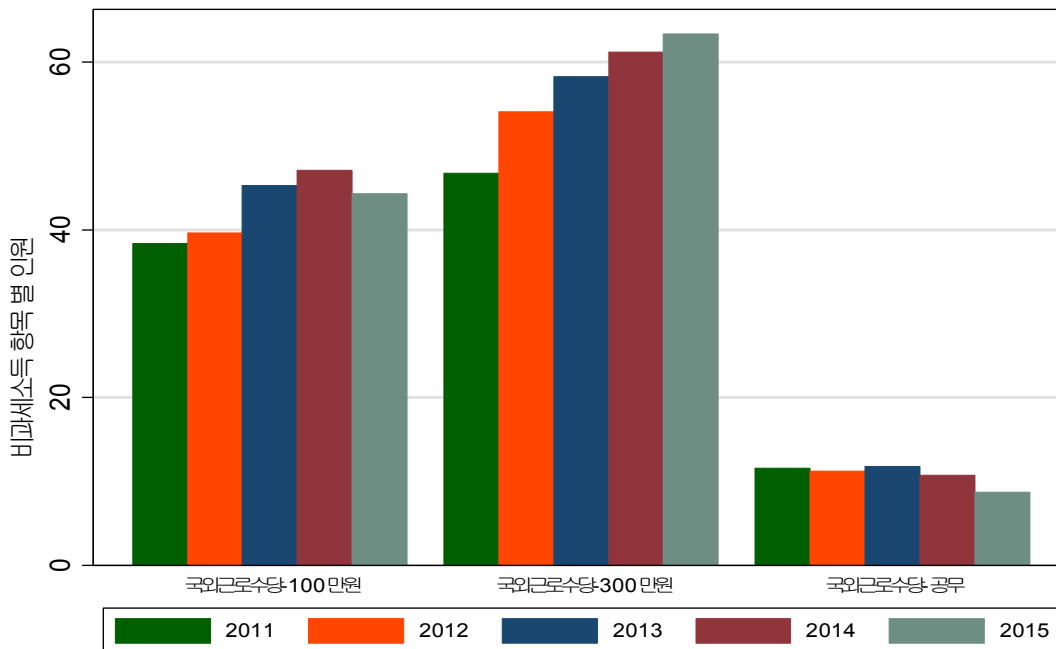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3] 국외근로수당의 세부항목별 신고인원 변화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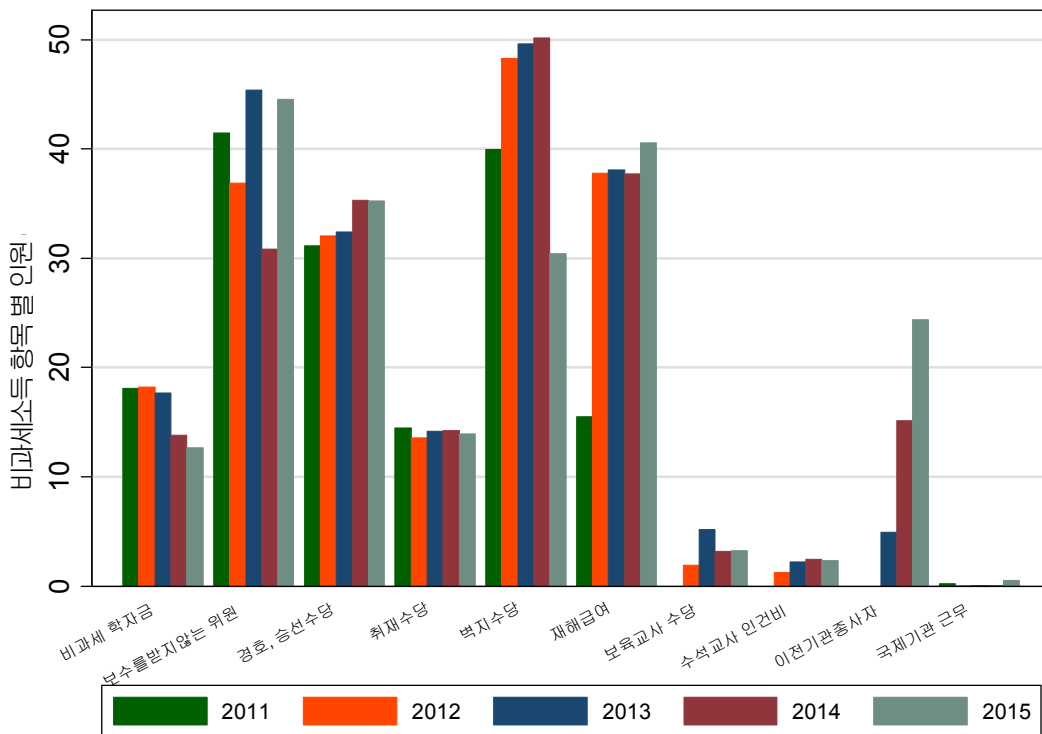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그림 IV-4]에서는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 신고인원의 연도별 변화를 정리하였는데, 벽지수당, 비과세 학자금 등의 신고인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비과세 항목의 신고인원은 세부항목별로 크지는 않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경호·승선수당, 재해급여, 벽지수당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함
 - 비과세 학자금의 신고인원 감소가 뚜렷하며, 벽지수당 비과세 신고자는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에 크게 축소되었음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4년과 2015년에 이전기관 종사자 수당 비과세 신청자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재해급여 비과세 신청자는 2012년에 크게 증가된 이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함

[그림 IV-4] 기타 비과세의 세부항목별 신고인원 변화

(단위: 천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4>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신고금액의 변화를 항목별로 정리하였는데, 2015년 기준 전체 비과세 근로소득은 4조 2천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 567조원의 0.74%였으며, 이 중 국외근로수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IV-4〉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금액 분포

(단위: 십억원, %)

구분	과세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근로소득	437,838.45	100.00	470,771.60	100.00	502,944.23	100.00	533,726.86	100.00	566,729.05	100.00	100.00	
비과세소득	4,573.03	1.04	4,087.97	0.87	4,916.91	0.98	5,067.80	0.95	4,219.67	0.74	0.74	
연구활동비	474.58	0.11	515.04	0.11	509.70	0.10	561.10	0.11	671.41	0.12	0.12	
연구활동비-유·초·중등	156.39	0.04	170.03	0.04	138.70	0.03	178.42	0.03	307.00	0.05	0.05	
연구활동비-고등	152.58	0.03	156.11	0.03	159.23	0.03	156.16	0.03	134.42	0.02	0.02	
연구활동비-특별	19.09	0.00	18.78	0.00	19.65	0.00	20.31	0.00	18.82	0.00	0.00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04.39	0.02	124.56	0.03	134.08	0.03	146.09	0.03	144.97	0.03	0.03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42.12	0.01	45.56	0.01	58.04	0.01	60.11	0.01	66.20	0.01	0.01	
국외근로수당	1,038.25	0.24	1,545.46	0.33	1,854.89	0.37	1,936.21	0.36	1,882.14	0.33	0.33	
국외근로수당-100만원	320.51	0.07	342.83	0.07	387.74	0.08	407.88	0.08	373.99	0.07	0.07	
국외근로수당-300만원	502.12	0.11	972.26	0.21	1,225.62	0.24	1,302.94	0.24	1,341.88	0.24	0.24	
국외근로수당-공무	215.62	0.05	230.37	0.05	241.53	0.05	225.38	0.04	166.26	0.03	0.03	
야간근로수당	847.63	0.19	402.69	0.09	863.38	0.17	860.07	0.16	777.54	0.14	0.14	
출산보육수당	229.97	0.05	264.42	0.06	276.10	0.05	276.27	0.05	279.50	0.05	0.05	
기타비과세	1,982.60	0.45	1,360.36	0.29	1,412.84	0.28	1,434.15	0.27	609.08	0.11	0.11	
비과세학자금	46.74	0.01	49.86	0.01	49.01	0.01	42.15	0.01	38.66	0.01	0.01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47.24	0.01	48.68	0.01	51.46	0.01	39.25	0.01	49.29	0.01	0.01	
경호, 승선수당	35.35	0.01	36.66	0.01	40.11	0.01	42.50	0.01	43.25	0.01	0.01	
보육교사 수당	0.00	0.00	2.10	0.00	10.99	0.00	5.16	0.00	5.69	0.00	0.00	
수석교사 인건비	0.00	0.00	4.80	0.00	9.05	0.00	10.44	0.00	10.02	0.00	0.00	
취재수당	24.63	0.01	24.60	0.01	26.35	0.01	26.85	0.01	27.64	0.00	0.00	
별지수당	23.02	0.01	26.72	0.01	27.51	0.01	29.09	0.01	22.43	0.00	0.00	
재해급여	28.82	0.01	99.56	0.02	98.32	0.02	98.73	0.02	159.01	0.03	0.03	
이전기관종사자	0.00	0.00	0.00	0.00	9.34	0.00	17.99	0.00	43.00	0.01	0.01	
국제기관 근무	1.09	0.00	0.00	0.00	2.33	0.00	0.24	0.00	1.08	0.00	0.00	

자료: 국제청, 『국제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제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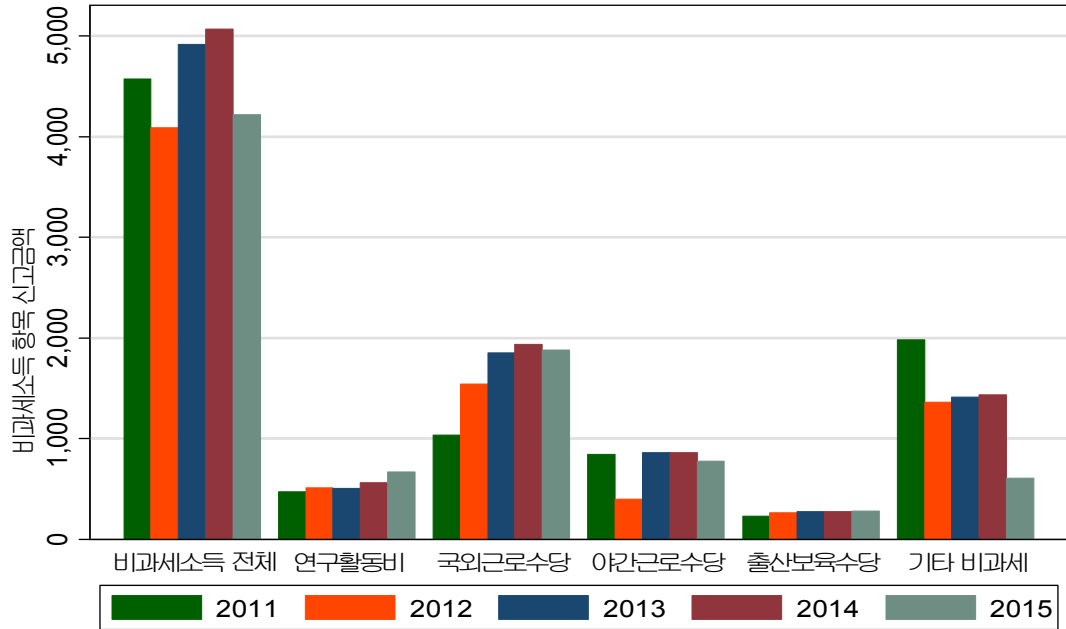
- 비과세 소득 대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외근로수당이 1조 9천억원으로 근로소득 신고금액의 0.33%를 차지하였음
 - 앞서 신고인원 기준에서는 국외근로수당의 신고인원이 가장 적은 편이었다는 점과 대조적임
 - 야간근로수당 신고금액은 8천억원으로 0.14%를, 연구활동비는 7천억원으로 0.12%, 출산보육수당은 3천억원으로 0.05%를 차지하였음
 - 기타 비과세 신고금액은 6천억원으로 0.11%를 차지함

- 대분류별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금액의 연도별 변화를 정리한 [그림 IV-5]를 보면, 연구활동비와 국외근로수당의 신고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기타 비과세 신고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전체 비과세소득은 연도별 부침이 뚜렷하며, 2015년에는 4조 2천억원으로 전년의 5조원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음
 - 2015년 전체 비과세 소득 신고금액의 감소는 기타 비과세 항목의 뚜렷한 감소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주춤하였지만 국외근로수당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별 신고금액의 변화를 정리한 [그림 IV-6]을 보면, 대부분의 세부항목의 신고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중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연구활동비 신고금액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였음
 -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연구활동비 신고금액은 2014년 1,784억원에서 2015년 3,070억원으로 1.7배로 증가함
 - 이러한 신고금액의 급격한 증가는 신고인원의 증가에 따른 것임
 - 그 밖에 ‘연구활동비-연구기관’과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 한편,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고등’)의 신고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IV-5] 비과세 소득 대분류별 신고금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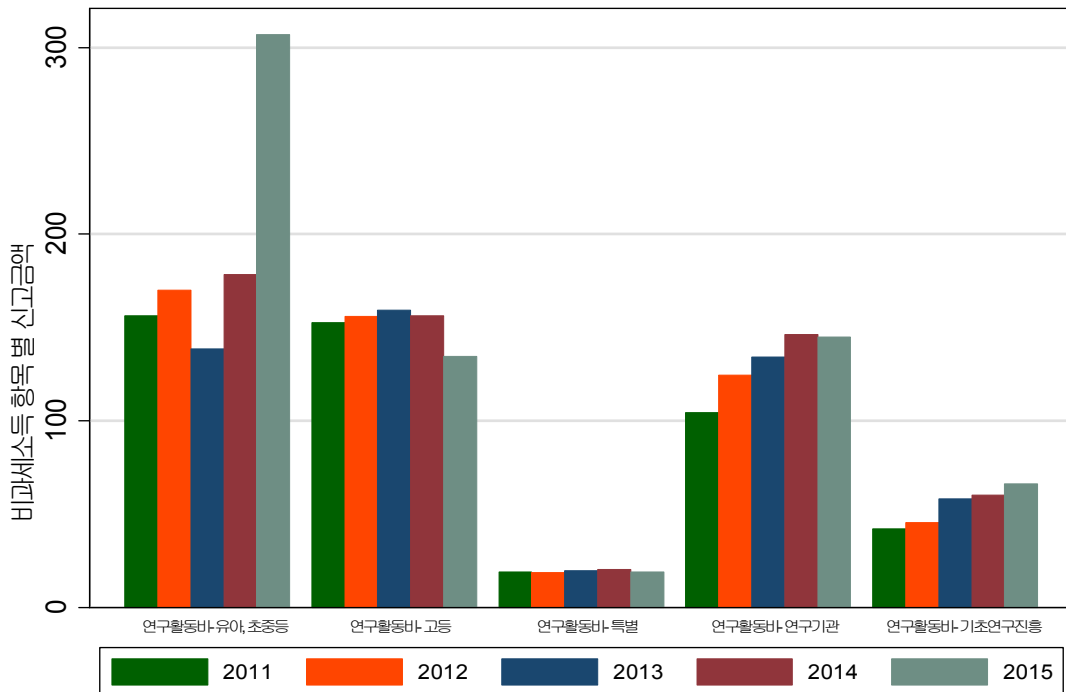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6]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별 신고금액 변화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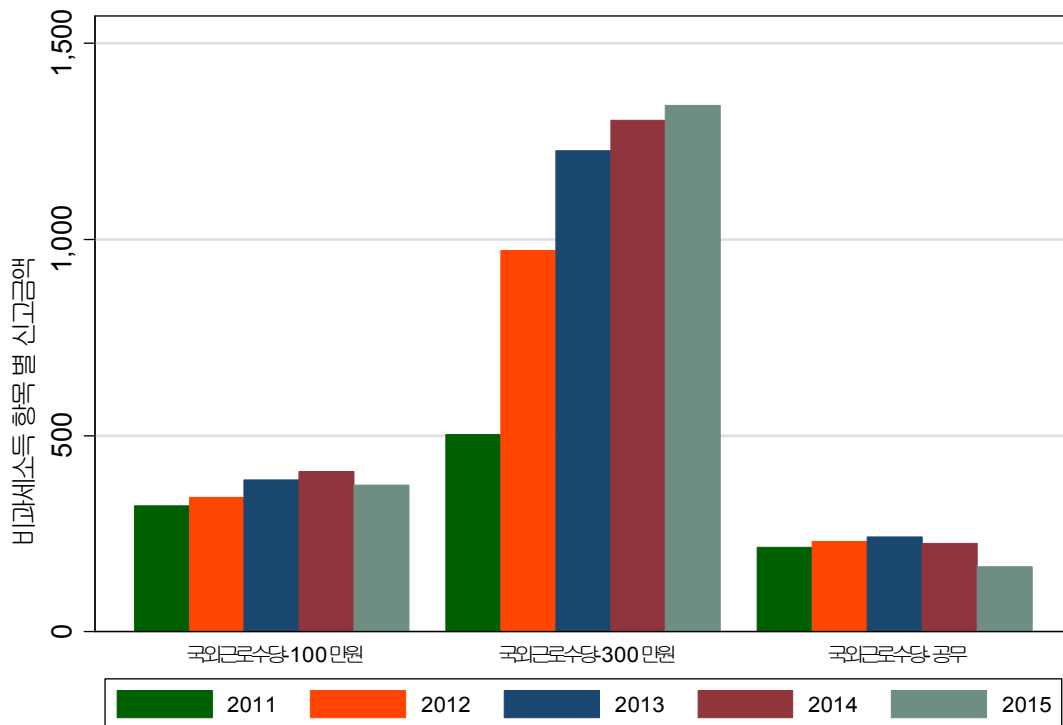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그림 IV-7]은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 신고금액의 연도별 변화를 정리하였는데, ‘국외근로수당-300만원’의 신고금액의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남
 - ‘국외근로수당-300만원’ 항목의 신고금액이 전체 국외근로수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분석기간 중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 ‘국외근로수당-300만원’은 선원과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2013년에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조정됨
 - 반면, ‘국외근로수당-100만원’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증가율이 높지는 않으며, ‘국외근로수당-공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국외근로수당-공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외교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비과세됨
 - ‘국외근로수당-100만원’은 ‘국외근로수당-300만원’, ‘국외근로수당-공무’가 적용되지 않는 국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국외 근로수당이 비과세됨

[그림 IV-7] 국외근로수당의 세부항목별 신고금액 변화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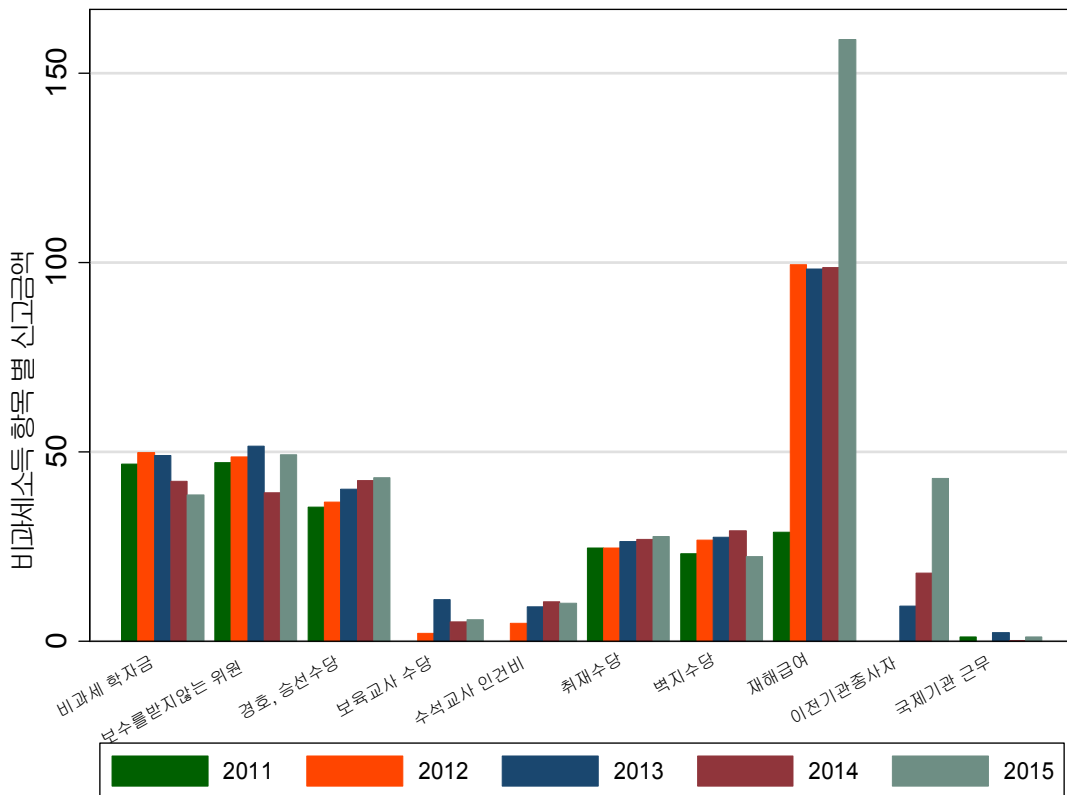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그림 IV-8]은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별 신고금액의 연도별 변화를 정리하였는데, 대체로 연도별 변화가 적거나 감소하는 반면, 재해급여와 경호·승선수당, 이전기관종사자 등의 신고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기타 비과세 항목의 신고금액은 재해급여가 가장 비중이 크고, 그다음으로 비과세학자금, 보수를 받지 않은 위원 수당, 경호·승선수당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기타 비과세 항목의 신고금액은 2015년에 뚜렷하게 감소하였지만, 제시된 그림에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세부항목을 찾기는 어려움
 - 이 표에 나타나지 않은 항목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유추됨
 - 반면, 재해급여와 경호, 승선수당, 이전기관종사자의 세부항목의 신고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확인됨

[그림 IV-8]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별 신고금액 변화

(단위: 십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소득구간별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 다음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 제도의 소득계층별 활용도에 집중해서 소득구간별 비과세 근로소득의 현황을 살펴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2천만원 이하 포함)을 하위 소득 계층으로, 8천만원 초과(즉, 1억원 이하와 1억원 초과)의 소득구간의 소득 계층을 고소득층으로 간주하고,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의 소득계층별 활용도를 점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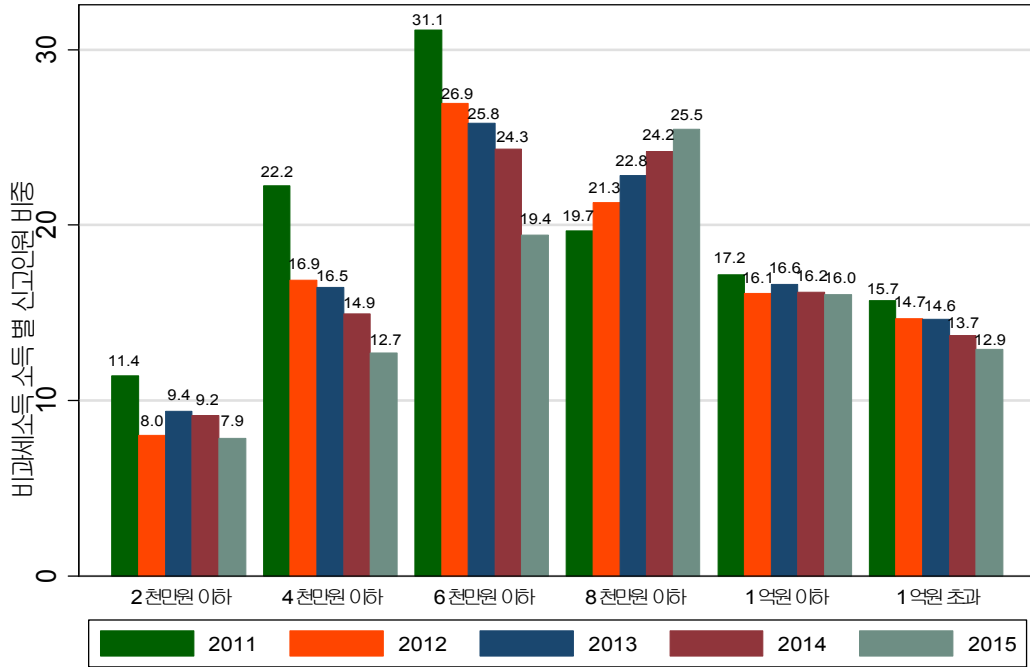
- [그림 IV-9]에는 소득구간별로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에서 비과세 소득 신고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정리하였는데, 비과세 소득을 신청한 인원이 비교적 고소득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고소득층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의 경우를 보면, 근로소득세 신고자 전체에서 비과세 소득을 신청한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1.1%인 데 비해, 근로소득금액 6천만~8천만원 구간에서는 25.5%, 8천만원~1억원 구간에서는 16.0%, 1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2.9%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는 비과세 신고인원 비중이 7.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연도별 변화를 보면, 6천만~8천만원 구간을 제외한 모든 소득구간에서 비과세 소득 신고인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6천만원 이하의 중·하위 소득구간에서 신고인원 비중이 2011년에 비해 뚜렷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뿐만 아니라 고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8천만~1억원과 1억원 초과 구간의 비중도 2011년 각각 17.2%, 15.7%에서 2015년 16.0%, 12.9%로 낮아졌음
 - 예외적으로 6천만~8천만원 구간에서는 2011년 19.7%에서 2015년 25.5%로 높아졌음

[그림 IV-9]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자 대비 비과세 소득 신고인원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5>에는 2015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의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림 IV-10]~[그림 IV-13]에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로 소득구간별 신고인원의 누적비중을 도식화하였음

○ 2011년~2014년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현황은 부록에 제시함(<부표 1>~<부표 4>)

□ 먼저 비과세 소득 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누적비중을 살펴보면([그림 IV-10] 참조), 근로소득세 전체 신고인원과 비교하여 볼 때 비과세 소득의 신고인원은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IV-5〉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인원 현황(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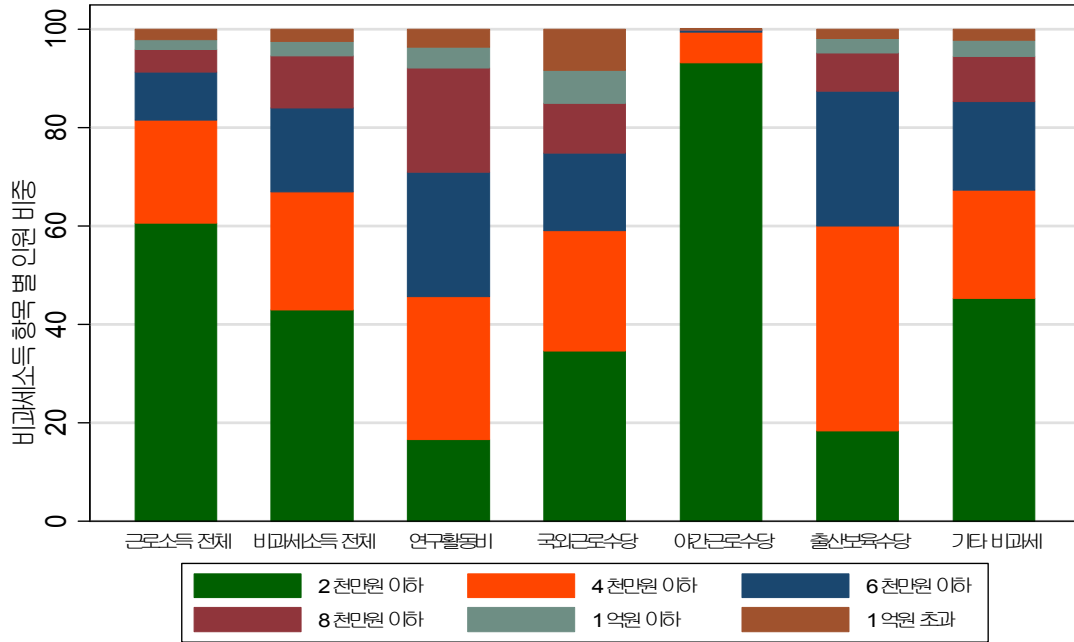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근로소득	10,497,252	100.00	3,631,108	100.00	1,690,489	100.00	798,949	100.00	353,907	100.00	361,689	100.00
비과세소득	826,231	7.87	461,273	12.70	328,551	19.44	203,365	25.45	56,733	16.03	46,756	12.93
연구활동비	106,899	1.02	187,636	5.17	163,569	9.68	136,550	17.09	27,868	7.87	23,358	6.46
연구활동비-유·초·중등	68,193	0.65	139,194	3.83	133,114	7.87	105,248	13.17	2,308	0.65	124	0.03
연구활동비-고등	8,159	0.08	8,789	0.24	8,350	0.49	15,740	1.97	16,208	4.58	15,167	4.19
연구활동비-특별	3,429	0.03	4,143	0.11	1,770	0.10	1,302	0.16	675	0.19	226	0.06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5,298	0.15	19,915	0.55	14,803	0.88	12,613	1.58	8,138	2.30	7,119	1.97
연구활동비-초연구진흥	12,156	0.12	16,125	0.44	5,748	0.34	1,741	0.22	561	0.16	754	0.21
국외근로수당	39,795	0.38	28,161	0.78	18,220	1.08	11,637	1.46	7,736	2.19	9,578	2.65
국외근로수당-100만원	11,719	0.11	13,048	0.36	7,126	0.42	3,847	0.48	3,269	0.92	5,310	1.47
국외근로수당-300만원	25,454	0.24	13,636	0.38	9,828	0.58	6,511	0.81	4,010	1.13	3,880	1.07
국외근로수당-공무	2,937	0.03	1,827	0.05	1,385	0.08	1,358	0.17	531	0.15	683	0.19
야간근로수당	475,303	4.53	31,883	0.88	1,993	0.12	595	0.07	385	0.11	170	0.05
출산보육수당	87,939	0.84	199,702	5.50	131,016	7.75	37,146	4.65	14,053	3.97	9,117	2.52
기타비과세	136,418	1.30	65,959	1.82	54,201	3.21	27,594	3.45	9,942	2.81	6,752	1.87
비과세학자금	4,504	0.04	2,026	0.06	2,310	0.14	1,778	0.22	1,310	0.37	740	0.20
보수를 받지 않는 위임	40,285	0.38	2,030	0.06	1,102	0.07	777	0.10	218	0.06	143	0.04
경호, 승선수당	9,825	0.09	13,174	0.36	8,612	0.51	3,445	0.43	157	0.04	40	0.01
보육교사 수당	2,776	0.03	294	0.01	115	0.01	22	0.00	1	0.00	1	0.00
수석교사 인건비	2,058	0.02	198	0.01	45	0.00	22	0.00	14	0.00	8	0.00
취재수당	4,914	0.05	3,855	0.11	2,248	0.13	1,391	0.17	772	0.22	718	0.20
별지수당	4,034	0.04	9,771	0.27	10,851	0.64	4,968	0.62	522	0.15	236	0.07
재해급여	16,044	0.15	13,524	0.37	7,964	0.47	2,364	0.30	596	0.17	45	0.01
이전기관종사자	1,647	0.02	5,499	0.15	7,199	0.43	5,421	0.68	3,441	0.97	1,156	0.32
국제기관 근무	357	0.00	141	0.00	11	0.00	0	0.00	1	0.00	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0] 비과세 소득 대분류 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누적비중(2015년)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 전체 인원의 근로소득금액 수준별 분포를 보면, 하위 소득 계층인 4천만원 이하가 81.5%, 고소득 계층인 8천만원 초과가 4.1%를 차지함
 - 한편, 비과세 소득 신고인원의 근로소득금액 수준별 누적분포를 보면, 하위 소득 계층인 4천만원 이하가 67.0%, 고소득 계층인 8천만원 초과가 5.4%를 차지함
 - 이는 현행 비과세 근로소득 제도가 하위 소득계층보다는 중·고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대분류 항목별 신고인원의 누적비중을 보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하위 소득계층의 활용도가 뚜렷하게 높은 반면, 그 외의 항목에서는 하위 소득계층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신고인원 비중이 99.4%로 거의 대부분 하위 소득계층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다른 대분류 항목을 보면,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자의 비중이 연구활동비 신고자가 45.6%로 가장 낮고, 국외근로소득 59.0%, 출산보육수당 60.1%, 기타 비과세 67.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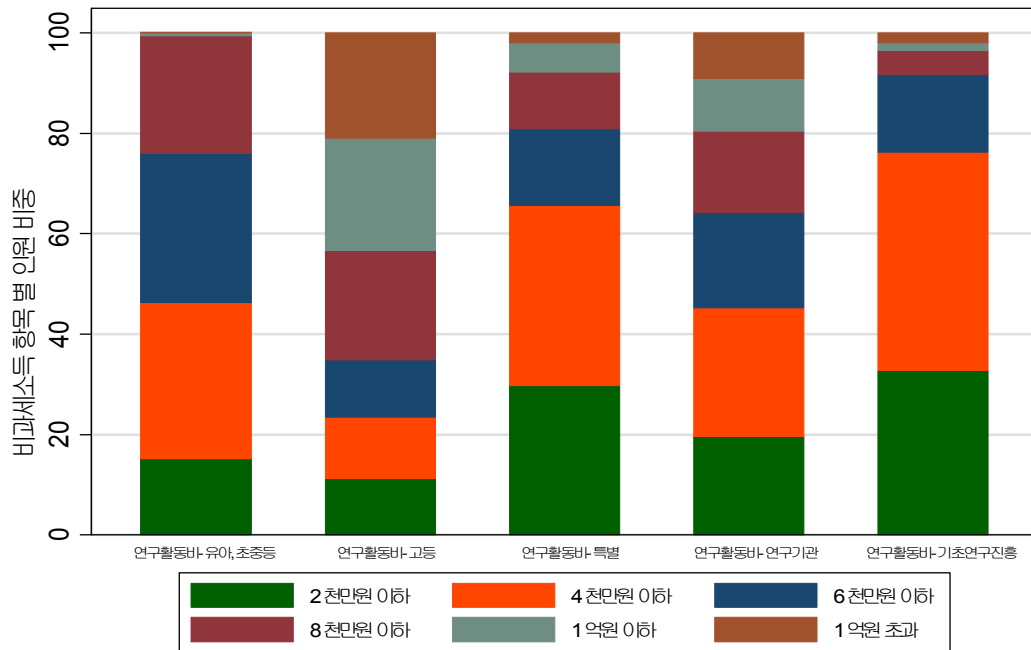
- 한편 8천만원 초과 고소득 계층의 신고인원 분포를 보면, 국외근로수당이 15.0%로 가장 높고, 연구활동비 7.9%, 기타 비과세 5.5%, 출산보육수당 4.8%이며, 야간근로수당이 0.1%로 가장 낮음

- 연구활동비 세부항목의 신고인원 비중을 정리한 [그림 IV-11]을 살펴보면, 대체로 하위 소득계층의 신고인원 비중이 전체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고소득계층의 신고인원 비중이 높은 편임
 -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과 ‘연구활동비-특별’에서 4천만원 이하 하위 소득계층의 신고인원 비중은 각각 76.3%, 65.6%로 비교적 높은 편인 반면, ‘연구활동비-유아·초·중등’은 46.3%, ‘연구활동비-연구기관’은 45.2%였으며, ‘연구활동비-고등’은 23.4%로 가장 낮았음
 -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전담부서 종사자의 연구활동비를 의미함
 - ‘연구활동비-특별’은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종사자의 연구활동비를 말함
 - 반면, 8천만원 초과 고소득계층의 신고인원 비중은 ‘연구활동비-고등’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활동비-연구기관’은 19.6%, ‘연구활동비-특별’은 7.8%,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은 3.5%, ‘연구활동비-유아·초·중등’이 0.5%로 가장 낮았음

-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의 신고인원 비중을 정리한 [그림 IV-12]를 보면, 하위 소득계층의 국외근로수당 신고인원 비중은 전체 비과세 소득의 신고인원 비중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나, 고소득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별로 보면, 4천만원 이하인 하위 소득계층의 신고인원 비중은 54.6~61.7%로 비과세 소득 전체(66.9%)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나,
 - 8천만원 초과인 고소득계층의 신고인원 비중은 12.4~19.4%로 전체 비과세 소득(5.4%)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

[그림 IV-11] 연구활동비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누적비중(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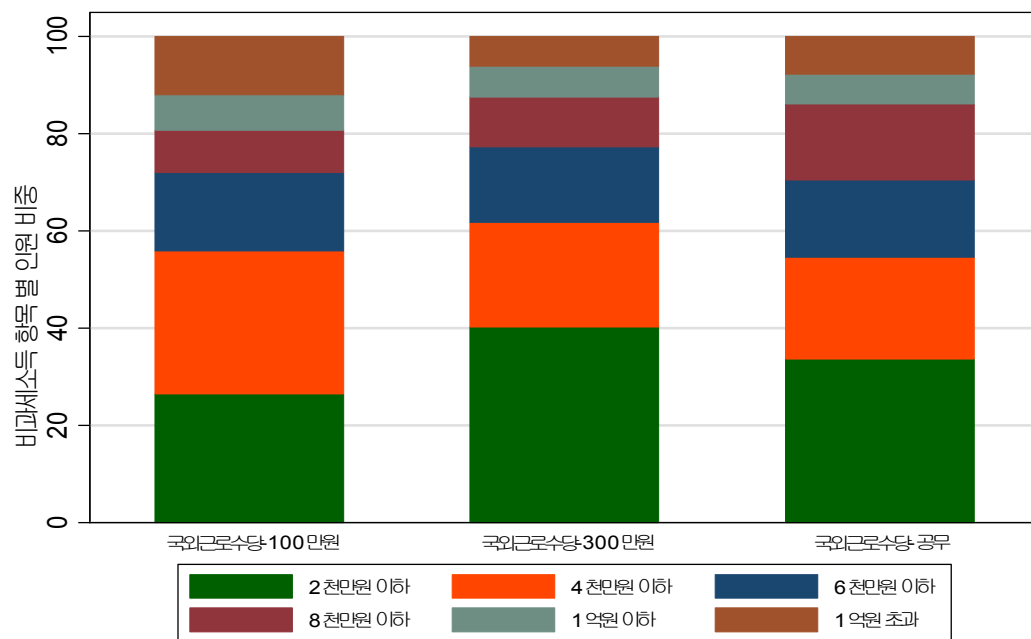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2]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누적비중(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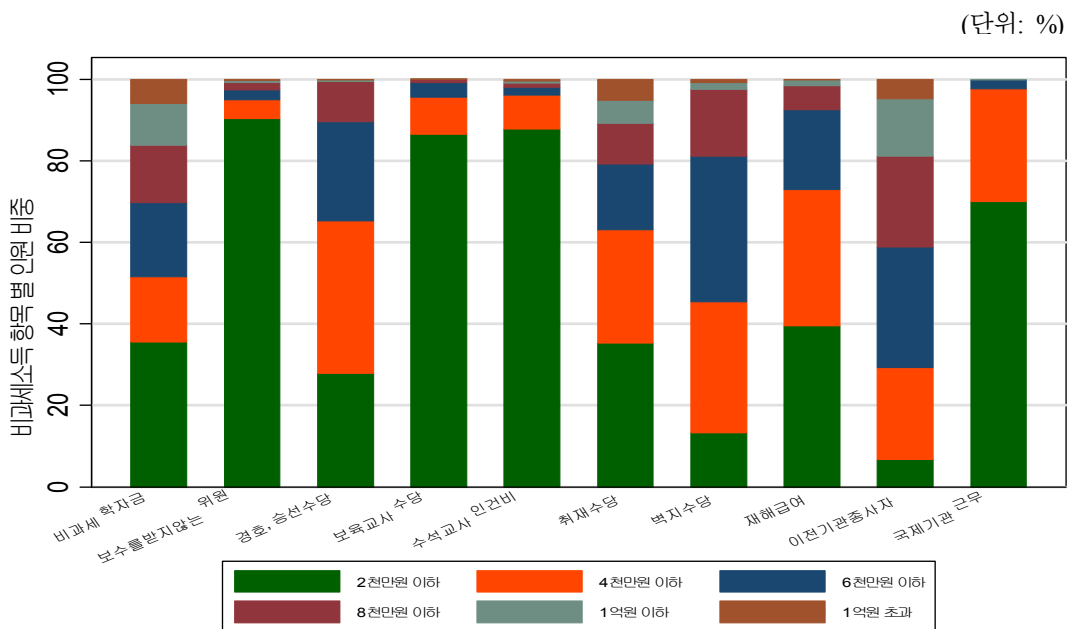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의 신고인원 비중을 정리한 [그림 IV-13]을 보면, 세부항목 별로 분포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보육교사 수당, 수석교사 인건비, 국제기관근무 등은 4천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계층의 신고인원 비중이 높은 반면,
 - 비과세학자금, 취재수당, 이전기관종사자는 8천만원 초과 고소득계층의 신고인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3]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누적비중(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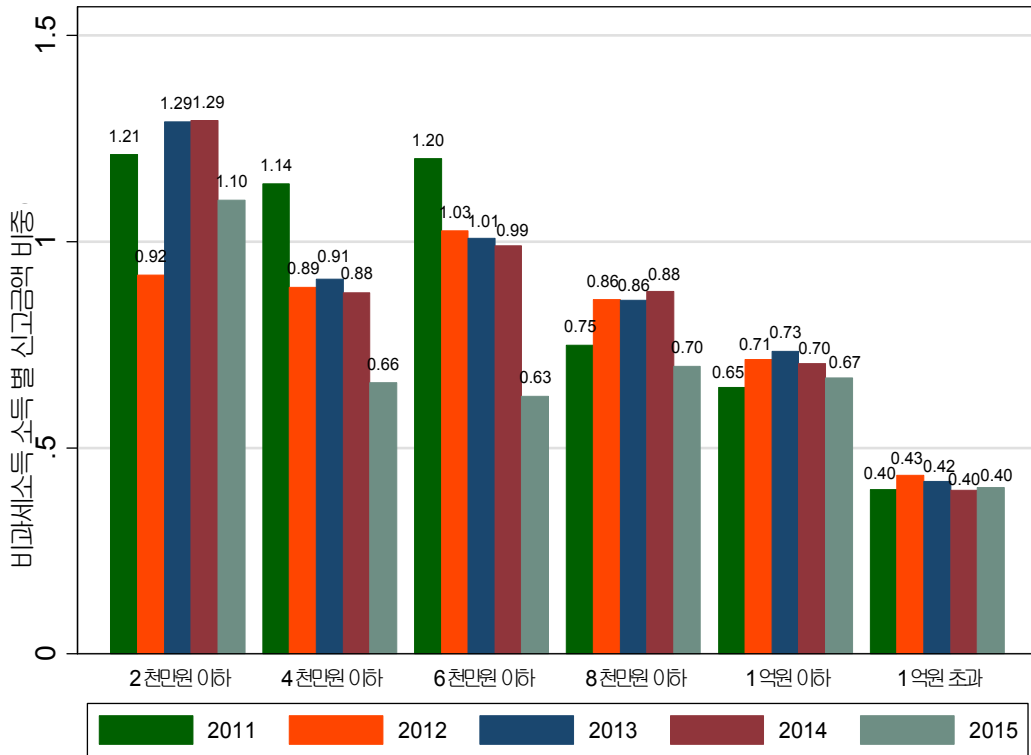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그림 IV-14]에는 소득구간별로 구분하여 근로소득세 신고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신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비과세 감면율)의 변화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는데, 상대적으로 하위 소득계층의 비과세 감면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5년 근로소득세 신고금액 전체에서 비과세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0.74%인데, 2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는 1.10%로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0.40%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0.6~0.7% 정도로 전체 비과세 감면율과 유사한 수준임
 - 연도별로 보면 전체 비과세 감면율은 최근에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소득구간별 감면율도 동일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IV-14] 소득구간별 근로소득 대비 비과세 소득 신고금액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6>에는 2015년만을 대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금액의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림 IV-15]-[그림 IV-18]에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로 소득구간별 신고금액의 누적비중을 도식화하였음
- 2011~2014년 소득구간별 신고금액 현황은 부록에 제시함(<부표 5>~<부표 8>)
- 비과세 소득 대분류 항목의 신고금액 누적비중을 정리한 [그림 IV-15]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전체와 비교하여 볼 때 비과세 소득의 신고금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계층이 높고 고소득 계층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V-6〉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금액 현황(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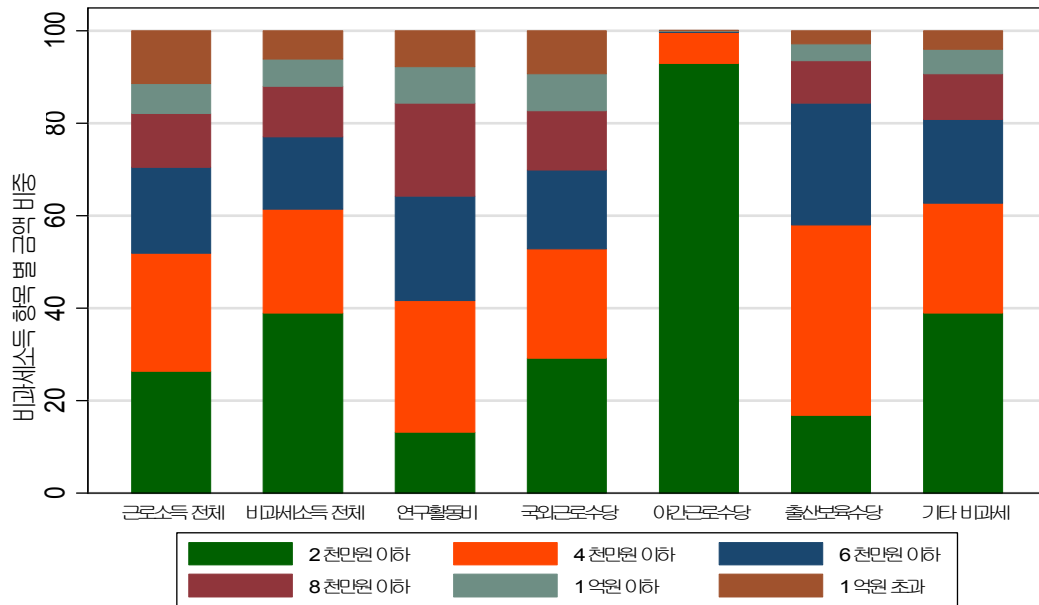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구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근로소득	149,461.64	100.00	144,382.57	100.00	105,310.63	100.00	66,078.28	100.00	36,918.62	100.00	64,577.31	100.00
비과세소득	1,643.43	1.10	949.47	0.66	658.22	0.63	461.11	0.70	247.38	0.67	260.06	0.40
연구활동비	88.23	0.06	191.35	0.13	151.87	0.14	134.53	0.20	53.18	0.14	52.25	0.08
연구활동비-유·초·중등	38.27	0.03	97.85	0.07	92.37	0.09	76.07	0.12	2.22	0.01	0.23	0.00
연구활동비-고등	8.56	0.01	16.78	0.01	15.38	0.01	27.83	0.04	31.95	0.09	33.92	0.05
연구활동비-특별	4.17	0.00	7.34	0.01	3.37	0.00	2.23	0.00	1.24	0.00	0.46	0.00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9.94	0.01	38.23	0.03	29.31	0.03	24.81	0.04	16.57	0.04	16.12	0.02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17.29	0.01	31.16	0.02	11.44	0.01	3.60	0.01	1.19	0.00	1.53	0.00
국외근로수당	548.32	0.37	446.31	0.31	320.90	0.30	240.17	0.36	150.73	0.41	175.71	0.27
국외근로수당-100만원	79.95	0.05	116.44	0.08	61.17	0.06	32.43	0.05	30.83	0.08	53.16	0.08
국외근로수당-300만원	429.75	0.29	305.38	0.21	226.76	0.22	165.75	0.25	104.33	0.28	109.90	0.17
국외근로수당-공무	38.61	0.03	24.49	0.02	32.97	0.03	41.98	0.06	15.57	0.04	12.64	0.02
야간근로수당	722.31	0.48	52.55	0.04	1.59	0.00	0.49	0.00	0.41	0.00	0.21	0.00
출산보육수당	47.17	0.03	115.00	0.08	73.60	0.07	25.56	0.04	10.34	0.03	7.83	0.01
기타비과세	237.40	0.16	144.26	0.10	110.26	0.10	60.37	0.09	32.72	0.09	24.07	0.04
비과세학자금	8.44	0.01	4.31	0.00	6.99	0.01	8.10	0.01	6.11	0.02	4.71	0.01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40.19	0.03	5.37	0.00	2.07	0.00	1.16	0.00	0.28	0.00	0.22	0.00
경호, 승선수당	10.70	0.01	14.83	0.01	11.50	0.01	5.77	0.01	0.37	0.00	0.08	0.00
보육교사 수당	5.31	0.00	0.34	0.00	0.04	0.00	0.01	0.00	0.00	0.00	0.00	0.00
수석교사 인건비	8.71	0.01	0.97	0.00	0.24	0.00	0.06	0.00	0.03	0.00	0.01	0.00
취재수당	7.51	0.01	8.34	0.01	5.13	0.00	3.20	0.00	1.81	0.00	1.65	0.00
벽지수당	2.43	0.00	7.49	0.01	8.28	0.01	3.31	0.01	0.56	0.00	0.35	0.00
재해급여	42.11	0.03	57.99	0.04	40.02	0.04	13.55	0.02	4.56	0.01	0.78	0.00
이전기관종사자	1.84	0.00	10.27	0.01	13.22	0.01	10.11	0.02	5.49	0.01	2.08	0.00
국제기관 근무	0.65	0.00	0.38	0.00	0.03	0.00	0.00	0.00	0.01	0.00	0.00	0.00

자료: 국제청, 『국제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제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5] 비과세 소득 대분류 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금액 누적비중(2015년)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근로소득 전체의 분포를 보면, 하위 소득계층인 4천만원 이하가 51.8%, 고소득 계층인 8천만원 초과가 17.9%를 차지함
 - 한편 전체 비과세 소득 신고금액의 분포를 보면, 하위 소득계층인 4천만원 이하가 61.4%, 고소득 계층인 8천만원 초과가 12.0%를 차지함
 - 이처럼 신고금액 측면에서 비과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하위 소득계층에 많고, 고소득층에는 적게 귀착되는 현상은 앞서 신고인원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와 대조적임

- 대분류 항목별 신고금액의 누적비중을 살펴보면, 야간근로수당은 하위 소득계층의 신고금액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연구활동비와 국외근로수당은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의 신고금액 비중이 높은 편임
 -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4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신고금액 비중이 99.7%를 차지 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하위 소득계층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을 의미함
 - 다른 대분류 항목에서 4천만원 이하 하위 소득계층의 신고금액 비중은 기타비과세 62.7%, 출산보육수당 58.0%, 국외근로수당 52.8%였으며, 연구활동비가 41.6%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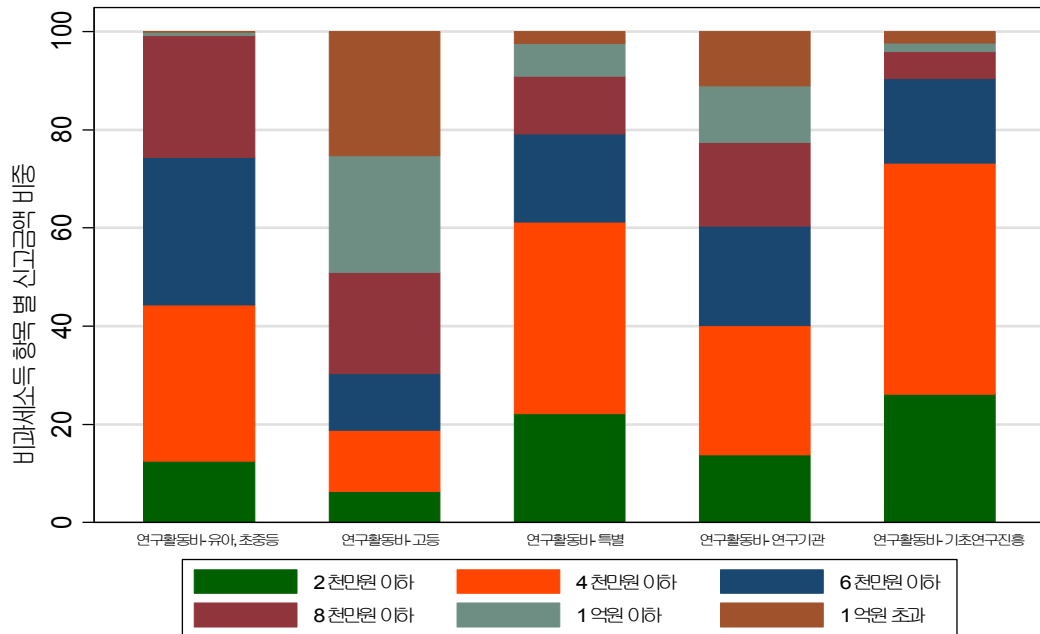
- 한편, 8천만원 초과 고소득층의 신고금액 비중을 보면, 국외근로수당과 연구활동비가 각각 17.3%, 15.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기타비과세는 9.3%, 출산보육수당은 6.5%였으며, 야간근로수당은 0.07%로 매우 낮았음

- 연구활동비 세부항목의 신고금액 현황을 정리한 [그림 IV-16]을 살펴보면, ‘연구활동비-특별’과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은 하위 소득계층의 신고금액 비중이 높은 반면, ‘연구활동비-고등’과 ‘연구활동비-연구기관’은 고소득 계층의 신고금액 비중이 높은 편임
 -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과 ‘연구활동비-특별’에서 4천만원 이하 하위 소득계층의 신고인원 비중이 각각 73.2%, 61.2%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 ‘연구활동비-고등’과 ‘연구활동비-연구기관’은 8천만원 초과 고소득 계층의 신고인원 비중이 각각 49.0%, 22.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이를 통해 연구활동비 세부항목에서는 하위 소득계층이 주요 수혜자인 항목과 고소득층이 주요 수혜자인 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의 신고금액 비중을 살펴보면([그림 IV-17] 참조), 대체로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전체 비과세 소득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고소득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4천만원 이하 하위 소득계층의 신고금액 비중은 ‘국외근로수당-100만원’ 52.5%, ‘국외근로수당-300만원’ 54.8%이며, ‘국외근로수당-공무’가 38.0%로 가장 낮았음
 - 반면, 8천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의 신고금액 비중은 ‘국외근로수당-100만원’ 22.5%, ‘국외근로수당-300만원’ 16.0%, ‘국외근로수당-공무’가 17.0%로 전체 비과세 소득 평균(1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IV-16] 연구활동비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금액 누적비중(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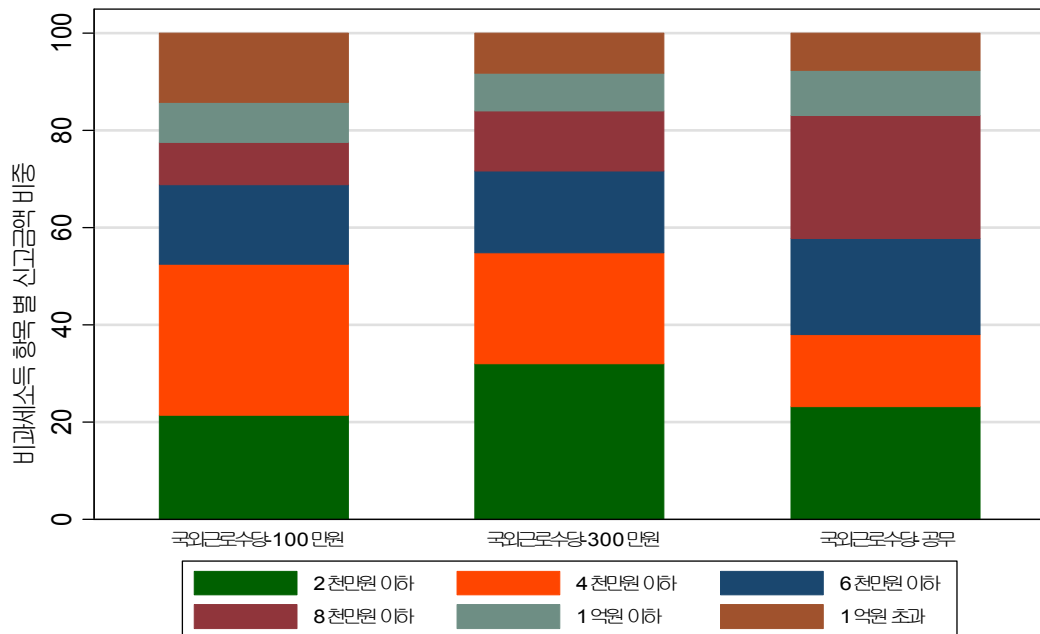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7]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금액 누적비중(201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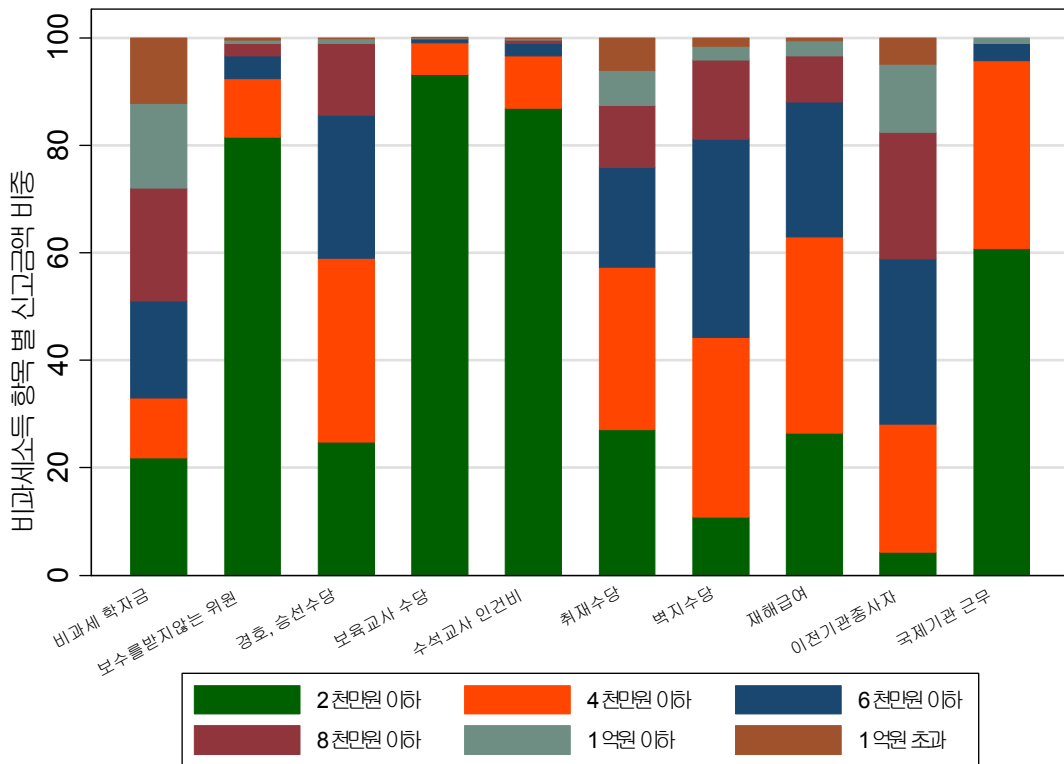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의 신고금액 비중을 정리한 [그림 IV-18]을 보면, 세부항목 별로 소득구간별 분포가 매우 다양함
 -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보육교사 수당, 수석교사 인건비, 국제기관근무 등은 4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신고금액 비중이 92.4~99.1%로 대부분 하위 소득계층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비과세학자금, 이전기관종사자는 8천만원 초과 소득구간의 신고금액 비중이 각각 28.0%, 17.6%로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이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8]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신고금액 누적비중(2015년)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1인당 비과세 규모

- <표 IV-7>에서는 비과세 항목별 1인당 비과세 소득 규모를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그림 IV-19]~[그림 IV-21]에서는 이를 도식화하였음
-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비과세 소득 규모를 비교하면, 비과세 소득을 신청한 전체 근로자의 1인당 비과세 소득이 219만원인 데 비해, 국외근로수당이 1,635만원으로 독보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음
 - 국외근로수당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1인당 비과세 규모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기타 비과세가 202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근로수당이 152만원, 연구활동비가 104만원, 출산보육수당이 58만원임

<표 IV-7> 1인당 비과세 소득 규모의 연도별 변화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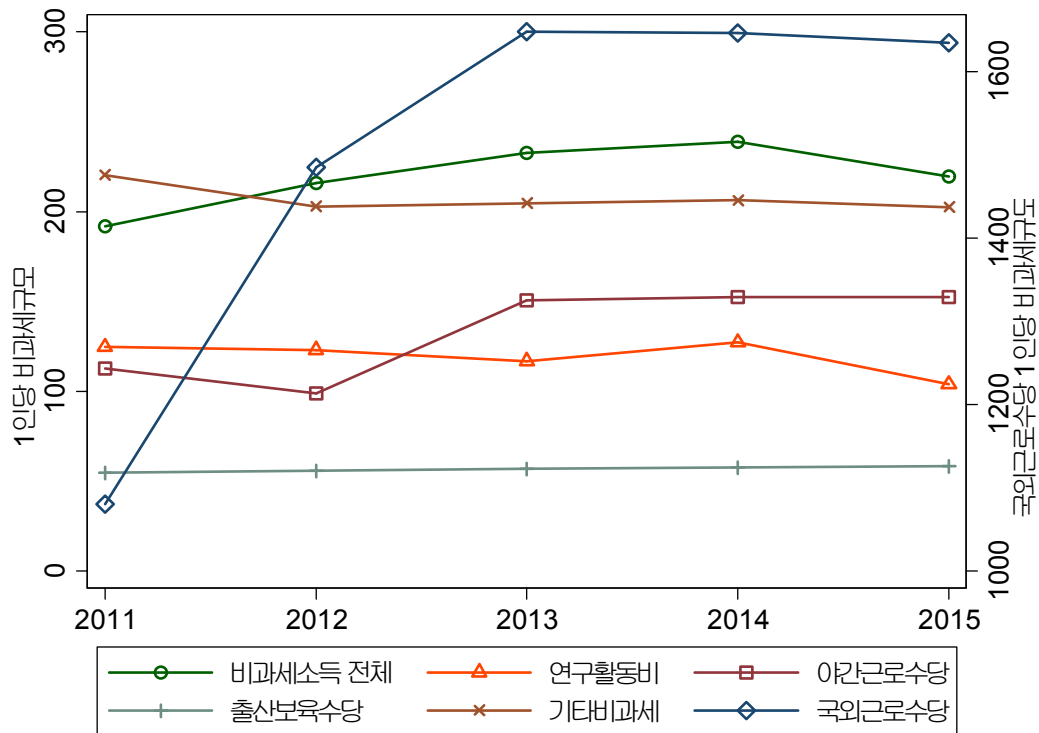
구분	과세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과세소득	1.92	2.16	2.33	2.39	2.19
연구활동비	1.25	1.23	1.17	1.27	1.04
연구활동비-유·초·중등	0.70	0.69	0.57	0.72	0.68
연구활동비-고등	2.19	2.17	2.11	2.15	1.86
연구활동비-특별	1.74	1.69	1.73	1.77	1.63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94	1.95	1.97	1.95	1.86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1.80	1.81	1.52	1.77	1.79
국외근로수당	10.80	14.85	16.48	16.47	16.35
국외근로수당-100만원	8.36	8.65	8.57	8.67	8.44
국외근로수당-300만원	10.75	18.00	21.06	21.30	21.19
국외근로수당-공무	18.58	20.43	20.48	21.00	19.06
야간근로수당	1.13	0.99	1.51	1.53	1.52
출산보육수당	0.55	0.56	0.57	0.57	0.58
기타비과세	2.20	2.03	2.05	2.06	2.02
비과세학자금	2.58	2.74	2.78	3.05	3.05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1.14	1.32	1.13	1.27	1.11
경호, 승선수당	1.14	1.14	1.24	1.20	1.23
보육교사 수당	0.00	1.12	2.12	1.64	1.77
수석교사 인건비	0.00	3.92	4.06	4.24	4.27
취재수당	1.70	1.81	1.86	1.88	1.99
벽지수당	0.58	0.55	0.55	0.58	0.74
재해급여	1.86	2.63	2.58	2.62	3.92
이전기관종사자	0.00	0.00	1.89	1.19	1.77
국체기관 근무	5.01	0.00	43.10	14.20	2.1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대분류 항목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IV-19] 참조), 국외근로수당의 1인당 비과세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외의 항목은 연도별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국외근로수당의 1인당 비과세 소득은 2011년 1,080만원에서 2015년 1,635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그 외의 항목은 대체로 연도별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야간근로수당이 2012년 이전 100만원 수준에서 이후 150만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그림 IV-19] 대분류별 1인당 비과세 소득의 연도별 변화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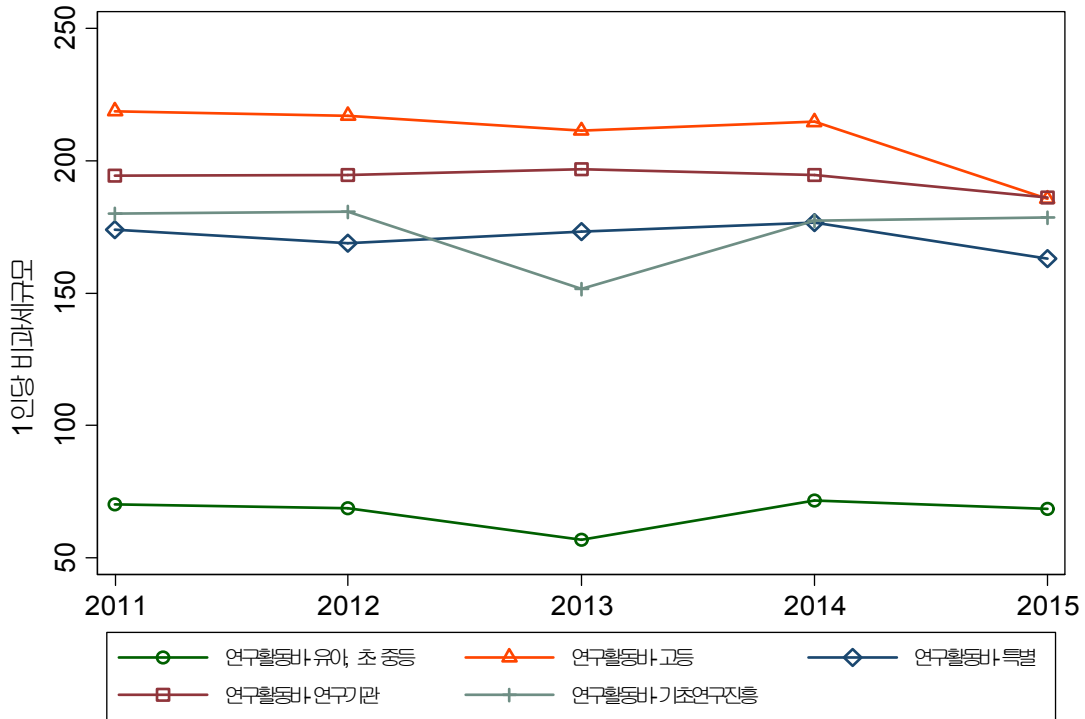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연구활동비 세부항목별 1인당 비과세 소득의 연도별 변화를 정리한 [그림 IV-20]을 살펴보면, 1인당 비과세 규모가 연도별로 대체로 일정하나 최근(2015년)에 일부 항목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1인당 비과세 규모는 ‘연구활동비-유·초·중등’이 70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고, 그 외의 항목은 170만~220만원 사이에서 유사한 수준임

[그림 IV-20] 연구활동비 세부항목별 1인당 비과세 소득의 연도별 변화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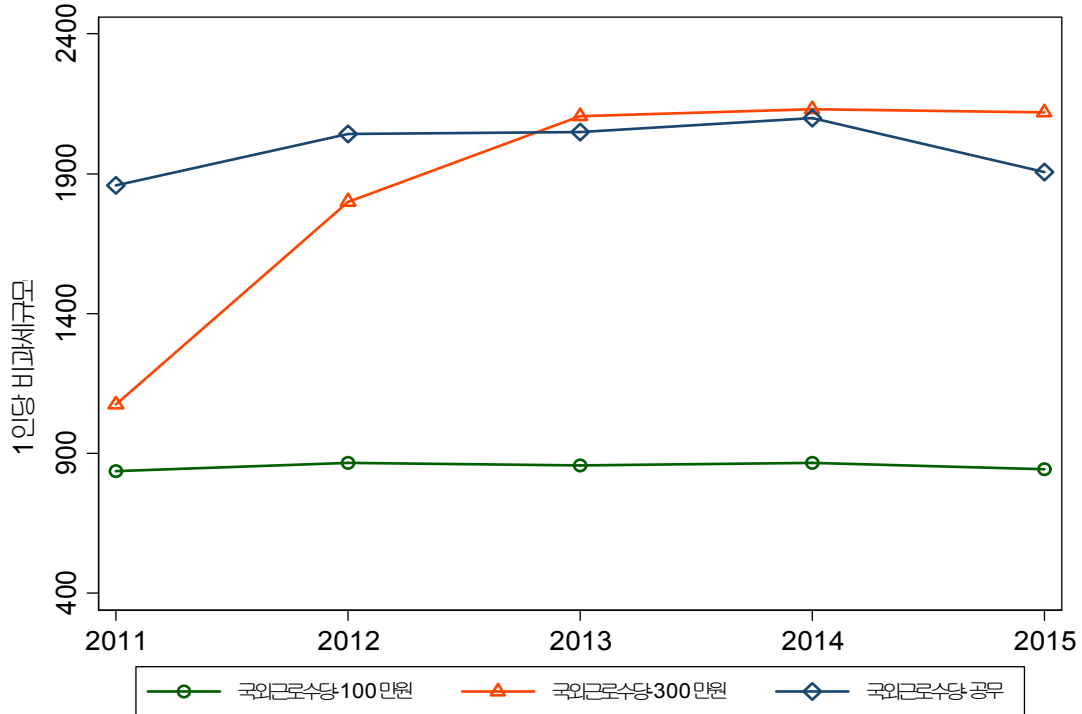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 1인당 비과세 소득의 연도별 변화를 정리한 [그림 IV-21]을 살펴보면, ‘국외근로수당-300만원’이 전체 국외근로수당의 1인당 비과세 소득 규모의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외근로수당-100만원’, ‘국외근로수당-공무’는 연도별로 일정한 반면, ‘국외근로수당-300만원’은 2011년 1,075만원에서 2015년 2,119만원으로 약 2배로 증가함
 - 1인당 비과세 소득규모를 비교하면, ‘국외근로수당이-100만원’이 836만~867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고, 다른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은 2,000만원 내외로 유사한 수준임

-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의 1인당 비과세 소득규모 또한 대체로 연도별로 일정하나, 일부 항목의 경우(예컨대, 국제기관근무) 신고인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불규칙 패턴이 나타남

[그림 IV-21]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별 1인당 비과세 소득의 연도별 변화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8>에는 2015년만을 대상으로 비과세 소득 항목의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 소득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그림 IV-22]~[그림 IV-25]에는 이를 도식화하였음
 - 2011년~2014년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 소득 현황은 부록에 제시함(<부표 9> <부표 12>)

- 전체 비과세 소득의 1인당 비과세 규모를 보면, 8천만원 초과 고소득 계층의 1인당 비과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8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서 1인당 비과세 소득 규모는 199만~227만원인 반면, 8천만~1억원 구간에서는 436만원, 1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55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1인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표 IV-8>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 소득(2015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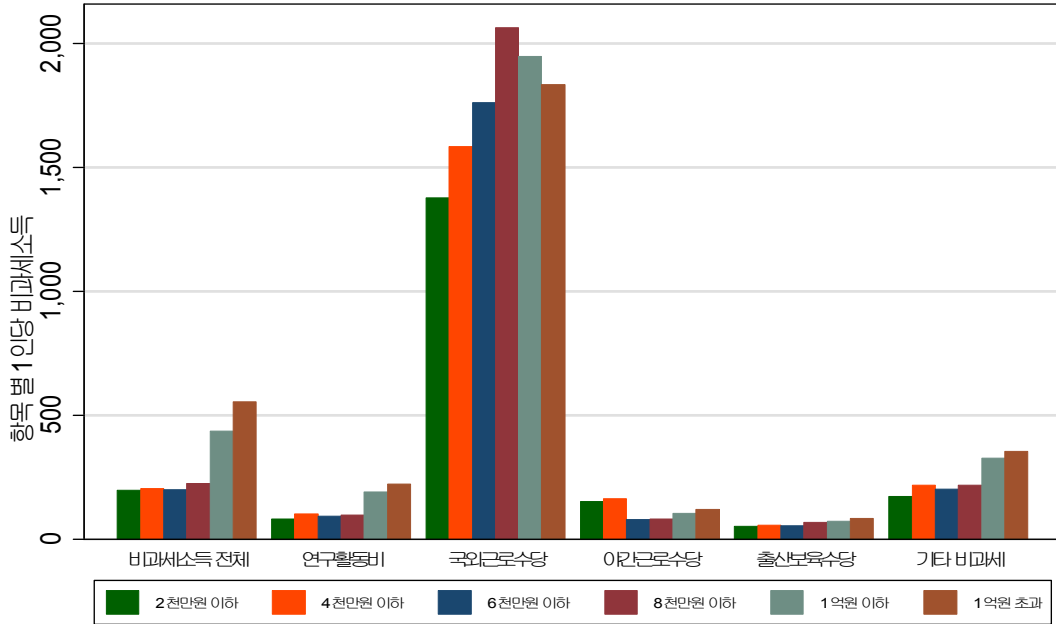
구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비과세소득	1.99	2.06	2.00	2.27	4.36	5.56
연구활동비	0.83	1.02	0.93	0.99	1.91	2.24
연구활동비-유·초·중등	0.56	0.70	0.69	0.72	0.96	1.82
연구활동비-고등	1.05	1.91	1.84	1.77	1.97	2.24
연구활동비-특별	1.22	1.77	1.91	1.71	1.84	2.05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30	1.92	1.98	1.97	2.04	2.26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1.42	1.93	1.99	2.07	2.12	2.03
국외근로수당	13.78	15.85	17.61	20.64	19.48	18.34
국외근로수당-100만원	6.82	8.92	8.58	8.43	9.43	10.01
국외근로수당-300만원	16.88	22.40	23.07	25.46	26.02	28.33
국외근로수당-공무	13.15	13.41	23.80	30.92	29.32	18.51
야간근로수당	1.52	1.65	0.80	0.82	1.05	1.22
출산보육수당	0.54	0.58	0.56	0.69	0.74	0.86
기타비과세	1.74	2.19	2.03	2.19	3.29	3.56
비과세학자금	1.87	2.13	3.03	4.55	4.67	6.36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1.00	2.65	1.88	1.49	1.30	1.52
경호, 승선수당	1.09	1.13	1.34	1.67	2.37	2.01
보육교사 수당	1.91	1.15	0.32	0.34	4.00	1.05
수석교사 인건비	4.23	4.90	5.28	2.59	2.20	1.53
취재수당	1.53	2.16	2.28	2.30	2.34	2.30
벽지수당	0.60	0.77	0.76	0.67	1.07	1.50
재해급여	2.62	4.29	5.03	5.73	7.65	17.43
이전기관종사자	1.12	1.87	1.84	1.87	1.59	1.80
국제기관 근무	1.83	2.68	3.02	-	11.74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소득 대분류별 1인당 비과세 규모를 정리한 [그림 IV-22]를 살펴보면,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과세 항목에서 1인당 비과세 소득 규모가 고소득 구간에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인당 비과세 규모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국외근로수당이 독보적으로 크고, 다른 비과세 항목은 유사한 수준임
 -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4천만원 이하 하위 소득계층의 1인당 비과세 규모가 가장 크고, 8천만원 초과의 고소득 계층의 1인당 비과세 규모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임

[그림 IV-22] 대분류 항목의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소득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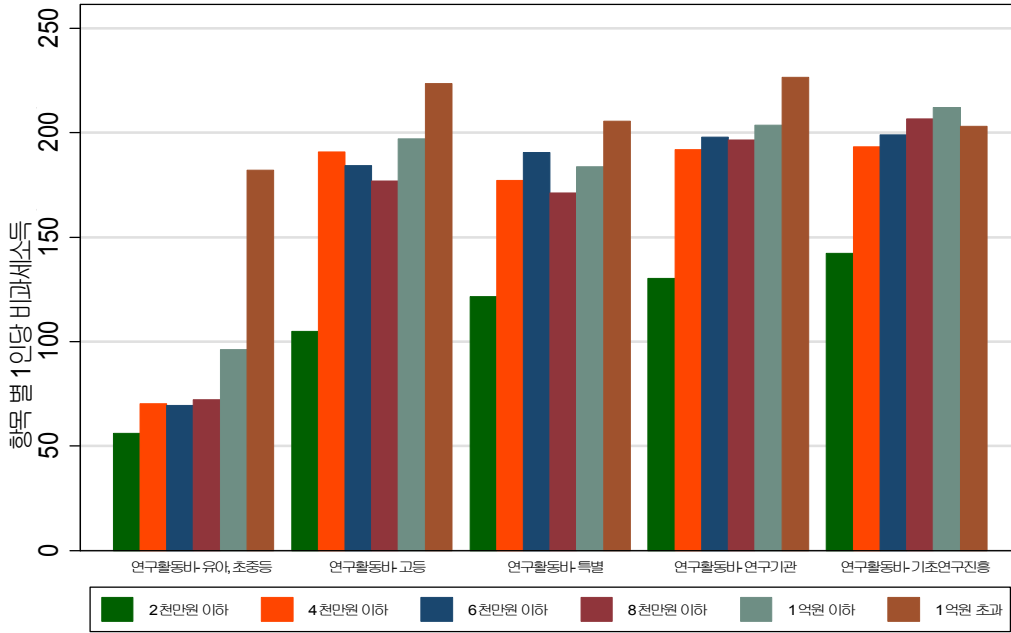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연구활동비와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별 1인당 비과세 규모를 정리한 [그림 IV-23] 과 [그림 IV-24]를 보아도, 대체로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1인당 비과세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남
 - 특히, ‘연구활동비-유·초·중등’의 경우 1억원 초과 소득구간 1인당 비과세 규모가 다른 구간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나 소득구간별 괴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 내에서는 ‘국외근로수당-300만원’ 항목에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1인당 비과세 규모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별 1인당 비과세 규모를 정리한 [그림 IV-25]를 보면, 세부항목별로 소득구간별 분포가 다양한 패턴을 보임
 - 비과세 학자금, 경호·승선수당, 벽지수당, 재해급여, 국제기관근무 등은 대체로 소득구간 증가에 따라 1인당 비과세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 수석교사인건비, 보수를 받지 않은 위원 등의 일부 항목에서는 소득구간의 증가에 따라 1인당 비과세 규모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

[그림 IV-23] 연구활동비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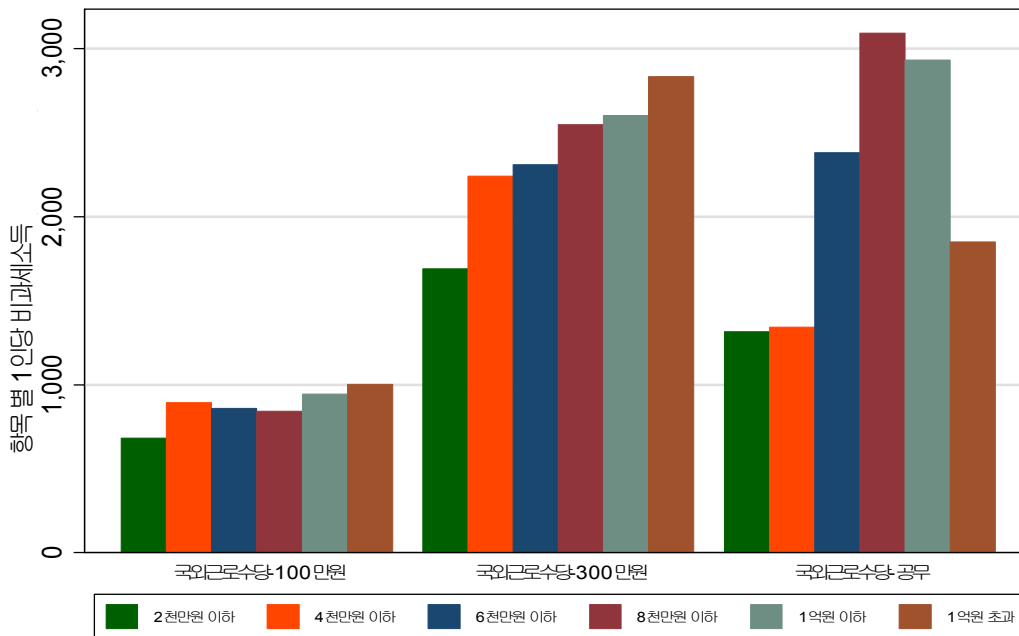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24] 국외근로수당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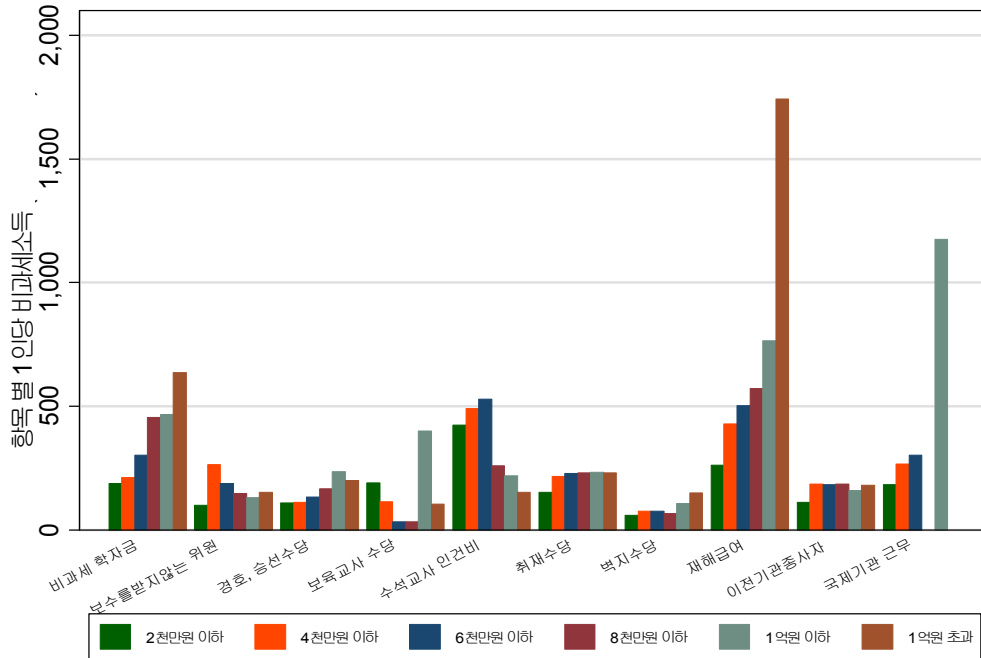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25] 기타 비과세 세부항목의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소득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국세통계연보』의 현황자료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수집한 비과세 세부항목 자료를 활용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의 현황을 분석함
 -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명시된 비과세 소득 중 국세청에서 자료를 집계하지 않는 일부 항목은 분석하지 못하였음
 - 특히 조세지출로 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등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은 비과세 규모가 매우 크지만 국세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비과세 근로소득의 규모는 연도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체 비과세 근로소득은 4조 2천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 566조원의 0.74%이며, 비과세 항목 중에서는 국외근로수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15년 비과세 국외근로수당이 1조 9천억원으로 근로소득세 신고금액의 0.33%, 비과세 근로소득 총액의 45%를 차지함

- 소득구간별로 2015년 비과세 소득 신고인원의 분포를 보면, 전체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비과세 소득 신고자가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작고 고소득층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비과세 항목별로 보면,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소득 신청자의 대부분(99.4%)이 4천만원 이하 하위 소득계층에 귀속되지만,
 - 다른 항목들은 8천만원 초과 고소득 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국외근로수당이 15.0%, 연구활동비가 7.9%로 고소득계층의 비중이 큰 편임

-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살펴보면, 비과세 항목 전체의 1인당 평균 규모는 219만원인 데 비해, 국외근로수당이 1,635만원으로 독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의 항목은 1인당 비과세 소득 규모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기타비과세가 202만원, 야간근로수당이 152만원, 연구활동비가 104만원이고, 출산보육수당이 58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 연도별로 보면, 다른 항목의 1인당 비과세 규모는 일정한 데 비해 국외근로수당(특히, ‘국외근로수당-300만원’)의 1인당 비과세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음

- 소득구간별로 1인당 비과세 규모를 살펴보면, 다수의 항목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1인당 비과세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 저소득계층이 주요 수혜자인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모든 항목에서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1인당 비과세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체로 고소득 계층이 더욱 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음을 시사함

V. 조세지출 항목의 비과세 근로소득 타당성 평가



V. 조세지출 항목의 비과세 근로소득 타당성 평가

1. 교원·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가. 제도 및 지원 현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자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실비변상적 급여의 하나로 교원 및 연구기관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가 포함됨
 - 교원은 유아·초·중·고등교육기관 교원을 말함
 - 연구기관 종사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종사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활동 종사자를 말함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됨

- <표 V-1>에서 2015년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 실적을 정리하였음
 -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자는 65만명으로 총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명의 3.7%이며, 신고된 비과세 소득은 6,710억원으로 총급여 신고액 566조 7,290억원의 0.12% 수준임
 -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를 한 자는 22만명으로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근로자 수 173만명의 12.8%를 차지함
 - 비과세 소득 규모는 2,730억원으로 상위 10% 총급여액 183조 5,730억원의 0.15% 수준임
 - 근로자 전체의 평균 급여는 3,270만원이며, 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 규모는 10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의 3.2%임
 -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억 591만원이며, 이 중 연구활동비 비과세를 신고한 자의 평균 연구활동비 비과세 규모는 124만원으로, 이 집단 평균 급여의 1.2%임

<표 V-1> 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 신고현황(2015년)

(단위: 천명, 십억원, 만원, %)

		신고자		신고금액		1인당 신고금액	
		인원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평균대비 비율
전체	근로소득	17,333	100.0	566,729	100.0	3,270	100.0
	연구활동비	646	3.7	671	0.12	104	3.2
상위 10%	근로소득	1,733	100.0	183,573	100.0	10,591	100.0
	연구활동비	221	12.8	273	0.15	124	1.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4-2-1

- 전체적으로 연구활동비 신고자 중에서 고소득자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앞의 <표 IV-5>와 [그림 IV-10]에서는 비과세 항목별, 소득수준별 비과세 소득 신고자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전체 근로자 중에서 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0.6%인 데 비해,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청자 중에서는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6.6%에 불과함
 - 급여 4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 포함)의 비중을 보면, 전체 근로자가 81.5%,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자가 45.6%임
 -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자는 총급여 2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의 중간소득계층이 75.5%를 차지함
 - 2천만~4천만원 29.1%, 4천만~6천만원 25.3%, 6천만~8천만원 21.1%

- 1인당 연구활동비 비과세 규모를 보면 전체 집단에서 104만원, 상위 10% 집단에서 121만원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만 소득의 격차에 비하면 그 격차는 크지 않은 편임
 - 그러나 소득세의 누진세율체계를 고려하면, 연구활동비 비과세에 따른 세부담 절감효과는 고소득층에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나. 지원목적 및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 세법 규정에 따르면,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항목에 포함됨
 - 이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실질적 비용의 일부를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함을 의미함

- 실비변상적 비과세 항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의 수당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일직료, 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월 20만원 이내)
 - 특정 직종 종사자가 종사상 필요에 의해 지급받는 작업복이나 피복
 -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이 받는 위험수당 등
 - 선원의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경찰공무원이 받는 합정근무수당, 항공수당, 소방공무원이 받는 합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교원, 연구자의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내)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급여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의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월 20만원 이내)

- 이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 중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와 기자의 취재수당은 근로에 수반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이 약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자 및 기자의 업무는 제복의 착용 등과 같이 특별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위험이 동반되는 것도 아니고 벽지와 같이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직종도 아님
 - 물론 컴퓨터 등 장비가 소요되고 기자가 취재활동을 하는 데 교통비 지출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비용이 다른 모든 직종에 비해 특별히 더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보수에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활동비나 취재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항목들을 비과세하는 다른 논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생각할 수 있음

- 1,500만~4,500만원: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500만~1억원: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을 산출하고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근로소득자는 총수입금액이 총소득이 되므로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지 못함
-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증빙을 첨부하여 공제하도록 할 수 있는데, 미국 등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
- 영국과 호주에서는 특정 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며, 일본은 비용이 근로소득공제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허용함
-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항목별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포괄적으로 공제함
 - 직종의 특성, 비용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소득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함
- 한편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는 공제율이 상당히 높는데, 사업자의 과표 은폐가 많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자가 사업자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근로 관련 비용을 개별 항목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며, 공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비과세로 하는 데 대한 논리적 근거가 약함

-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실물로 지급되어 개별 근로자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예, 업무 출장에 따른 여비)와 같이 일반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인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

- 이와 같은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는 근로소득공제와 중복된다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근로소득공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라. 요약 및 결론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논리적 근거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공제를 통해서 근로를 창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그 공제규모가 큰 편이어서 실비변상적 급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국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는 실제로 지급되어 개별 근로자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와 같이 일반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인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국한하여 비과세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연구활동비는 이러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이 제도는 주로 중간소득계층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임
 - 비과세 금액이 월 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자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더 크지만,
 - 혜택을 받는 자들이 중간소득계층 또는 고소득계층에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의 1인당 평균 비과세 규모가 더 크고, 누진세율체제로 인하여 고소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본고에서 검토한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연구활동비의 일부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 연구활동비 비과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 기자의 취재활동비 비과세인데,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제도의 논리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판단됨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가. 제도 및 지원 현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거목에서는 국외 또는 「남북한교류협력」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해외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선의 현장 주재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관 포함
 -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함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함
 -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그 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 <표 V-2>에서 2015년의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신고 실적을 정리하였음

-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신고자는 12만명으로 총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명의 0.7%이며, 신고된 비과세 소득은 1조 8,820억원으로 총급여 신고액 566조 7,290억원의 0.3% 수준임
- 앞서 검토한 연구활동비가 3.7%의 근로자에게 총급여의 0.1%에 해당하는 소득을 비과세하였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는 좁은 범위의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음
-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신고를 한 자는 4만 7천명으로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근로자 173만명의 2.7%를 차지함
- 비과세 소득 규모는 1조 220억원으로 상위 10% 총급여액 183조 5,730억원의 0.6% 수준임
- 근로자 전체의 평균 급여는 3,270만원이며,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소득 신고자 1인당 비과세 규모는 1,635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의 50%에 해당함
-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억 591만원이며, 이 중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신고한 자의 평균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모는 2,162만원으로, 이 집단 평균 급여의 20.4%임

<표 V-2>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소득 신고현황(2015년)

(단위: 천명, 십억원, 만원, %)

		신고자		신고금액		1인당 신고금액	
		인원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평균대비 비율
전체	근로소득	17,333	100.0	566,729	100.0	3,270	100.0
	국외근로수당	115	0.7	1,882	0.3	1,635	50.0
상위 10%	근로소득	1,733	100.0	183,573	100.0	10,591	100.0
	국외근로수당	47	2.7	1,022	0.6	2,162	2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4-2-1

□ 전체적으로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신고자 중에서 고소득자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앞의 <표 IV-5>와 [그림 IV-10]에서는 비과세 항목별, 소득수준별 비과세 소득 신고자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전체 근로자 중에서 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자가

- 차지하는 비중이 60.6%인 데 비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신청자 중에서는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4.6%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임
- 급여 4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 포함)의 비중을 보면, 전체 근로자가 81.5%,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신고자가 59%임
- 전체 근로자 중에서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인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신청자의 경우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비중이 15%임

□ 1인당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규모를 보면 전체 집단에서 1,635만원, 상위 10% 집단에서 2,162만원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비과세 규모가 더 큼(위의 <표 V-2> 참조)

- 수혜자의 분포를 보면, 근로자 전체 분포에 비해 비교적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으므로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수혜자 1인당 수혜 규모도 고소득층에서 더 크고,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나. 지원목적 및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 국외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1975년에 도입되었는데, 이 시기는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였음
- 그러므로 해외건설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촉진하며, 해외 건설현장의 우리나라 근로자 비중 제고를 통한 외화가득률 증대를 목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이후의 변천 과정을 보면, 비과세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1995년), 150만원(2000년)으로 인상되었다가 다시 100만원(2006년)으로 환원됨
- 2006년에 비과세 한도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환원하면서 외항선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0만원의 비과세 소득을 인정함

- 2009년에는 해외건설노동자의 비과세소득 한도를 15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이후 점진적인 개편을 거쳐 2013년 이후 해외건설노동자와 외항선원에는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고, 그 외의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가 유지됨
-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는 일몰규정 없이 운영되는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제도 시행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게 낮아진 경우나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항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그 예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법인세 등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지적함
 - 이 제도들은 1960~197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급속히 글로벌화되며 기업의 해외영업의 중요도가 크게 높아졌고 국외 소재 자회사나 지점 및 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 비중이 커졌으며, 국제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되었으며, 금융기법이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제도들을 운영할 정책적 이유가 크지 않음
- 한편 일부 연구와 의원입법안 등에서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모를 확대하거나 특정 직종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온상훈(2010)은 해외근로자 비과세 소득 범위 150만원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을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함
 - 이후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범위가 월 300만원으로 조정됨
 - 이기일·김수련(2015)은 국제선 항공승무원 비행근무환경, 항공승무원 건강상태 분석, 해외건설근로자 및 외항선원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항공 승무원의 비과세 소득 범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함
 - 이후 국제항공 승무원의 비과세 소득 범위가 월 300만원으로 조정됨
 - 유기준의원 등 발의안은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 근로자의 급여 중 월 30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2013년에 발의되었다 임기만료로 폐기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는 특정한 경제활동의 국외 사업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필요성이 상당히 약화됨

-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글로벌한 사업활동이 일반화되어 국외 사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이기일·김수련(2015)의 연구도 국제선 승무원을 통한 특정 산업의 국제화를 통한 발전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환경 등이 주요 분석대상이었음
 - 1970년대에 저임금 근로자의 해외건설현장 등 국외 근무를 지원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임금 수준을 불문하고 해외 근무가 발생하며, 중간소득 또는 고소득 계층에서 해외근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의 타당성은 약함
- 앞의 [그림 IV-10]에 제시된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분포와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신고자의 임금 분포를 보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신고자가 중간 및 고소득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혜자 1인당 수혜 규모도 고소득층에서 더 크고,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 호주에는 국외근무수당 비과세제도가 없으나, 일본과 독일에서는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을 비과세함
- 일부 국가에서 해외근무수당을 비과세하는 것은 해외 근무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근무에 비해 국외 근무를 특별히 장려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비과세 등 조세감면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임

다. 다른 조세·재정 지원제도와 중복·유사성 검토

- 다른 조세지원제도와 재정지원제도를 살펴보면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나 개성공단에서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있으나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는 없음
- 그러므로 조세지원제도나 재정지원제도 중에서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제도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요약 및 결론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국외근로수당의 비과세는 논리적 근거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서 국내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미 글로벌한 사업 운영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경제환경을 볼 때 국외근로자를 특별히 우대할 필요성은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이 제도는 주로 중간소득계층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임
 - 수혜자의 세부담 절감효과도 고소득층에서 훨씬 더 큼

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가. 제도 및 지원 현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너목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 이 규정은 1996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비용 성격의 지출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의 비과세소득 항목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음
 - 각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근로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 인원 수와 납부액 자료를 얻을 수 있음

-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납부에 상응하여 사용자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 납부 인원수와 규모를 정리하면 <표 V-3>과 같음

<표 V-3>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현황(2015년)

(단위: 천명, 십억원, 만원, %)

		신고자		신고금액		1인당 신고금액	
		인원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평균대비 비율
전체	근로소득	17,333	100.0	566,729	100.0	3,270	100.0
	보험료 ¹⁾	9,792	56.5	16,976	3.0	173	5.3
상위 10%	근로소득	1,733	100.0	183,573	100.0	10,591	100.0
	보험료 ¹⁾	1,718	99.1	6,366	3.5	371	3.5

주: 1)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를 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4-2-1

-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납부액이 있는 근로자는 2015년에 979만명으로 총근로소득 세 신고자 1,733만명의 56.5%이며, 사용자 부담금의 규모는 16조 9,760억원으로 총급여 신고액 566조 7,290억원의 3% 수준임
 - 앞서 검토한 연구활동비와 국외근로수당 비과세가 좁은 범위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 데 비해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근로자에게 적용됨
 -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172만명으로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근로자 173만명의 99.1%를 차지함
 - 납부한 보험료는 6조 3,660억원으로 상위 10% 총급여액 183조 5,730억원의 3.5% 수준임
 - 근로자 전체의 평균 급여는 3,270만원이며,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 1인당 사용자부담금은 173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의 5.3%임
 -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억 591만원이며, 이 중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평균 사용자부담금은 371만원으로, 이 집단 평균 급여의 3.5%임

- 1인당 사용자부담금을 보면 전체 집단에서 173만원, 상위 10% 집단에서 371만원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비과세 규모가 큼
 - 집단별 평균 급여 대비 연구활동비 비과세 급여의 비율이 전체 집단에서 5.3%인 데 비해 상위 10% 집단에서는 3.5%임

- 한편 수혜자의 분포를 보면, 근로자 전체 분포에 비해 비교적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으므로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수혜자 1인당 수혜 규모도 고소득층에서 더 크고,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나. 지원목적 및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비과세는 1996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전 국민 건강보험’ 등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강제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판단됨
 - 법에 의해 강제되는 비용의 지출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비용이므로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방식으로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가 납부한 부분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건강보험 등의 사용자부담금 외에도 사용자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 업무상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함(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내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재해 및 건강 관련 혜택(accident and health benefits)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질병 및 상해상의 의료비 지급을 위하여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기금 등을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함

- 그 외에도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불입하는 적격 ‘단체 생명보험(group-term life insurance)’ 보험료를 비과세하고, ‘건강보험 플랜(health insurance plan)’에 따라 고용주가 지원해주는 건강보험료를 비과세함
- 이 규정과 관련하여 황규영·홍창목(2010)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야간근무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소득(월정액 급여)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는 2002년에 사회보험 등의 사용자부담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음 (서이 46013-11337, 2002.7.11., 재정경제부 46073-100, 2002.7.2.)⁵³⁾

다. 다른 조세·재정 지원제도와 중복·유사성 검토

- 다른 조세지원제도와 재정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 중 일부 지원
 -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이상의 재정지원 사업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 사업주 부담금을 일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제도와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제도로 판단되지 않음
 -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는 보편적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앞서 검토한 보험료 일부 정부지원과는 목적, 지원대상 등이 상이함

53) 황규영·홍창목(2010), p. 213

- 근로소득세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는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제도와 목적, 지원대상이 일치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중복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채널로 구분된 보험료 납부 체계를 고려하여 모든 보험료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라. 요약 및 결론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법령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임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행위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
 - 이러한 사회보험은 위험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 다만 건강보험 등의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비과세하는 경우에, 다른 목적으로 월정급여를 산정할 때 보험료 사용자부담금도 월정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대해 현재 담당부처의 해석을 통해서 사용자부담금은 월정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법규정의 명확성 제고 관점에서 보면, 항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규정은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건강보험 등의 사용자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음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가. 제도 및 지원 현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더목에서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동법 시행령 제17조)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의 <별표 2>에 열거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을 뺀 급여를 말함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표 V-4>에서는 2015년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신고실적을 정리하였는데,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신고자는 51만명으로 총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명의 2.9%이며,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규모는 7,780억원으로 총급여 신고액 0.1% 수준임
-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에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신고한 자가 약 1천명 정도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그들이 신고한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은 12억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됨
 - 규정상 월정급여액 150만원 이하,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에게만 비과세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
- 앞의 <표 IV-5>와 [그림 IV-10]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신청자의 93.1%가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이며, 2천만~4천만원 범위에 있는 자가 6.2%로, 99% 이상이 총급여 4천만원 이하임
- 근로자 전체의 평균 급여는 3,270만원이며,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신고를 한 근로자 1인당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은 평균 152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의 4.7%임
- 광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는 규정상 최대 240만원까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인당 평균 비과세 신고금액은 152만원으로 한도액의 3분의 2 수준임

<표 V-4>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현황(2015년)

(단위: 천명, 십억원, 만원, %)

		신고자		신고금액		1인당 신고금액	
		인원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평균대비 비율
전체	근로소득	17,333	100.0	566,729	100.0	3,270	100.0
	야간근로수당	510	2.9	778	0.1	152	4.7
상위 10%	근로소득	1,733	100.0	183,573	100.0	10,591	100.0
	야간근로수당	1	0.1	1	0.0	93	0.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4-2-1

나. 지원목적 및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제도는 1990년에 도입되었으며,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직 업종의 인력난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슈로 구분하여 지원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소득세 과세원칙상 특정 야근수당을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둘째,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직 업종의 인력난을 개선한다는 당초 목적이 아직도 유효한지?
 - 셋째, 그 외 다른 목적(예,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수당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 넷째, 다른 국가에는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 소득세 과세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과세하는 것임
 - 소득세 과세제도는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서로 다른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분류과세제도와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종합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분류과세제도와 종합소득세제를 혼용한 적도 있으나 1970년대 중엽 이후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종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제를 유지함

- 종합소득세제의 관점에서는 포괄하여 합산할 수 있는 소득을 모두 포괄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야 함
 - 근로소득임이 분명한 소득을 야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과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수당 비과세제도를 도입한 1990년 무렵에는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직 업종의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였을 수 있음
- 한편 최근에는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과다하다는 점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됨
 - 우리나라 근로자의 2014년 연간 근로시간이 2,1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⁵⁴⁾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과다한 연장근무를 금지하여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⁵⁵⁾
 - 정부 개정안: 최대 주 68시간인 현행 규정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단축
 -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직 업종의 인력난을 개선한다는 당초의 목적은 현 시점에서 크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한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혜택을 수혜하는 자 중 93.1%가 총 급여 2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목적으로 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봄
- 첫째, 저소득층의 실효세율을 검토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함
 -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다른 조세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비과세가 바람직한지 검토함

54) OECD(2016), p. 131

55) 조선일보, 「법 개정 않고 정부, 근로시간 단축하나」, 2017. 5. 12.

□ <표 V-5>에서는 2015년의 근로자 총급여 수준별 실효세율을 정리하였음

- 총급여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평균 실효세율(총급여 대비 결정세액)은 0.05%이며, 1인당 평균 세액은 총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5천원 이하이며, 결정세액이 0보다 큰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3만원임
- 총급여 1천만~2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 실효세율이 0.45%로 역시 1% 미만이며, 1인당 납부세액은 총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와 결정세액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각각 10만원과 16만원임
- 근로자 중에서 결정세액이 있는 자 즉, 세금을 납부하는 자의 비율을 보면, 총급여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3.4%, 총급여 1천만~2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65%임

<표 V-5> 근로소득자 총급여 수준별 실효세율(2015년)

(단위: 천명, 십억원, 만원, %)

	급여총계		결정세액		실효세율	1인당 세액	
	인원(A)	금액	인원(B)	금액		A 기준	B 기준
전체	17,333	566,729	9,229	28,253	4.99	163	306
1천만 이하	6,824	63,490	912	29	0.05	0	3
2천만 이하	3,674	85,972	2,388	383	0.45	10	16
4천만 이하	3,631	144,383	2,771	2,679	1.86	74	97
6천만 이하	1,690	105,311	1,646	4,582	4.35	271	278
8천만 이하	799	66,078	797	4,757	7.20	595	597
1억 이하	354	36,919	353	3,649	9.88	1,031	1,033
2억 이하	309	43,842	308	6,492	14.81	2,099	2,106
3억 이하	30	7,752	30	1,831	23.62	6,067	6,067
5억 이하	15	5,860	15	1,585	27.05	10,642	10,642
5억 초과	7	7,123	7	2,265	31.80	30,983	30,98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4-2-5

- 그러므로 적용대상자가 대부분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비과세 제도의 경우, 적용대상자의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서 비과세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저소득계층의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로소득공제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근로소득공제제도에 의하면 총급여 중 500만원까지는 총급여액의 7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15%가 공제됨
- 소득수준별 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총급여가 1,500만원인 경우에는 그 절반인 750만원이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총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825만원, 총급여가 2,500만원인 경우 900만원이 근로소득에서 공제됨

□ 낮은 실효세율 외에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는 지원 목적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는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비과세 제도를 중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세제와의 중복 문제는 다음 소절 ‘다. 다른 조세·재정지원제도와 중복·유사성 검토’에서 자세하게 살펴봄

□ 다른 국가의 제도를 보면, 본 연구의 제II장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일본,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비과세와 유사한 성격의 비과세제도가 없음

- 독일에서는 휴일근무, 야간근무 수당의 일부를 비과세함

다. 다른 조세·재정 지원제도와 중복·유사성 검토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비과세와 유사한 성격의 조세·재정지원제도로 근로장려세제를 들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전문직 종사자와 그 배우자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일정한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을 충족한 자에게 적용됨

- 부양가족 요건

-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독신자(단독가구): 2016년 40세 이상, 2017년 30세 이상

○ 소득 요건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

○ 재산요건

- 토지·건물 등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세제는 총급여액 등의 수준에 따라 점증구간과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구분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액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지급액이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환급됨

○ 평탄구간에서 지급액이 최대가 되며, 평탄구간의 소득수준(총급여액 등)은 단독가구 600만~900만원, 홑벌이 가족 900만~1,200만원, 맞벌이 가족 1,000만~1,300만원이고, 지급액은 각각 77만원, 185만원, 230만원임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표 V-6> 근로장려금의 산정방법(2017년)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7/600
	600만~900만원 미만	77만원 정액지급
	900만~1,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77/400
홑벌이 가족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85/900
	900만~1,200만원 미만	185만원 정액지급
	1,200만~2,1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 등 - 1,200만원)×185/900
맞벌이 가족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30/1,000
	1,000만~1,300만원 미만	230만원 정액지급
	1,300만~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 등 - 1,300만원)×210/1,200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비과세와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비과세는 월정급여액 150만원 이하, 직전년도 총급여 2,500만원 이내의 저소득층에 적용되며,
 - 근로장려세제는 가족의 구성에 따라 가구소득 1,300만~2,500만원 이내의 저소득 가구에 적용됨
- 한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은 생산직 근로자라는 특정한 저소득층에만 적용되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직종을 불문하고 자영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의 근로를 하는 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소득기준과 지급액 산정기준 소득에서 차이가 있는데,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비과세는 월정급여와 총급여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정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인 근로소득만 비과세 대상이 됨
 -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을 모두 포괄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정하고,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정함
 - 급여액 산정시에는 총급여 등이 기준이 되는데, 총급여 등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이며,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비과세되는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하고 정규 근무시간에 근무해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보면,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동일한 근로자가 근로장려 및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조세지원을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복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두 가지 제도가 완벽하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목적과 지원대상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제도는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근로장려세제는 특정 직종이나 특정 형태의 근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함

- 야간근무수당 비과세는 특정한 직종의 근로자(생산직 근로자)의 특정한 형태의 근로소득(야간근무수당)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직종의 근로자 및 다른 형태의 근로를 차별하는 제도로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큼
- 적용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 측면에서도 근로장려세제가 우월한 것으로 판단됨
 - 야간근무수당이 소수의 대상자에게 집중되는 지원제도이긴 하지만, 적용대상이 대부분 저소득 계층으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많지 않아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음
 - 앞서 검토한 <표 V-4>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비과세되는 야간근무수당은 153만원이며, <표 V-5>에 따르면 총급여 1천만~2천만원 구간의 평균 세율은 0.45%이며,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10만~16만원 수준임
 - 이 자료에 따르면 1천만~2천만원 구간 근로자 중 야간근무수당 신청자에게 돌아가는 야간근무수당 비과세 제도의 1인당 세부담 절감 규모는 평균 6,885원임
 - 한편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최대 혜택이 가족 구성에 따라 77만~230만원이며, 2015년의 가구당 평균 급여액은 75만원 수준임⁵⁶⁾
 - 비과세 제도와 달리 근로장려세제는 세부담이 적은 경우에 지원금을 환급하여 준다는 장점도 있음
-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하는 보편적인 제도가 없었음
 - 그러므로 비과세 제도를 통해서 특정 직종의 근로자에게라도 지원을 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근로장려세제라는 근로의욕 고취와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약함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비과세 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꼭 필요한 부분의 근로자 근로의욕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5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14-3-26

-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었으나 야간근무수당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44억원 수준임
- 그러나 이미 근로장려세제라는 보편적인 근로장려 지원제도가 있고, 이를 폐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은 재원으로 좁은 범위의 적용대상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되지 못함

라. 요약 및 결론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의 비과세 제도는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부족한 생산인력을 보충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현상과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간근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적용대상이 세부담이 적은 저소득층이어서 비과세에 따른 세부담 절감 효과가 작아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장려세제라는 더 보편적이고 지원규모가 큰 근로장려 제도가 있으며,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가 우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과거 생산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고려하여 도입한 제도가므로 현재 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파악을 통해 해당 직군에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또는 근로장려세제로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편적 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Ⅵ. 조세지출 외 비과세 항목의 타당성 평가



Ⅵ. 조세지출 외 비과세 항목의 타당성 평가

1.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의 설정

- 조세정책의 우월성을 판단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임
 - 효율성은 경제성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기준으로서, 소수의 납세자에게만 집중되는 세금은 비효율적이며, 세부담은 낮을수록 효율적임
 - 세부담이 소수의 납세자에게만 집중되면 납세자는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며, 그러한 행태가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함
 - 세부담이 높으면 납세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게 됨
 -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평적 형평성은 경제적 여건이 같은 사람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함
 - 소득세의 경우 소득의 종류가 서로 다르더라도 소득규모가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수평적 형평성이 지켜지면 경제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
 - 수직적 형평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여 세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단순성은 조세제도가 단순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세무행정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함

- 소득세의 경우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이러한 원칙하에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산출함
-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이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여 특정한 경우에 비과세를 하더라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비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의 종류와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다음에서는 그 기준에 대해 논의함
 - 기존 연구에서 어떤 종류의 소득을 비과세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찾지 못하였음
 -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본 연구의 제II장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비과세 제도의 내용, 그리고 앞서 제V장에서 검토한 주요 비과세 항목의 타당성 분석에서 적용한 논리를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함

가. 비과세 유지 기준

-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그 중 첫 번째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부이긴 하지만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말함
 -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이 실비변상적 급여임
- 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직접 지불하는 경우나 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나 급여를 근로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 이러한 지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포함시킨 후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득공제는 항목별 소득공제와 개산공제로 구분됨
 - 항목별 공제는 각 비용에 대해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액을 근거로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 개산공제는 실제로 지불한 비용에 근거하지 않고 근로 관련 비용 전체를 추계하여 포괄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함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는 개산공제에 해당함
- 포괄적인 소득공제와 항목별 소득공제, 그리고 비과세 규정 간의 구분기준은 명확하지 않은데, 대체로 비용의 지불에 있어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정도와 행정적인 편의성 등이 구분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른 국가의 경우 비과세와 항목별 소득공제가 모두 있음
 -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항목은 항목별 공제로 규정하고 그 외 항목은 개산공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항목별 과세가 없고, 근로소득공제라는 개산공제가 근로 관련 비용의 공제의 전부임
-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제 V 장 제 1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비과세로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근로 관련 비용이 근로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비과세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면, 실물로 지급되어 개별 근로자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와 같이 일반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인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가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비과세 항목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실비변상적 급여가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 특정 직종이나 특정 업무에서만 사용되는 제복 등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행경비 등
 - 교육훈련비로서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불한 금액
 - 그 외 실비변상적 지급으로서 실물로 제공되어 그 혜택을 개별 근로자에게 분할하여 귀속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두 번째 기준은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 비과세하는 것임
- 과세를 하면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반면 세수입은 많지 않아 과세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회사 내에서 현물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회사 내 숙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다른 국가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비과세함
 - 우리나라에서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소득은 비과세되는데, 이 경우에도 행정적 필요성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소득이 작아 모두 면세점 이하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모든 병사의 소득에서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불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음
-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세행정 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축소되었으므로 행정적 필요에 의한 비과세 필요성도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세 번째 비과세 소득의 범주는 정책적 목적에 의한 비과세임
- 정책적 목적의 비과세는, 특정 부문이나 특정 업종, 또는 특정 계층의 납세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정책적 목적에 의한 비과세는 사회정책적 배려의 관점에서 비과세하는 항목과 특정 근로 등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비과세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회정책적 배려의 관점에서의 비과세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근로 능력이 낮은 자에게 귀속되는 급여를 비과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지원의

-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정책적 배려의 관점에서 비과세하는 항목은 대체로 면세점 이하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앞서 언급한 행정적 관점에서의 비과세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비과세가 많은 편임
- 최근에 도입된 비과세 항목의 사례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지원금 등이 이에 해당됨
- 사회, 경제적 환경은 변하게 마련이므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시대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정책적 필요에 의한 비과세는 일몰기한을 두어 주기적으로 비과세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재검토 항목의 기준

-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규모에 제한을 두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첫째, 실비변상적 급여 중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는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우리나라는 상당히 관대하게 근로소득공제를 허용하므로, 비록 비용의 특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지拂하는 비용은 근로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예를 들면 자가용 승용차 운영비의 경우 상당히 많은 근로자에게 이 비용이 발생하며, 자가용 승용차를 운영하지 않는 근로자도 대중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교통비를 별도 항목으로 소득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선공제인 근로소득

공제의 공제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특정 업종이나 그 외 특정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더라도, 비용을 특정할 수 없고, 해당 비용의 지출 여부나 지출의 구성에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특정 급여(예, 수당)를 지불하더라도 그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특별한 위험을 고려하여 특정한 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위험을 고려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위험수당’과 같이 포괄적인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전적으로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그 급여의 사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의 보전이라기보다는 특정 근로에 부수되는 ‘추가적인 급여’로 봐야 할 것임

- 근로자들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당은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비과세’가 아닌 ‘세전 급여의 조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일정한 수준의 세후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임
- 특정 직종의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이 이에 해당함

□ 셋째,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제도를 도입할 때는 사회정책적 배려나 특정한 근로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비과세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비과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앞서 제 V 장에서 조세지출에 포함되는 비과세 항목의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외소득 비과세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비과세에 대해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여 검토하였음

- 세계화된 사회에서 국내 근무와 국외 근무를 차별하여 국외 근무를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과도하게 많은 근무시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근로장려세제라는 보편적인 근로

장려 지원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 수당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지원 목적으로 비과세하는 것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도 항구적인 비과세 항목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일몰기한을 두어 정기적으로 비과세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는 다른 조세지출 항목이나 재정지출 항목과 중복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들 유사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과세 항목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혜의 대상 등 요건과 수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비과세는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비과세는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비과세는 적용대상자의 과세소득에서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같은 금액을 비과세할 때 받는 세부담 절감 혜택이 고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두지 않으므로 적절한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특례나 재정지원에 비해 비효율적임
-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지원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다섯째, 남용의 가능성이 큰 경우 또는 세부담 절감효과가 과도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금액을 최저한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면 특정 직종에 적용되는 수당을 비과세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 수당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 외에 사회적 배려나 특정한 정책적 지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비과세 혜택이 그러한 배려의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층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귀속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항목을 비과세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의 경우에는 비과세의 필요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세 비과세의 항목별 타당성 분석 - 조세지출 외 항목

가.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받는 급여

1) 비과세 소득의 내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하는 내용이 있음
 - 복무중인 병(兵)의 급여(가목)
 - 복무중인 병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함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나목)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과목)

2) 타당성 평가

-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비과세는 실질적으로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의 세부담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병장 월급이 전년에 비해 9.6% 인상되어 21만 6천원인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기본공제)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월급은 면세점 이하이므로 굳이 비과세를 하지 않아도 복무중인 현역병이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없음

- 한편 과세기간 중 일부는 현역병으로 근무하고, 제대 후에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급여를 비과세하지 않으면 현역 복무 중에 발생한 급여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군 입대 연령 전후의 젊은 계층이 주로 속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계층의 세부담이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세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앞의 <표 V-5>에 따르면 총급여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평균 실효세율이 0.05%, 총급여 1천만~2천만원인 경우 평균 실효세율이 0.45%, 소득 2천만~4천만원인 경우 평균 실효세율이 1.86%임

- 그러므로 복무 중인 현역병의 소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다고 하여도 세부담은 매우 작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이를 과세로 전환하면 군당국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모든 현역병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등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즉,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반면 세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법률에 의해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주로 예비군 동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서 검토한 비과세 기준 중 정책적 목적에 따른 비과세로 판단됨
 - 즉, 필요한 경우에 예비군 동원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비과세도 정책적인 목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가 수행하는 파병 등 외국에서의 작전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작전임무를 수행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인·군무원의 급여를 모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앞서 검토한 복무중인 사병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항목이 유지되는 한 이 항목의 비과세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직업군인은 급여를 목적으로 군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작전임무의 수행은 군인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군인의 고유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일반 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국외근무수당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비과세 제도의 목적이 외국에서의 작전임무를 장려하는 데 있다면 비과세 보다는 특정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등 급여를 조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로 인해 더 소요되는 지출은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증대된 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질병, 부상, 사망, 실업, 휴직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

1) 비과세 소득의 내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 중에 질병, 부상, 사망, 실업, 휴직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다목)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라목)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마목)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 일시금(바목)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사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카목)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하목)

2) 타당성 평가

- 위에 열거된 보상이나 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질병·부상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
 - 휴업·휴직·실업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
 -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일시금, 유족연금 등
- 질병·부상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배상·보상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말함
 - 대체로 지급액이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기초생계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부상이나 장애로 인한 비용이 커서 실제로 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는 총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하면, 세금이 부상이나 장애에 따른 비용 지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이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또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이 항목들은 행정적 필요성 및 사회적 배려의 관점에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항목 중 다목과 라목이 이에 해당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애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다목)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라목)
 - 사목의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애보상금, 재해부조금,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실업, 육아휴직, 출산 등에 따른 급여도 총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제한된 금액이 대체로 비과세되는 수준이거나 과세되더라도 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1일 5만원이 상한이며,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월 150만원이 상한임
 -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비과세는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 중 마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지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이 급여를 받은 후 취업을 하거나 직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육아, 출산 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비용 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며, 육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재정지원제도가 존재함

- 제도의 단순화, 소득 수준에 따른 누진적 세부담 등 소득세의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은 다른 지원제도와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항목들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일부 납세자는 세부담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도 있음
 - 이 경우에는 이 항목들의 급여 외에도 다른 소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급여의 명목으로 비과세 지원을 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은 성격상 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임
- 그 지급의 바탕이 되는 보험료가 납부 단계에서 비과세되므로 급여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히 비과세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대상이 되는 유족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지겠지만,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은 퇴직급여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저소득층, 유족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관점에서 보면 비과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도 있는바, 과세에 따른 효과와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비과세항목 중 바목과 사목의 일부가 이에 해당됨
 - 사목의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카목의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와 하목의 종군한 군인 및 군무원이 전사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급여는 정책적인 측면이 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는 규모가 크지 않아 행정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과세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 직무관련 교육에 따른 학자금

1) 비과세 소득의 내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아목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따른 학자금은 비과세됨
 - 초·중·고등교육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른 것
 -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그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 또한 서목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함

2) 타당성 평가

- 이 항목은 앞서 정리한 비과세 기준 중 실비변상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급이라고 할 수 있음
 -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의 성격도 있음
 - 근로자가 직접 교육·훈련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가 허용됨
 - 다른 국가에서도 근로자의 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서목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함

- 이 항목은 지급액의 규모가 크지 않아 행정적인 측면에서 과세로 전환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실비변상적 급여

1) 비과세소득의 내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자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
 - 「선원법」에 의해 받은 식료
 - 일·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 법령·조례에 의해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군인, 경찰 등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등
 - 선원의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경찰공무원이 받는 합정근무수당 등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교원 및 연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의 벽지근무수당 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 월 20만원
- 위에 열거된 항목들 외에 법 제12조 제3호의 러목에 열거된 식사 또는 식사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비용의 비과세에 해당됨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타당성 평가

- 이 항목들은 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명목으로 비과세되지만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이 강한 것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이지 않는 급여가 혼재되어 있음
 -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지출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근로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보아 비과세 항목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비용의 특정성이 약한 경우나 근로자의 판단에 의해 지출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앞서 검토한 비과세를 허용하는 근로소득의 원칙에 따르면 실비변상적 급여 중에서 비과세가 허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특성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소액이거나 현물로 지급되어 그 지급액을 개별 납세자에게 귀속시키고,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에 따른 세수입은 적은 반면 행정적 부담은 커서 과세로 전환할 실익이 없는 경우
 - 특정한 직종이나 업종에만 소요되는 비용 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근로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포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소액이거나 현물로 지급되며 행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과세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
 - 「선원법」에 의해 받은 식료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음
 - 뿐만 아니라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를 비과세하는 국가 중에서도 현금으로 지급한 식사대는 과세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를 비과세하는 것은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평성(중립성) 차원에서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정 직종, 업종 또는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서 포괄적 근로 관련 비용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이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일·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법령·조례에 의해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단, 위에 열거한 항목 중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이 항목을 도입한 시점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특정한 경비로 취급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현 시점에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 업무에만 소요되는 특정 경비로 보기 어려움
- 직장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정도로 해석하여 근로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경우에 따라서 특정 업종이나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퇴근 외의 업무용 용도로 자기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 등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는 특정 업무, 특정 지역 근무에 따른 수당을 비과세하는 항목들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조항에 포함되어 있음

- 군인, 경찰 등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등
- 선원의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등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근로자의 벽지근무수당 월 20만원 이내
- 앞 장(제 V 장)에서 검토한 국외근무수당도 이에 해당됨

- 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입갱수당 등은 특정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는 관점에서 실비변상적 비용 비과세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원칙적으로 특정한 위험직무, 특정 지역 근무에 따른 초과 비용에 대한 보상은 해당 수당의 인상을 통하여 사용자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세 비과세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군인, 경찰 등의 경우 위험수당 등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시켜야 할 수도 있음
 - 한편, 세후소득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수당의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증가된 세수입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정 수당 등에 한하여 비과세를 허용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명목의 수당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노력할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은 비과세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급진적인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직무, 특정 지역 근무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비과세를 인정하더라도, 비과세 수당의 한도를 일정액으로 한정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과세하도록 하여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선원의 승선수당과 근로자의 벽지근무수당이 월 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외의 수당은 상한 규정이 없음

-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에 포함된 항목 중 다음 항목들은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 월 20만원
 - 기자의 취재수당 비과세를 앞서 논의한 특정 업무에 따른 수당 비과세와 같은 부류로 볼 수도 있으나, 앞서 검토한 수당이 주로 특별한 위험에 따른 수당이나 특정 지역 근무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 있는 반면 기자의 취재수당은 그러한 성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한 정책적 지원으로 분류함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 월 20만원
- 정책적 지원에 따라 비과세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항목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개별적으로 제도의 도입시 특정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도가 도입되었을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모든 항목을 과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음
 -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는 일몰 기간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여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별 항목별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경우 일시적인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수급상황, 전공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시기에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자의 취재수당 월 20만원은 앞서 제 V 장에서 검토한 연구수당 및 연구활동비와 같은 논리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별한 위험에 따른 수당이나 특정 지역 근무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자의 취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지원에 대해 비과세해야 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한편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사회적 배려에 따른 비과세로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 월 20만원 비과세는 한시적 지원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공공기관의 재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의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보상하고자 이전지원금을 지급함
 - 이전지원금은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되며, 공공기관이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도 일정기간(예, 공무원 2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과도한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현행을 유지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비과세 항목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중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에 대해 비과세하는 부분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상황을 보면 자기차량 운전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특별히 20만원 정도의 여비 보조금을 비과세할 이유가 없음
 - 출퇴근 외의 업무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량운행일지 등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등, 입갱수당·발과수당, 벽지수당 등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여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교원 및 연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앞서 제 V 장에서 검토)와 기자의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는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지원인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성이 부족하고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수급상황, 전공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시기에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몰 기한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비과세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기타 비과세 급여

1) 비과세 소득의 내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에 의하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가 비과세됨
 - 국제기관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관을 말함
 - 외국정부의 경우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베틀목에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르면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 비과세 항목에 포함됨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과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타목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2) 타당성 평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 비과세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비과세 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 이와 같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
 -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 제4조 제11항(g) 및 제5조 제18항(b)(g),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제6조 제19절 등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는 정책적 지원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를 비과세하는 것이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자녀의 부양에 따른 비용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가족 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출산비용 공제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며, 또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 이러한 지원제도들이 거의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대상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통폐합을 하여 제도를 단순화하고 출산 및 보육에 대한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비과세는 다른 조세지원제도나 재정지원제도에 비해 특정성이 부족하고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는 앞서 육아휴직 급여 등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를 하면서 적용하였던 것과 같은 논리임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에 대한 비과세는 정책적 지원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정비용의 관점에서 과세로 전환함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는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종업원과 대학 교직원의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전에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았는데, 2016년에 재직중인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하고 그 중 300만원을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음
 - 일정 한도 내에서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비과세는 연금소득에 대한 것으로서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포함하기보다는 연금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적인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대통령의 연금에 한해서 비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3.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의 타당성 분석

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 범위 규정에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일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을 단서로 규정하고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함(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

- 사용자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그 보험료

□ 그 외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의 타당성 검토

- 위에서 언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성격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도 않음
 - 다음에서는 이들 항목에 대해 앞서 언급한 근로소득세 비과세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이들 항목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함
-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의 경우 실비변상적 비용 지급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으며, 행정 편의성 관점에서 비과세하는 것이 편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른 국가들에서도 일부 이러한 항목 즉, 사택의 제공에 따른 이익을 비과세 항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음
 - 한편 사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에 따른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해 가입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70만원 이내,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지원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직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대한 지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비과세 소득에 대한 법 규정 체계의 타당성 분석

가. 현행 법령체계의 문제점

- 현행 「소득세법」은 제20조에 근로소득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다음의 소득은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
 - 종업원 등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1항 제6호 단서)
 - 사용자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특정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
 -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
- 한편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소득세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예외규정과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의 비과세소득이 모두 큰 범위로 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함
 - 또한 경제적 성질의 관점에서 시행령 제38조에서 예외 규정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것들이 법 제12조 제3항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항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분리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의 합리성, 단순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소득세의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음
 - 아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러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포괄위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관하여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무려 14개 항목이 열거됨
 - 납세자들이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문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할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대강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⁵⁷⁾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을 지니지 못한 급여도 포함하고 있음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예시)들은 기본통칙이나 집행기준에 담고 있는데, 그 규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57) 법률에 의하여 명령에 위임을 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규정인 법률의 규정 그 자체에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의 처리기준, 처리지침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그 처리에 대한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3헌바32 결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2 【월정액급여의 범위】

-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7조 제4항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 ②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 ③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 ④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2-3(종업원의 부임수당)

- ①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②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입국시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근로의 제공 완료 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2-4(해외근무에 따른 본국 휴가여비)

-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이 경우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과세대상이다.

1. 조 건

-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1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를 포함)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나. 비과세 소득에 관한 법령체계의 개편방향

-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되,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사항(비과세소득)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8조에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함
- 사택(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 사용자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이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그 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사실상 포괄위임의 형식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련 조항(제3호 아목, 자목 및 러목)을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개정함
- 아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러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포괄위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그 범위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특히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그 성격에 따라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별도의 ‘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득세법령에서 답아야 할 사항을 소득세법 기본통칙이나 소득세 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법령에서 수용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3 【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2 【 월정액급여의 범위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
 - 소득세 집행기준 12-12-3(종업원의 부임수당)
 - 소득세 집행기준 12-12-4(해외근무에 따른 본국 휴가여비)

Ⅶ.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개선방향



VII.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개선방향

1. 비과세 필요성 판단 기준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포괄적 과세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세체계의 단순화, 소득재분배, 경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제Ⅵ장 제1절에서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비과세 항목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첫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부이긴 하지만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이 실비변상적 급여인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비과세 급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급으로서 실물로 지급되어 개별 근로자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와 같이 일반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인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
-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비과세 항목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됨
 - 특정 직종이나 특정 업무에서만 사용되는 제복 등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행경비 등

- 교육훈련비로서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불한 금액
 - 그 외 실비변상적 지급으로서 실물로 제공되어 그 혜택을 개별 근로자에게 분할하여 귀속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둘째, 행정적 필요에 의해 비과세하는 것이 있음
- 과세를 하면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반면 세수입은 많지 않아 과세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회사 내에서 실물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회사 내 숙소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다른 국가에서도 이러한 급여는 대부분 비과세함
 - 우리나라에서 의무복무중인 병사의 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이 경우에도 행정적 필요성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의무복무중인 병사의 소득이 작아 면세점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모든 병사의 소득에서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불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세행정 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축소되었으므로 행정적 필요에 의한 비과세 필요성도 상당히 축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하는 부분이 있음
- 정책적 목적의 비과세는, 특정 부문이나 특정 업종, 또는 특정 계층의 납세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크게 사회정책적 배려의 관점에서 비과세하는 항목과 특정 근로 등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회정책적 배려의 관점에서 비과세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낮은 자에게 귀속되는 급여를 비과세하는 것을 말함
- 대체로 면세점 이하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행정적 필요에 따른 비과세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사회·경제적 환경은 변하게 마련이므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시대에 따라 변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과세는 일몰기한을 두어 주기적으로 비과세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비과세 항목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의 필요성과 방법을 다시 검토하여 과세로 전환하거나 규모에 제한을 두는 등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실비변상적 급여 중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변상하는 급여는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우리나라는 근로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있으며,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이 상당히 높아서 실비변상적 급여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근로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예, 자가승용차 운영비
- 둘째, 특정 업종이나 그 외 특정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더라도, 비용을 특정할 수 없고, 해당 비용의 지출 여부나 지출의 구성이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특정 급여(예, 수당)를 지불하더라도 그 비용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예를 들면, ‘위험수당’과 같이 포괄적인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전적으로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그 급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급여’로 봐야 할 것임
- 셋째,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사회 환경이 바뀌어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비과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정책적 지원 목적으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도 일몰 기한을 두어 정기적으로 비과세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는 다른 조세지출 항목이나 재정지출 항목과 중복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들 유사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과세 항목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과세는 지원대상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특정 행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기본 원칙인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음
 - 일정액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축소시키므로 수혜자 중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 절감혜택이 더 큼
 -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두지 않으므로 적절한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특례나 재정지원에 비해 비효율적임
 -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지원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다섯째, 남용의 가능성이 큰 경우 또는 세부담 절감효과가 과도하게 크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금액을 최저한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의 경우에는 비과세의 필요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

가. 비과세 유지 항목과 재검토 필요 항목의 구분

- <표 VII-1>에서는 앞 절에서 정리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된 비과세소득 규정을 비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과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으로 구분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정리하였음

- 유지근거는 ① 실비변상적 급여 ② 행정적 필요에 의한 비과세 ③ 사회적 배려에 따른 비과세 ④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로 구분하였음
-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의 경우, 그 근거를 ㉠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 비용의 특정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 환경병화로 인해 지원 필요성이 약해진 경우 ㉣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지출과 중복되는 경우 ㉤ 남용의 가능성이 큰 경우 ㉥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음
- 본 절에서는 항목별 타당성 검토 결과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함

〈표 VII-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급여 타당성 검토 결과

목	비과세항목	유지 ¹⁾	재검토 ²⁾
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②	
나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④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②③	
라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②③	
마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기타
사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②③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 등		기타
아	비과세 학자금(영§ 11)	①	
자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등이 받는 수당(영§12 1)	②	
	「선원법」에 의해 받는 식료(영§12 2)	①②	
	일직료·숙직료 등(영§12 3)	①	
	자가운전보조금(영§12 3)		㉠
	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영§12 4, 8)	①	
	경호수당, 승선수당 등(영§12 9 ~ 11)		㉡㉤
	연구보조비 등(영§12 12)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영§12 13 가)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영§12 13 나)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영§12 13 나)		㉢

목	비과세항목	유지 ¹⁾	재검토 ²⁾
	취재수당(영§12 14)		㉑㉒
	벽지수당(영§12 15)		㉑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영§12 16)	㉓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영§12 17)	㉔	
차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기타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㉕㉖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기타
파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㉑
하	충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㉓	
	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100만원(영§16㉑1)		㉑㉒
거	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선박, 건설현장)-300만원(영§16㉑1)		㉑㉒
	공무원 등 국외근로-고시금액(영§16㉑2)		㉑㉒
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㉑	
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㉑㉒
러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㉑	
	현물 급식	㉑㉒	
머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㉒
버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㉕㉖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㉕㉖	
어	발명에 따른 보상금	㉔	

주: 1) 유지 근거 구분: ㉑ 실비변상적 급여 ㉒ 행정상 필요에 의한 비과세 ㉓ 사회적 배려에 따른 비과세 ㉔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

2) 재검토가 필요한 근거: ㉑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㉒ 비용의 특정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㉑ 환경변화로 인해 지원 필요성이 약해진 경우 ㉒ 다른 조세지출이나 재정지출과 중복되는 경우 ㉑ 남용의 가능성이 큰 경우 ㉒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저자 작성

나.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특정 업종이나 직무에 관련되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지급은 비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직무 관련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어도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되므로 별도로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 이 범주에 해당하는 비과세 유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비과세 학자금
 - 근로자의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함
 - 선원법에 의해 받는 식료
 - 과세행정의 간편성 관점에서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 단,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허용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특정성이 부족하므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특정 업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착용하는 작업복이나 피복
 -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사용자가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식사대,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월 10만원)
 - 현물급여 식사대는 행정의 편의성 관점에서도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현금으로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현물급여 식사대와 형평성 관점에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과세행정 관점에서 비과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항목

-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수 규모가 매우 적은 데 비해 행정비용 및 납세자의 납세순응 비용은 많이 소요되어 과세로 전환함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이유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이 적어 대부분 면세에 해당하는데, 모든 개인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는 데 따른 비용이 적지 않음
 -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부상, 질병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지급규모로 봐서 대부분 면세에 해당하는데, 모든 개인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는 데 따른 비용이 적지 않음

- 질병 등의 정도에 따라 지급규모가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그것을 모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사회적 배려의 성격도 있음
- 법령, 조례에 따라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
- 「선원법」에 의해 받는 식료
 - 실비변상적 지급의 성격도 있음
-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급여금
 - 사회적 배려의 성격도 있음
-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
 - 실비변상적 지급의 성격도 있음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사회적 배려의 성격도 있음
-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사회적 배려의 성격도 있음

라. 사회적 배려에 따른 비과세

- 저소득층,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자의 경우에 사회적 배려 관점에서 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음
 - 사회적 배려에 의한 비과세는 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 귀속되는 소득에 적용되므로 행정적 필요에 의한 비과세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현행 비과세 항목 중 사회적 배려 관점에서 비과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부상, 질병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보상금, 요양급여 등
 -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급여금
 -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마.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

- 정책적 지원의 목적으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방이전지원금
 -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이전기관이 법에 의해 규정되고 이전지원금 지급 기간 등이 일정 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남용의 가능성이 낮음
 - 발명에 따른 보상금
 - 공익적 관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바. 기타 비과세 유지 필요성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는 상호주의 관점에서 비과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계속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이 있으며, 과세행정적 필요에 의한 비과세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고용주가 지불하는 보험료 일부에 대한 비과세
 - 정책적 지원의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조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
 - 과세행정적 필요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3.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

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 육아, 출산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의 경우 육아, 출산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조세제도 중 부양가족 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출산비용 공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지출과도 중복됨
 -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과세 여부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되는 항목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나. 유족연금 등

-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은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연금소득의 성격이 있으며, 연금소득의 관점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기반한 것으로 납입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금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수혜자가 유족연금 등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항목들은 근로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의 관점에서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되는 항목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다. 일부 실비변상적 지급

- 실비변상적 지급이라는 이유로 비과세되고 있으나, 특정성이 약한 일부 비용의 지급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되는 실비가 특정성이 약하여 보편적인 근로 관련 경비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특정성 자체가 임의적이어서 특별히 비과세하기보다는 근로소득공제라는 보편적인 근로 관련 비용 공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함
 - 해당되는 항목
 - 자가운전보조금
 - 연구보조비 등
 - 취재수당

- 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특정 직종의 특정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특별한 위험에 대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특정할 수 없고, 해당 비용의 지출이 근로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그러한 위험에 따른 차이는 수당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과세 근거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러한 항목이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전면적으로 과세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음

- 벽지수당도 위 경호수당 등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 항목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항목 중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유아교육 및 보육을 확산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전공의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들 항목은 도입 당시의 상황에 비취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원칙적으로는 급여수준의 조정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것이며, 비과세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격적으로 과세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한시적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기적으로 비과세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가 질과 양의 측면에서 안정되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는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공의 수련수당의 경우에도, 전공의 수급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상황에 따라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국외 등에서의 근로에 대한 보수 비과세제도는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서 국내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되었음
 - 그러나 이미 글로벌한 사업 운영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경제환경을 볼 때 국내 근로자에 비해 국외근로자를 우대할 정책적 필요성이 약함
 - 국외 근로시 국내 근로에 비해 거주 등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긴 하지만 이는 급여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비과세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님

-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이 제도는 주로 중간소득계층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임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의 비과세제도는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부족한 생산인력을 보충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그러나 과도한 실업으로 인하여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으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를 유도하는 정책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근로장려세제라는, 야근을 특정하지 않은, 보편적인 근로장려제도가 있으며,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되므로 애근수당 비과세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되었음
 - 한편,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수당 비과세 혜택이 주로 저소득 계층에 귀속되므로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은 비과세를 하는 논리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연금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히 비과세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없음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는 직업군인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의 작전임무 수행에 따른 위험, 그에 따른 비용 등이 급여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앞서 검토한 국외근무수당, 위험직종에 대한 위험수당, 벽지근무수당 등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격적으로 과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4.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를 규정하는 방법의 개편방안

- 현행 「소득세법」은 제20조에 근로소득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소득세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예외규정과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의 비과세소득이 모두 큰 범위로 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경제적 성질의 관점에서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것들이 법 제12조 제3항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항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분리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의 합리성, 단순화 관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 예외 규정을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용자가 지급하는 특정 보험료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소득세의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음
 - 아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러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포괄위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관하여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무려 14

개 항목에 이르는 급여를 열거하고 있으며,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지 않은 급여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사실상 포괄위임의 형식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련조항(제3호 아목, 자목 및 러목)을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러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포괄위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특히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그 성격에 따라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별도의 ‘목’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예시)들은 기본통칙이나 집행기준에 담고 있는데, 그 규율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3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2 【월정액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 소득세 집행기준 12-12-3(종업원의 부임수당)
 - 소득세 집행기준 12-12-4(해외근무에 따른 본국 휴가여비)

참 고 문 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분석』, 2016.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한국세무사회, 『조세법령 새로 쓰기 -소득세편- 별책 1』,
2012.
김상조, 「2014년 근로소득의 분배구조 및 실효세율 분석」,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
50호, 2016.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7.
김완석·최천규, 『근로복지관련 지급금액에 대한 과세문제 연구』, 재정경제부·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2007.
김재진·박수진·이형민, 『주요국의 근로자와 사업자 소득세 공제제도 차등적용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안종석,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분석」, 『재정포럼』, 통권 제243호,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2015.
온상훈,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소득 규모 사양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KPMG
삼정회계법인, 2010.
이기일·김수련, 「국외근로자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제선항공승무원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운항학회지』, 제23권 제3호, 한국항공운항학회, 2015. 9, pp. 42~52
이의섭,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너무 낮다」, 『건설저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6, pp. 26~27.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3.
전병목·홍우형, 『근로소득 공제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황규영·홍창목, 「근로소득의 비과세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16(2), 한
국세법학회, 2010, pp. 198~229.
조선일보, 「법 개정 않고 정부, 근로시간 단축하나」, 2017.5.12.

註解所得稅法研究會, 『註解 所得稅法』, 大藏財務協會, 2011.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2015-2016”

CCH, “Japan Master Tax Guide 2015-2016”

Australia Tax Office(ATO), “IndIVidual tax return instructions 2015~2016,” 2017.

Erhard in Blümlich, *EStG Kommentar*, 135.Aufl., 2017.

Tipke, Klaus and Joachim Lang, *Steuerrecht*, 22.Aufl., OttoSchmidt, 2015.

OECD, OECD Factbook 2015-2016,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삼일아이닷컴, www.samili.com

미국 국세청, www.irs.gov

영국 국세청, www.gov.uk

일본 국세청, www.nta.go.jp

호주 국세청, www.ato.gov.au

IBFD, www.ibfd.org

부 록



부 록

<부표 1>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인원 현황(2011년)

(단위: 명, %)

구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근로소득	10,605,535	100.00	2,734,096	100.00	1,274,188	100.00	493,392	100.00	231,343	100.00	201,503	100.00
비과세소득	1,212,680	11.43	608,213	22.25	396,481	31.12	97,120	19.68	39,708	17.16	31,664	15.71
연구활동비	74,674	0.70	101,564	3.71	125,503	9.85	44,513	9.02	18,966	8.20	15,125	7.51
연구활동비-유·초·중등	37,397	0.35	71,063	2.60	99,104	7.78	15,019	3.04	328	0.14	182	0.09
연구활동비-고등	9,380	0.09	6,864	0.25	11,331	0.89	19,029	3.86	12,809	5.54	10,317	5.12
연구활동비-특별	3,765	0.04	3,208	0.12	1,872	0.15	1,313	0.27	552	0.24	259	0.13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4,677	0.14	12,430	0.45	10,347	0.81	7,742	1.57	4,493	1.94	3,992	1.98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9,585	0.09	8,099	0.30	2,988	0.23	1,523	0.31	811	0.35	397	0.20
국외근로수당	36,937	0.35	22,322	0.82	14,287	1.12	8,676	1.76	6,385	2.76	7,483	3.71
국외근로수당-100만원	13,548	0.13	10,097	0.37	4,788	0.38	2,995	0.61	2,853	1.23	4,066	2.02
국외근로수당-300만원	19,925	0.19	9,448	0.35	7,048	0.55	4,581	0.93	2,973	1.29	2,748	1.36
국외근로수당-공무	3,630	0.03	2,877	0.11	2,515	0.20	1,164	0.24	606	0.26	816	0.40
야간근로수당	718,318	6.77	30,827	1.13	2,352	0.18	1,105	0.22	522	0.23	136	0.07
출산보육수당	102,815	0.97	206,455	7.55	71,884	5.64	25,185	5.10	8,242	3.56	5,510	2.73
기타비과세	308,260	2.91	343,220	12.55	209,051	16.41	25,378	5.14	8,330	3.60	5,218	2.59
비과세학자금	5,827	0.05	3,643	0.13	3,132	0.25	2,265	0.46	1,985	0.86	1,251	0.62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38,495	0.36	1,733	0.06	813	0.06	249	0.05	92	0.04	107	0.05
경호, 승선수당	11,029	0.10	12,563	0.46	6,996	0.55	323	0.07	94	0.04	130	0.06
보육교사 수당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수석교사 인건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취재수당	5,870	0.06	3,809	0.14	2,433	0.19	1,236	0.25	725	0.31	405	0.20
별지수당	14,162	0.13	13,874	0.51	9,866	0.77	1,549	0.31	382	0.17	133	0.07
재해급여	8,578	0.08	4,430	0.16	2,175	0.17	257	0.05	18	0.01	6	0.00
이전기관종사자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국제기관 근무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무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2〉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인원 현황(2012년)

(단위: 명, %)

구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근로소득	10,426,775	100.00	2,902,703	100.00	1,388,086	100.00	555,806	100.00	263,638	100.00	231,075	100.00
비과세소득	836,253	8.02	489,410	16.86	373,816	26.93	118,222	21.27	42,518	16.13	33,930	14.68
연구활동비	85,564	0.82	107,533	3.70	126,139	9.09	60,358	10.86	21,716	8.24	17,320	7.50
연구활동비-유·초·중등	46,098	0.44	72,969	2.51	98,640	7.11	29,386	5.29	300	0.11	79	0.03
연구활동비-고등	9,038	0.09	7,606	0.26	10,498	0.76	18,784	3.38	14,254	5.41	11,715	5.07
연구활동비-특별	4,096	0.04	3,279	0.11	1,730	0.12	1,271	0.23	457	0.17	283	0.12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6,447	0.16	14,794	0.51	12,223	0.88	9,726	1.75	5,954	2.26	4,836	2.09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10,155	0.10	9,134	0.31	3,239	0.23	1,331	0.24	817	0.31	525	0.23
국외근로수당	40,758	0.39	24,048	0.83	15,532	1.12	9,579	1.72	6,469	2.45	7,695	3.33
국외근로수당-100만원	13,628	0.13	10,703	0.37	5,214	0.38	3,046	0.55	2,704	1.03	4,318	1.87
국외근로수당-300만원	23,740	0.23	11,001	0.38	8,064	0.58	5,414	0.97	3,110	1.18	2,687	1.16
국외근로수당-공무	3,670	0.04	2,506	0.09	2,352	0.17	1,184	0.21	718	0.27	848	0.37
야간근로수당	392,980	3.77	10,920	0.38	1,766	0.13	618	0.11	347	0.13	123	0.05
출산보육수당	109,068	1.05	228,941	7.89	89,573	6.45	28,700	5.16	10,301	3.91	6,533	2.83
기타비과세	235,447	2.26	222,068	7.65	175,743	12.66	26,637	4.79	6,650	2.52	4,290	1.86
비과세학자금	5,787	0.06	3,399	0.12	3,106	0.22	2,458	0.44	1,960	0.74	1,492	0.65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32,356	0.31	2,287	0.08	1,577	0.11	471	0.08	96	0.04	86	0.04
경호, 승선수당	9,841	0.09	13,102	0.45	7,892	0.57	1,096	0.20	76	0.03	46	0.02
보육교사 수당	1,835	0.02	47	0.00	1	0.00	0	0.00	0	0.00	0	0.00
수석교사 인건비	1,053	0.01	105	0.00	45	0.00	16	0.00	4	0.00	2	0.00
취재수당	5,275	0.05	3,915	0.13	2,252	0.16	1,175	0.21	605	0.23	358	0.15
별지수당	16,463	0.16	16,342	0.56	12,293	0.89	2,569	0.46	441	0.17	150	0.06
재해급여	18,207	0.17	13,384	0.46	5,110	0.37	1,069	0.19	27	0.01	6	0.00
이전기관종사자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국제기관 근무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제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3〉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인원 현황(2013년)

(단위: 명, %)

구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근로소득	10,638,320	100.00	3,057,207	100.00	1,489,986	100.00	615,779	100.00	291,403	100.00	267,075	100.00
비과세소득	998,820	9.39	503,401	16.47	384,244	25.79	140,460	22.81	48,452	16.63	39,090	14.64
연구활동비	89,526	0.84	110,742	3.62	116,641	7.83	75,017	12.18	24,455	8.39	19,759	7.40
연구활동비-유·초·중등	39,320	0.37	71,879	2.35	88,585	5.95	44,025	7.15	408	0.14	99	0.04
연구활동비-고등	10,091	0.09	8,369	0.27	9,661	0.65	17,967	2.92	16,249	5.58	12,982	4.86
연구활동비-특별	3,847	0.04	3,550	0.12	1,828	0.12	1,213	0.20	574	0.20	330	0.12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6,751	0.16	15,373	0.50	12,705	0.85	10,636	1.73	6,900	2.37	5,750	2.15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19,777	0.19	11,835	0.39	4,050	0.27	1,332	0.22	552	0.19	712	0.27
국외근로수당	44,272	0.42	26,322	0.86	16,860	1.13	9,841	1.60	7,017	2.41	8,242	3.09
국외근로수당-100만원	13,791	0.13	12,476	0.41	6,744	0.45	3,600	0.58	3,453	1.18	5,179	1.94
국외근로수당-300만원	26,843	0.25	11,861	0.39	8,263	0.55	5,259	0.85	3,226	1.11	2,750	1.03
국외근로수당-공무	4,644	0.04	3,071	0.10	2,031	0.14	1,080	0.18	408	0.14	560	0.21
야간근로수당	541,776	5.09	27,037	0.88	2,501	0.17	681	0.11	480	0.16	165	0.06
출산보육수당	108,626	1.02	225,897	7.39	100,404	6.74	30,451	4.95	11,698	4.01	7,146	2.68
기타비과세	241,625	2.27	213,593	6.99	188,302	12.64	32,937	5.35	8,134	2.79	5,876	2.20
비과세 학자금	4,739	0.04	3,420	0.11	3,299	0.22	2,633	0.43	1,936	0.66	1,635	0.61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41,003	0.39	2,135	0.07	1,276	0.09	647	0.11	196	0.07	147	0.06
경호, 승선수당	9,836	0.09	13,010	0.43	7,921	0.53	1,588	0.26	27	0.01	15	0.01
보육교사 수당	5,013	0.05	147	0.00	13	0.00	3	0.00	0	0.00	0	0.00
수석교사 인건비	1,981	0.02	167	0.01	49	0.00	14	0.00	13	0.00	7	0.00
취체수당	5,516	0.05	3,806	0.12	2,426	0.16	1,309	0.21	684	0.23	405	0.15
별지수당	16,741	0.16	16,341	0.53	12,751	0.86	3,208	0.52	432	0.15	153	0.06
재해급여	17,790	0.17	13,334	0.44	5,584	0.37	1,308	0.21	46	0.02	14	0.01
이전기관종사자	454	0.00	1,758	0.06	1,976	0.13	558	0.09	154	0.05	41	0.02
국체기관 근무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인원 현황(2014년)

(단위: 명, %)

구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근로소득	10,214,158	100.00	3,526,569	100.00	1,625,947	100.00	685,791	100.00	320,981	100.00	313,633	100.00
비과세소득	936,689	9.17	526,833	14.94	395,823	24.34	165,815	24.18	51,966	16.19	42,971	13.70
연구활동비	78,260	0.77	118,291	3.35	109,401	6.73	87,525	12.76	26,103	8.13	21,669	6.91
연구활동비-유·초·중등	39,325	0.39	72,204	2.05	79,915	4.91	56,799	8.28	751	0.23	105	0.03
연구활동비-고등	8,616	0.08	8,726	0.25	8,484	0.52	15,922	2.32	16,604	5.17	14,372	4.58
연구활동비-특별	3,501	0.03	3,947	0.11	1,763	0.11	1,283	0.19	706	0.22	296	0.09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5,959	0.16	18,968	0.54	14,453	0.89	11,879	1.73	7,539	2.35	6,257	2.00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11,159	0.11	14,841	0.42	4,935	0.30	1,720	0.25	544	0.17	669	0.21
국외근로수당	42,531	0.42	29,061	0.82	18,283	1.12	11,019	1.61	7,496	2.34	9,174	2.93
국외근로수당-100만원	11,948	0.12	13,867	0.39	7,336	0.45	4,311	0.63	3,699	1.15	5,890	1.88
국외근로수당-300만원	26,834	0.26	13,267	0.38	9,112	0.56	5,599	0.82	3,332	1.04	3,015	0.96
국외근로수당-공무	4,108	0.04	2,355	0.07	1,974	0.12	1,234	0.18	564	0.18	498	0.16
야간근로수당	525,690	5.15	34,099	0.97	2,542	0.16	755	0.11	500	0.16	219	0.07
출산보육수당	93,283	0.91	223,267	6.33	112,479	6.92	31,594	4.61	12,038	3.75	7,980	2.54
기타비과세	219,187	2.15	217,305	6.16	200,174	12.31	43,668	6.37	8,699	2.71	5,888	1.88
비과세학자금	3,554	0.03	2,357	0.07	2,736	0.17	2,281	0.33	1,699	0.53	1,195	0.38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26,098	0.26	2,100	0.06	1,271	0.08	898	0.13	281	0.09	198	0.06
경호, 승선수당	10,990	0.11	12,857	0.36	8,733	0.54	2,541	0.37	114	0.04	39	0.01
보육교사 수당	2,753	0.03	292	0.01	95	0.01	12	0.00	0	0.00	0	0.00
수석교사 인건비	2,146	0.02	221	0.01	53	0.00	26	0.00	5	0.00	11	0.00
취체수당	5,078	0.05	4,090	0.12	2,367	0.15	1,429	0.21	800	0.25	485	0.15
별지수당	15,911	0.16	16,815	0.48	12,852	0.79	3,979	0.58	452	0.14	154	0.05
재해급여	16,103	0.16	13,251	0.38	6,618	0.41	1,665	0.24	70	0.02	23	0.01
이전기관종사자	1,450	0.01	4,379	0.12	4,960	0.31	2,899	0.42	990	0.31	475	0.15
국체기관 근무	10	0.00	3	0.00	1	0.00	2	0.00	0	0.00	1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무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5>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금액 현황(2011년)

(단위: 십억원, %)

구분	금액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근로소득	140,483.98	100.00	112,972.45	100.00	80,381.34	100.00	41,449.58	100.00	24,267.23	100.00	38,283.87	100.00
비과세소득	1,700.04	1.21	1,288.28	1.14	965.50	1.20	310.03	0.75	156.90	0.65	152.28	0.40
연구활동비	75.19	0.05	108.62	0.10	128.49	0.16	81.61	0.20	44.93	0.19	35.73	0.09
연구활동비-유·초·중등	21.52	0.02	49.46	0.04	71.72	0.09	12.62	0.03	0.64	0.00	0.41	0.00
연구활동비-고등	13.27	0.01	14.21	0.01	25.28	0.03	44.80	0.11	30.51	0.13	24.51	0.06
연구활동비-특별	5.06	0.00	5.80	0.01	3.53	0.00	2.84	0.01	1.28	0.01	0.59	0.00
연구활동비-연구기관	21.03	0.01	23.55	0.02	21.84	0.03	17.93	0.04	10.62	0.04	9.41	0.02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14.30	0.01	15.60	0.01	6.12	0.01	3.42	0.01	1.88	0.01	0.81	0.00
국외근로수당	292.16	0.21	262.21	0.23	201.72	0.25	112.03	0.27	77.19	0.32	92.94	0.24
국외근로수당-100만원	92.64	0.07	92.15	0.08	41.31	0.05	25.36	0.06	27.44	0.11	41.61	0.11
국외근로수당-300만원	163.41	0.12	116.45	0.10	88.05	0.11	56.84	0.14	38.72	0.16	38.65	0.10
국외근로수당-공무	36.10	0.03	53.61	0.05	72.36	0.09	29.82	0.07	11.04	0.05	12.69	0.03
야간근로수당	811.90	0.58	33.03	0.03	1.61	0.00	0.71	0.00	0.29	0.00	0.09	0.00
출산보육수당	55.76	0.04	103.87	0.09	42.60	0.05	16.80	0.04	6.11	0.03	4.82	0.01
기타비과세	465.03	0.33	780.53	0.69	591.08	0.74	98.89	0.24	28.38	0.12	18.69	0.05
비과세학자금	9.68	0.01	9.28	0.01	9.03	0.01	8.42	0.02	5.90	0.02	4.43	0.01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36.82	0.03	6.32	0.01	2.53	0.00	0.74	0.00	0.23	0.00	0.60	0.00
경호, 승선수당	11.38	0.01	14.34	0.01	8.67	0.01	0.63	0.00	0.13	0.00	0.19	0.00
보육교사 수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석교사 인건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취재수당	8.00	0.01	6.85	0.01	4.70	0.01	2.61	0.01	1.66	0.01	0.80	0.00
별치수당	6.74	0.00	8.72	0.01	6.04	0.01	1.04	0.00	0.35	0.00	0.15	0.00
재해급여	8.09	0.01	10.90	0.01	8.95	0.01	0.83	0.00	0.03	0.00	0.02	0.00
이전기관종사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채기관 근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6〉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금액 현황(2012년)

(단위: 십억원, %)

구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근로소득	145,848.68	100.00	119,799.84	100.00	87,594.61	100.00	46,653.64	100.00	27,708.06	100.00	43,166.77	100.00
비과세소득	1,339.62	0.92	1,064.48	0.89	898.07	1.03	400.82	0.86	197.90	0.71	187.08	0.43
연구활동비	82.39	0.06	117.37	0.10	129.24	0.15	94.16	0.20	51.03	0.18	40.83	0.09
연구활동비-유·초·중등	26.10	0.02	50.40	0.04	71.03	0.08	22.09	0.05	0.31	0.00	0.10	0.00
연구활동비-고등	12.20	0.01	15.38	0.01	23.07	0.03	44.00	0.09	33.77	0.12	27.68	0.06
연구활동비-특별	5.56	0.00	5.66	0.00	3.16	0.00	2.75	0.01	1.02	0.00	0.63	0.00
연구활동비-연구기관	23.17	0.02	28.20	0.02	25.43	0.03	22.39	0.05	14.07	0.05	11.31	0.03
연구활동비-초연구진흥	15.37	0.01	17.74	0.01	6.55	0.01	2.93	0.01	1.85	0.01	1.11	0.00
국외근로수당	467.09	0.32	369.80	0.31	289.81	0.33	177.94	0.38	115.76	0.42	125.06	0.29
국외근로수당-100만원	101.40	0.07	99.11	0.08	44.46	0.05	26.61	0.06	26.42	0.10	44.84	0.10
국외근로수당-300만원	317.31	0.22	220.97	0.18	171.02	0.20	119.69	0.26	74.94	0.27	68.33	0.16
국외근로수당-공무	48.38	0.03	49.73	0.04	74.33	0.08	31.64	0.07	14.41	0.05	11.88	0.03
야간근로수당	390.67	0.27	9.46	0.01	1.44	0.00	0.62	0.00	0.37	0.00	0.13	0.00
출산보육수당	59.06	0.04	119.05	0.10	52.88	0.06	20.02	0.04	7.63	0.03	5.78	0.01
기타비과세	340.40	0.23	448.78	0.37	424.70	0.48	108.08	0.23	23.11	0.08	15.28	0.04
비과세학자금	13.35	0.01	9.00	0.01	8.70	0.01	8.64	0.02	5.48	0.02	4.70	0.01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38.12	0.03	6.50	0.01	2.62	0.00	0.93	0.00	0.15	0.00	0.36	0.00
경호, 승선수당	10.32	0.01	14.44	0.01	9.37	0.01	2.32	0.00	0.14	0.00	0.07	0.00
보육교사 수당	2.03	0.00	0.0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석교사 인건비	4.17	0.00	0.40	0.00	0.15	0.00	0.05	0.00	0.02	0.00	0.01	0.00
취재수당	7.77	0.01	7.55	0.01	4.56	0.01	2.51	0.01	1.39	0.01	0.82	0.00
별지수당	7.72	0.01	9.91	0.01	6.97	0.01	1.54	0.00	0.41	0.00	0.18	0.00
채해급여	27.09	0.02	44.88	0.04	20.97	0.02	6.55	0.01	0.06	0.00	0.02	0.00
이전기관종사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체기관 근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7>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금액 현황(2013년)

(단위: 십억원, %)

구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근로소득	151,011.17	100.00	126,199.82	100.00	94,088.56	100.00	51,609.48	100.00	30,668.42	100.00	49,366.77	100.00
비과세소득	1,947.86	1.29	1,146.60	0.91	948.32	1.01	442.69	0.86	224.86	0.73	206.58	0.42
연구활동비	86.70	0.06	113.18	0.09	107.29	0.11	98.80	0.19	57.23	0.19	46.51	0.09
연구활동비-유·초·중·고등	23.44	0.02	37.93	0.03	48.73	0.05	27.89	0.05	0.51	0.00	0.19	0.00
연구활동비-고등	12.42	0.01	16.45	0.01	20.65	0.02	41.11	0.08	37.92	0.12	30.67	0.06
연구활동비-특별	5.31	0.00	6.21	0.00	3.43	0.00	2.65	0.01	1.32	0.00	0.74	0.00
연구활동비-연구기관	23.57	0.02	29.84	0.02	26.43	0.03	24.41	0.05	16.31	0.05	13.52	0.03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21.95	0.01	22.75	0.02	8.04	0.01	2.74	0.01	1.16	0.00	1.40	0.00
국외근로수당	639.31	0.42	436.11	0.35	327.28	0.35	192.78	0.37	128.07	0.42	131.35	0.27
국외근로수당-100만원	97.16	0.06	111.39	0.09	59.58	0.06	32.04	0.06	34.32	0.11	53.24	0.11
국외근로수당-300만원	465.44	0.31	276.47	0.22	199.80	0.21	128.49	0.25	82.75	0.27	72.67	0.15
국외근로수당-공무	76.70	0.05	48.24	0.04	67.90	0.07	32.25	0.06	10.99	0.04	5.44	0.01
야간근로수당	816.99	0.54	42.99	0.03	2.10	0.00	0.64	0.00	0.48	0.00	0.18	0.00
출산보육수당	59.88	0.04	121.61	0.10	59.52	0.06	20.79	0.04	8.23	0.03	6.08	0.01
기타비과세	344.98	0.23	432.71	0.34	452.14	0.48	129.69	0.25	30.86	0.10	22.46	0.05
비과세학자금	12.11	0.01	9.22	0.01	7.98	0.01	7.92	0.02	6.27	0.02	5.51	0.01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41.48	0.03	6.07	0.00	2.42	0.00	1.03	0.00	0.25	0.00	0.22	0.00
경호, 승선수당	10.64	0.01	15.85	0.01	10.33	0.01	3.21	0.01	0.05	0.00	0.03	0.00
보육교사 수당	10.67	0.01	0.29	0.00	0.03	0.00	0.01	0.00	0.00	0.00	0.00	0.00
수석교사 인건비	7.99	0.01	0.75	0.00	0.18	0.00	0.06	0.00	0.04	0.00	0.03	0.00
취재수당	8.43	0.01	7.57	0.01	5.03	0.01	2.84	0.01	1.56	0.01	0.92	0.00
벽지수당	7.78	0.01	9.99	0.01	7.29	0.01	1.79	0.00	0.43	0.00	0.23	0.00
재해급여	25.32	0.02	43.22	0.03	22.07	0.02	7.59	0.01	0.10	0.00	0.01	0.00
이전기관종사자	0.71	0.00	3.62	0.00	3.99	0.00	0.81	0.00	0.18	0.00	0.04	0.00
국제기관 근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8〉 소득구간별 비과세소득 신고금액 현황(2014년)

(단위: 십억원, %)

구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근로소득	144,668.78	100.00	140,592.12	100.00	101,417.14	100.00	56,893.18	100.00	33,498.73	100.00	56,656.91	100.00
비과세소득	1,870.08	1.29	1,232.19	0.88	1,003.99	0.88	500.53	0.88	235.87	0.70	225.14	0.40
연구활동비	78.69	0.05	140.97	0.10	118.98	0.12	111.31	0.20	60.55	0.18	50.60	0.09
연구활동비-유·초·중등	27.19	0.02	51.30	0.04	57.38	0.06	41.52	0.07	0.85	0.00	0.19	0.00
연구활동비-고등	9.47	0.01	17.76	0.01	18.50	0.02	37.06	0.07	39.43	0.12	33.93	0.06
연구활동비-특별	4.41	0.00	7.13	0.01	3.62	0.00	2.89	0.01	1.63	0.00	0.62	0.00
연구활동비-연구기관	21.40	0.01	36.16	0.03	29.63	0.03	26.74	0.05	17.64	0.05	14.52	0.03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16.21	0.01	28.61	0.02	9.84	0.01	3.10	0.01	1.01	0.00	1.33	0.00
국외근로수당	609.69	0.42	484.42	0.34	348.65	0.34	210.24	0.37	134.58	0.40	148.64	0.26
국외근로수당-100만원	82.38	0.06	127.95	0.09	64.32	0.06	36.68	0.06	36.01	0.11	60.55	0.11
국외근로수당-300만원	459.85	0.32	314.54	0.22	222.05	0.22	137.04	0.24	86.37	0.26	83.09	0.15
국외근로수당-공무	67.46	0.05	41.93	0.03	62.28	0.06	36.52	0.06	12.21	0.04	5.00	0.01
야간근로수당	800.38	0.55	56.12	0.04	2.14	0.00	0.66	0.00	0.52	0.00	0.26	0.00
출산보육수당	50.35	0.03	124.06	0.09	65.34	0.06	21.54	0.04	8.37	0.03	6.60	0.01
기타비과세	330.98	0.23	426.62	0.30	468.89	0.46	156.78	0.28	31.83	0.10	19.04	0.03
비과세학자금	9.22	0.01	5.38	0.00	7.31	0.01	8.97	0.02	6.42	0.02	4.86	0.01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30.12	0.02	5.09	0.00	2.39	0.00	1.14	0.00	0.27	0.00	0.24	0.00
경호, 승선수당	11.37	0.01	14.98	0.01	10.85	0.01	4.92	0.01	0.31	0.00	0.07	0.00
보육교사 수당	4.77	0.00	0.33	0.00	0.04	0.00	0.02	0.00	0.00	0.00	0.00	0.00
수석교사 인건비	9.03	0.01	0.99	0.00	0.24	0.00	0.11	0.00	0.02	0.00	0.05	0.00
취체수당	7.62	0.01	8.17	0.01	4.98	0.00	3.15	0.01	1.82	0.01	1.10	0.00
별지수당	7.39	0.01	10.70	0.01	7.96	0.01	2.27	0.00	0.53	0.00	0.24	0.00
재해급여	22.40	0.02	41.86	0.03	25.22	0.02	9.03	0.02	0.21	0.00	0.01	0.00
이전기관종사자	1.32	0.00	6.18	0.00	6.48	0.01	2.92	0.01	0.79	0.00	0.29	0.00
국체기관 근무	0.23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9>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 소득(201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비과세소득	1.40	2.12	2.44	3.19	3.95	4.81
연구활동비	1.01	1.07	1.02	1.83	2.37	2.36
연구활동비-유·초·중등	0.58	0.70	0.72	0.84	1.96	2.28
연구활동비-고등	1.42	2.07	2.23	2.35	2.38	2.38
연구활동비-특별	1.35	1.81	1.88	2.16	2.32	2.26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43	1.89	2.11	2.32	2.36	2.36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1.49	1.93	2.05	2.24	2.31	2.04
국외근로수당	7.91	11.75	14.12	12.91	12.09	12.42
국외근로수당-100만원	6.84	9.13	8.63	8.47	9.62	10.23
국외근로수당-300만원	8.20	12.33	12.49	12.41	13.02	14.06
국외근로수당-공무	9.95	18.64	28.77	25.62	18.21	15.55
야간근로수당	1.13	1.07	0.68	0.64	0.55	0.67
출산보육수당	0.54	0.50	0.59	0.67	0.74	0.88
기타비과세	1.51	2.27	2.83	3.90	3.41	3.58
비과세학자금	1.66	2.55	2.88	3.72	2.97	3.54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0.96	3.65	3.12	2.95	2.51	5.60
경호, 승선수당	1.03	1.14	1.24	1.94	1.41	1.47
보육교사 수당	-	-	-	-	-	-
수석교사 인건비	-	-	-	-	-	-
취재수당	1.36	1.80	1.93	2.11	2.29	1.98
벽지수당	0.48	0.63	0.61	0.67	0.91	1.12
재해급여	0.94	2.46	4.11	3.24	1.59	3.64
이전기관종사자	-	-	-	-	-	-
국제기관 근무	-	-	-	-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10>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 소득(201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비과세소득	1.60	2.18	2.40	3.39	4.65	5.51
연구활동비	0.96	1.09	1.02	1.56	2.35	2.36
연구활동비-유·초·중등	0.57	0.69	0.72	0.75	1.04	1.23
연구활동비-고등	1.35	2.02	2.20	2.34	2.37	2.36
연구활동비-특별	1.36	1.73	1.83	2.16	2.24	2.22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41	1.91	2.08	2.30	2.36	2.34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1.51	1.94	2.02	2.20	2.27	2.12
국외근로수당	11.46	15.38	18.66	18.58	17.89	16.25
국외근로수당-100만원	7.44	9.26	8.53	8.74	9.77	10.38
국외근로수당-300만원	13.37	20.09	21.21	22.11	24.09	25.43
국외근로수당-공무	13.18	19.84	31.60	26.72	20.07	14.01
야간근로수당	0.99	0.87	0.82	1.00	1.06	1.07
출산보육수당	0.54	0.52	0.59	0.70	0.74	0.88
기타비과세	1.45	2.02	2.42	4.06	3.48	3.56
비과세학자금	2.31	2.65	2.80	3.51	2.79	3.15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1.18	2.84	1.66	1.98	1.59	4.22
경호, 승선수당	1.05	1.10	1.19	2.12	1.79	1.43
보육교사 수당	1.10	1.61	0.72	-	-	-
수석교사 인건비	3.96	3.80	3.34	3.10	6.05	3.50
취재수당	1.47	1.93	2.03	2.14	2.30	2.28
벽지수당	0.47	0.61	0.57	0.60	0.94	1.20
재해급여	1.49	3.35	4.10	6.13	2.17	2.83
이전기관종사자	-	-	-	-	-	-
국제기관 근무	-	-	-	-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11>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 소득(201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비과세소득	1.95	2.28	2.47	3.15	4.64	5.28
연구활동비	0.97	1.02	0.92	1.32	2.34	2.35
연구활동비-유·초·중등	0.60	0.53	0.55	0.63	1.25	1.91
연구활동비-고등	1.23	1.97	2.14	2.29	2.33	2.36
연구활동비-특별	1.38	1.75	1.88	2.18	2.30	2.23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41	1.94	2.08	2.29	2.36	2.35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1.11	1.92	1.98	2.06	2.11	1.96
국외근로수당	14.44	16.57	19.41	19.59	18.25	15.94
국외근로수당-100만원	7.05	8.93	8.83	8.90	9.94	10.28
국외근로수당-300만원	17.34	23.31	24.18	24.43	25.65	26.42
국외근로수당-공무	16.52	15.71	33.43	29.86	26.94	9.72
야간근로수당	1.51	1.59	0.84	0.93	1.00	1.09
출산보육수당	0.55	0.54	0.59	0.68	0.70	0.85
기타비과세	1.43	2.03	2.40	3.94	3.79	3.82
비과세학자금	2.56	2.70	2.42	3.01	3.24	3.37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1.01	2.84	1.89	1.58	1.27	1.49
경호, 승선수당	1.08	1.22	1.30	2.02	1.75	1.69
보육교사 수당	2.13	1.96	2.38	2.43	-	-
수석교사 인건비	4.03	4.50	3.68	4.22	2.99	4.70
취재수당	1.53	1.99	2.07	2.17	2.29	2.27
벽지수당	0.46	0.61	0.57	0.56	0.99	1.48
재해급여	1.42	3.24	3.95	5.81	2.10	0.81
이전기관종사자	1.56	2.06	2.02	1.45	1.17	0.85
국제기관 근무	-	-	-	-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12> 소득구간별 1인당 비과세 소득(201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비과세소득	2.00	2.34	2.54	3.02	4.54	5.24
연구활동비	1.01	1.19	1.09	1.27	2.32	2.34
연구활동비-유·초·중등	0.69	0.71	0.72	0.73	1.13	1.77
연구활동비-고등	1.10	2.04	2.18	2.33	2.37	2.36
연구활동비-특별	1.26	1.81	2.06	2.25	2.31	2.11
연구활동비-연구기관	1.34	1.91	2.05	2.25	2.34	2.32
연구활동비-기초연구진흥	1.45	1.93	1.99	1.80	1.86	1.99
국외근로수당	14.34	16.67	19.07	19.08	17.95	16.20
국외근로수당-100만원	6.90	9.23	8.77	8.51	9.74	10.28
국외근로수당-300만원	17.14	23.71	24.37	24.48	25.92	27.56
국외근로수당-공무	16.42	17.80	31.55	29.59	21.64	10.04
야간근로수당	1.52	1.65	0.84	0.88	1.04	1.17
출산보육수당	0.54	0.56	0.58	0.68	0.70	0.83
기타비과세	1.51	1.96	2.34	3.59	3.66	3.23
비과세학자금	2.60	2.28	2.67	3.93	3.78	4.06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1.15	2.42	1.88	1.27	0.96	1.20
경호, 승선수당	1.03	1.16	1.24	1.94	2.75	1.83
보육교사 수당	1.73	1.14	0.41	1.92	-	-
수석교사 인건비	4.21	4.48	4.55	4.24	4.80	4.31
취재수당	1.50	2.00	2.11	2.21	2.27	2.26
벽지수당	0.46	0.64	0.62	0.57	1.16	1.57
재해급여	1.39	3.16	3.81	5.42	2.97	0.40
이전기관종사자	0.91	1.41	1.31	1.01	0.79	0.62
국제기관 근무	22.57	1.12	8.00	0.88	-	2.5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5와 국세청 세부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